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100210-10

202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6. 8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2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6. 8.

이 연차보고서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라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그 추진 내용을 2026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임

교육부

Ⅰ 특수교육의 개요 11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Ⅱ 2026년 특수교육 현황 19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Ⅲ 2026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31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33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33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33
 (2) 특수학교 학생 ····· 34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36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 37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38
 2) 특수교육기관 확충 ····· 39
 (1) 특수학교 ····· 39
 (2) 특수학급 ····· 42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45

CONTENTS 목차

4)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47
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50
6) 장애 발견 진단·배치 체계 구축 ····· 53
7)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 59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양성 ····· 59
(2)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직 연수 ····· 68
8)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71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75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75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76
3)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80
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82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86
1)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86
2)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89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91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93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02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109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113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113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117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19
1) 특수교육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학술교류 추진 ····· 119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용 도서 개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122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 124
4) 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 지원 ····· 125
5) 특수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127

6)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131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133

Appendix 부록

부록 Ⅰ.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137
부록 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25

CONTENTS 표목차

〈표 1 · 1〉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4
〈표 1 · 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 15
〈표 1 · 3〉 연도별 특수학교 수 ····· 15
〈표 1 · 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 15
〈표 1 · 5〉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 15
〈표 1 · 6〉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수 ····· 15
〈표 1 · 7〉 연도별 학급 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 16
〈표 1 · 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 16
〈표 1 · 9〉 연도별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17
〈표 2 · 1〉 2026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 21
〈표 2 · 2〉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2
〈표 2 · 3〉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3
〈표 2 · 4〉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 23
〈표 2 · 5〉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 24
〈표 2 · 6〉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현황 ····· 24
〈표 2 · 7〉 시·도별 설립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 25
〈표 2 · 8〉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 26
〈표 2 · 9〉 특수학급 현황 ····· 27
〈표 2 · 10〉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 27
〈표 2 · 11〉 순회교육 현황 ····· 28
〈표 2 · 1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 28
〈표 2 · 1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 29
〈표 3 ·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33
〈표 3 · 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4
〈표 3 · 3〉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4
〈표 3 · 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 35
〈표 3 · 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36
〈표 3 · 6〉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6
〈표 3 · 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 37
〈표 3 · 8〉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7
〈표 3 · 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 38

〈표 3 · 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 39
〈표 3 · 11〉 설립별 및 주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 39
〈표 3 · 12〉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 40
〈표 3 · 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 41
〈표 3 · 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 42
〈표 3 · 15〉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 43
〈표 3 · 16〉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 44
〈표 3 · 17〉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 46
〈표 3 · 18〉 유아 특수교육기관 현황 ····· 47
〈표 3 · 19〉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 47
〈표 3 · 20〉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1인당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 48
〈표 3 · 21〉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 49
〈표 3 · 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51
〈표 3 · 23〉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 52
〈표 3 · 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 54
〈표 3 · 25〉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 55
〈표 3 · 26〉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 56
〈표 3 · 27〉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 57
〈표 3 · 2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58
〈표 3 · 29〉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 60
〈표 3 · 30〉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현황 · 63
〈표 3 · 31〉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 양성·재교육과정 현황 ····· 65
〈표 3 · 32〉 국·사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 66
〈표 3 · 33〉 특수교육 담당 교원 자격 소지 현황 ····· 69
〈표 3 · 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 70
〈표 3 · 35〉 특수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 71
〈표 3 · 36〉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 72
〈표 3 · 37〉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 73
〈표 3 · 3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73
〈표 3 · 39〉 연도별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 ····· 74
〈표 3 · 4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75

CONTENTS 표목차

〈표 3 · 41〉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 77
〈표 3 · 42〉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현황 ····· 78
〈표 3 · 43〉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 79
〈표 3 · 44〉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 81
〈표 3 · 4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 83
〈표 3 · 46〉 2025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횟수 ····· 83
〈표 3 · 47〉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84
〈표 3 · 48〉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84
〈표 3 · 49〉 병원학교 운영 현황 ····· 87
〈표 3 · 50〉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현황 ····· 88
〈표 3 · 51〉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 89
〈표 3 · 52〉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 90
〈표 3 · 5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 90
〈표 3 · 5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현황 ····· 91
〈표 3 · 55〉 특수학교 진로·직업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 94
〈표 3 · 5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 95
〈표 3 · 5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 96
〈표 3 · 58〉 2026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 97
〈표 3 · 59〉 2026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 98
〈표 3 · 60〉 2026년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 99
〈표 3 · 61〉 2026년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 100
〈표 3 · 6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 101
〈표 3 · 63〉 치료지원 현황 ····· 102
〈표 3 · 6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 103
〈표 3 · 65〉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 104
〈표 3 · 66〉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현황 ····· 105
〈표 3 · 67〉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 106
〈표 3 · 68〉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 107
〈표 3 · 69〉 2025년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0
〈표 3 · 70〉 2025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1
〈표 3 · 71〉 2025년 학교과정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1

〈표 3 · 72〉 2025년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1
〈표 3 · 73〉 2025년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2
〈표 3 · 74〉 2026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 114
〈표 3 · 7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 115
〈표 3 · 76〉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 116
〈표 3 · 77〉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 117
〈표 3 · 78〉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조사, 학술교류, 현장 지원, 성과 관리 ····· 120
〈표 3 · 79〉 국립특수교육원 교과용 도서 개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122
〈표 3 · 80〉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 124
〈표 3 · 81〉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25
〈표 3 · 82〉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2026. 7. 31. 기준) ····· 127
〈표 3 · 83〉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2026. 7. 31. 기준) ····· 127
〈표 3 · 84〉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 131
〈표 3 · 85〉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132
〈표 3 · 86〉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 133
〈표 3 · 87〉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원격 연수 ····· 134
〈표 3 · 88〉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집합 연수 ····· 134
〈표 3 · 89〉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 135

I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Ⅰ.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 · 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령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2026. 4. 1. 기준)

〈표 1 · 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A)	′26(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120,735	124,195	3,460
학교 과정별	장애영아	656	549	582	532	439	369	359	407	470	360	298	-62
	유치원	5,186	5,437	5,630	5,989	6,536	7,197	8,248	8,781	8,746	8,222	7,498	-724
	초등학교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48,448	51,585	54,283	56,725	58,702	1,977
	중학교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21,462	23,005	25,013	27,188	27,881	693
	고등학교	23,943	23,655	22,584	21,502	20,655	20,169	19,867	20,725	22,040	23,326	24,871	1,545
	전공과	4,602	4,989	5,165	5,382	5,445	5,393	5,311	5,200	5,058	4,914	4,945	31
특수학교 수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196	199	3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14,658	15,426	768
교원 수*		18,772	19,327	20,039	20,773	22,145	23,494	24,962	25,599	27,084	28,445	29,773	1,328

* 국·공·사립,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표 1 · 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77	′82	′87	′92	′97	′03	′06	′0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교 수	51	65	95	103	114	137	143	150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196	199

〈표 1 · 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82	′87	′92	′97	′00	′08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생 수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400	25,531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28,942	30,027	31,027	31,993

〈표 1 · 5〉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85	′90	′95	′08	′12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급 수	1,601	3,181	3,440	6,352	8,927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14,658	15,426

〈표 1 · 6〉 연도별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91	′96	′08	′09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생 수	28,795	26,087	37,857	39,380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61,993	65,966	69,908	72,784

〈표 1 · 7〉 연도별 학급 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단위: 학급,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학급 수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특수학교 학급	5,114	5,255	141	2.8	5,443	188	3.6	5,582	139	2.6	5,712	130	2.3	5,836	124	2.2
일반학교 특수학급	12,042	12,712	670	5.6	13,287	575	4.5	13,931	644	4.8	14,658	727	5.2	15,426	768	5.2
특수교육 지원센터	59	56	-3	-5.1	61	5	8.9	69	8	13.1	69	-	0.0	68	-1	-1.4
계	17,215	18,023	808	4.7	18,791	768	4.3	19,582	791	4.2	20,439	857	4.4	21,330	891	4.4

〈표 1 · 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특수학교 배치 학생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7	25,798 (28.9)	401 (0.4)	47,564 (53.2)	15,590 (17.4)	63,154 (70.7)	89,353 (100.0)
2018	25,919 (28.5)	418 (0.5)	48,848 (53.8)	15,595 (17.2)	64,443 (71.0)	90,780 (100.0)
2019	26,084 (28.1)	375 (0.4)	50,812 (54.7)	15,687 (16.9)	66,499 (71.5)	92,958 (100.0)
2020	26,299 (27.6)	316 (0.3)	52,744 (55.3)	16,061 (16.8)	68,805 (72.1)	95,420 (100.0)
2021	27,027 (27.5)	261 (0.3)	54,266 (55.3)	16,600 (16.9)	70,866 (72.2)	98,154 (100.0)
2022	27,979 (27.0)	254 (0.2)	57,948 (55.9)	17,514 (16.9)	75,462 (72.8)	103,695 (100.0)
2023	28,942 (26.4)	294 (0.3)	61,993 (56.5)	18,474 (16.8)	80,467 (73.3)	109,703 (100.0)
2024	30,027 (26.0)	363 (0.3)	65,966 (57.1)	19,254 (16.6)	85,220 (73.7)	115,610 (100.0)
2025	31,027 (25.7)	268 (0.2)	69,908 (57.9)	19,532 (16.2)	89,440 (74.1)	120,735 (100.0)
2026	**31,993 (25.8)**	**216 (0.2)**	**72,784 (58.6)**	**19,202 (15.4)**	**91,986 (74.1)**	**124,195 (100.0)**

〈표 1 · 9〉 연도별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2019	1,937 (2.1)	3,225 (3.5)	49,624 (53.4)	10,200 (11.0)	2,182 (2.3)	13,105 (14.1)	2,204 (2.4)	1,409 (1.5)	1,763 (1.9)	7,309 (7.9)	92,958 (100.0)
2020	1,908 (2.0)	3,132 (3.3)	50,693 (53.1)	9,928 (10.4)	1,993 (2.1)	13,917 (14.6)	2,404 (2.5)	1,226 (1.3)	1,785 (1.9)	8,434 (8.8)	95,420 (100.0)
2021	1,826 (1.9)	3,026 (3.1)	51,788 (52.8)	9,695 (9.9)	1,874 (1.9)	15,215 (15.5)	2,450 (2.5)	1,114 (1.1)	1,799 (1.8)	9,367 (9.5)	98,154 (100.0)
2022	1,753 (1.7)	2,961 (2.9)	53,718 (51.8)	9,639 (9.3)	1,865 (1.8)	17,024 (16.4)	2,622 (2.5)	1,078 (1.0)	1,948 (1.9)	11,087 (10.7)	103,695 (100.0)
2023	1,745 (1.6)	2,907 (2.6)	55,867 (50.9)	9,522 (8.7)	1,831 (1.7)	19,275 (17.6)	2,645 (2.4)	1,037 (0.9)	1,956 (1.8)	12,918 (11.8)	109,703 (100.0)
2024	1,698 (1.5)	2,842 (2.5)	57,883 (50.1)	9,263 (8.0)	1,785 (1.5)	22,194 (19.2)	2,600 (2.2)	1,065 (0.9)	1,979 (1.7)	14,301 (12.4)	115,610 (100.0)
2025	1,678 (1.4)	2,812 (2.3)	59,456 (49.3)	8,987 (7.4)	1,643 (1.4)	25,614 (21.2)	2,681 (2.2)	1,121 (0.9)	1,924 (1.6)	14,819 (12.3)	120,735 (100.0)
2026	**1,626 (1.3)**	**2,733 (2.2)**	**60,311 (48.6)**	**8,639 (7.0)**	**1,526 (1.2)**	**28,798 (23.2)**	**2,661 (2.1)**	**1,154 (0.9)**	**1,876 (1.5)**	**14,871 (12.0)**	**124,195 (100.0)**

2025년 대비 통계 자료 분석

○ 학생 수 변화 추이

–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24,195명으로 3,460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는 91,986명(74.1%)으로 2,546명(2.8%)이 증가함

–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 학생 비율이 2.0%p 증가함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교원 변화 추이

– 특수학교는 총 199교로 2025년보다 3교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15,426학급으로 768학급이 증가함

– 특수교육교원은 29,773명으로 1,328명이 증가함

Ⅱ

2026년 특수교육 현황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Ⅱ. 2026년 특수교육 현황

※ 기준일: 2026. 4. 1.

1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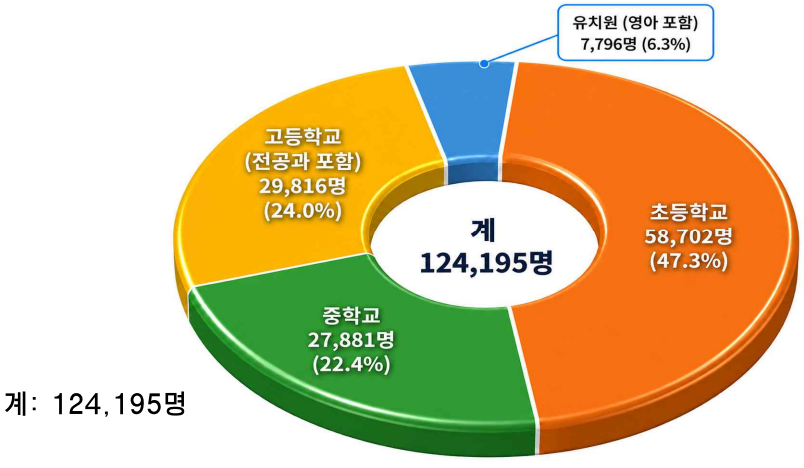
〈표 2 · 1〉 2026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단위: 명, 교, 학급)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31,993**	**72,784**	**19,202**	**216**	**124,195**
학생수	장애유형별	시각장애	956	212	458	-	1,626
		청각장애	493	668	1,562	10	2,733
		지적장애	14,794	39,407	6,103	7	60,311
		지체장애	3,594	2,845	2,157	43	8,639
		정서·행동장애	85	995	446	-	1,526
		자폐성장애	10,835	16,003	1,960	-	28,798
		의사소통장애	191	1,422	1,048	-	2,661
		학습장애	12	704	438	-	1,154
		건강장애	11	80	1,785	-	1,876
		발달지체	1,022	10,448	3,245	156	14,871
		계	**31,993**	**72,784**	**19,202**	**216**	**124,195**
	학교과정별	장애영아	82	-	-	216	298
		유치원	684	5,193	1,621	-	7,498
		초등학교	11,091	38,960	8,651	-	58,702
		중학교	7,509	15,758	4,614	-	27,881
		고등학교	7,840	12,715	4,316	-	24,871
		전공과	4,787	158	-	-	4,945
		계	**31,993**	**72,784**	**19,202**	**216**	**124,195**
학교 및 센터 수			199	12,345		197	12,741
				9,930	8,176		
학급 수			5,836	15,426	18,255	68	39,585
특수학교(급) 교원 수*			11,092	16,941	-	1,740	29,773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			5,675	11,831	212	-	17,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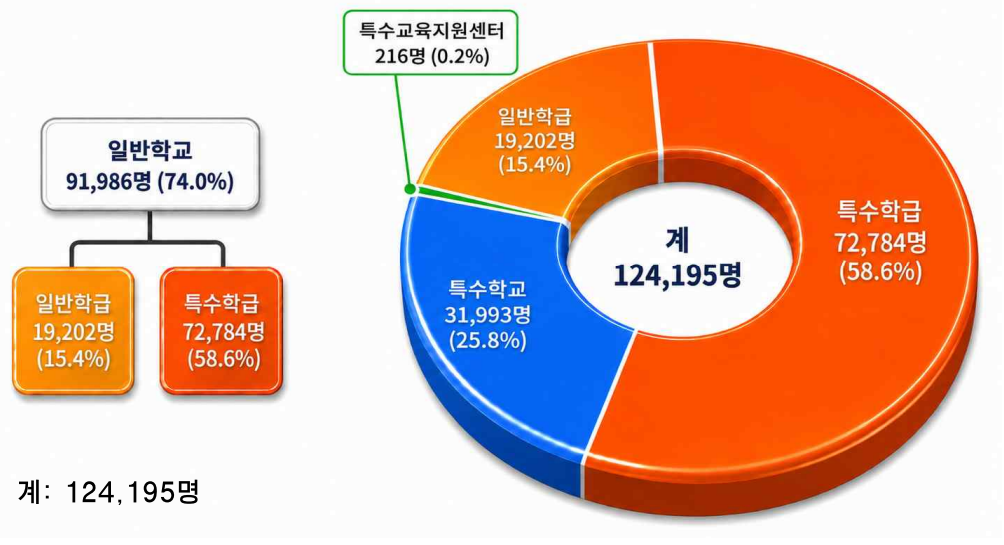
* 국·공·사립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계: 124,195명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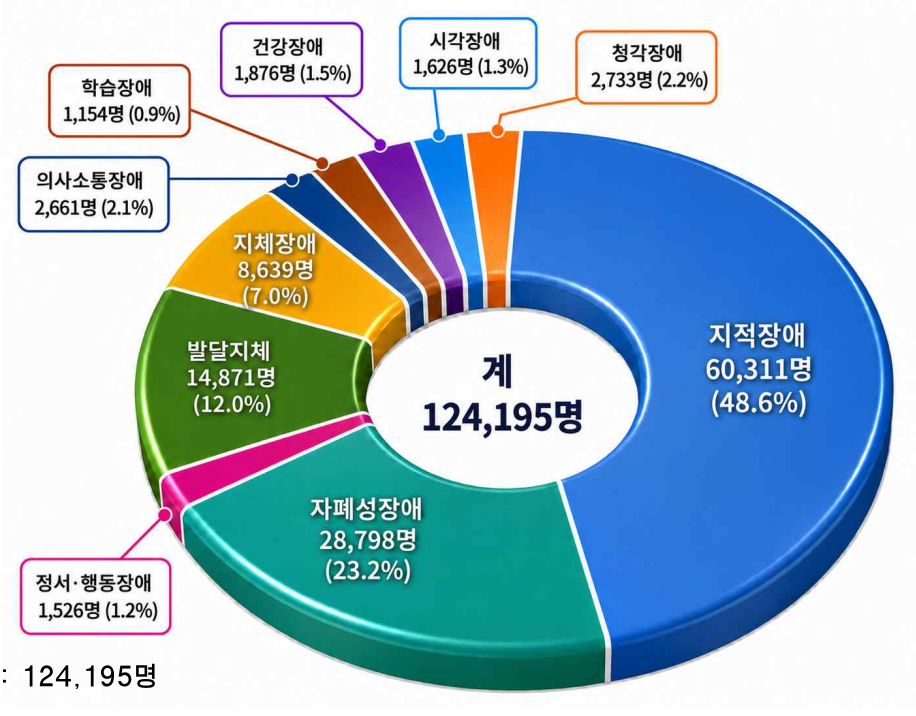
계: 124,195명

〈표 2 · 2〉 배치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31,993 (25.8)	72,784 (58.6)	19,202 (15.4)	91,986 (74.0)	216 (0.2)	124,195 (100.0)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표 2 · 3〉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계
1,626 (1.3)	2,733 (2.2)	60,311 (48.6)	8,639 (7.0)	1,526 (1.2)	28,798 (23.2)	2,661 (2.1)	1,154 (0.9)	1,876 (1.5)	14,871 (12.0)	124,1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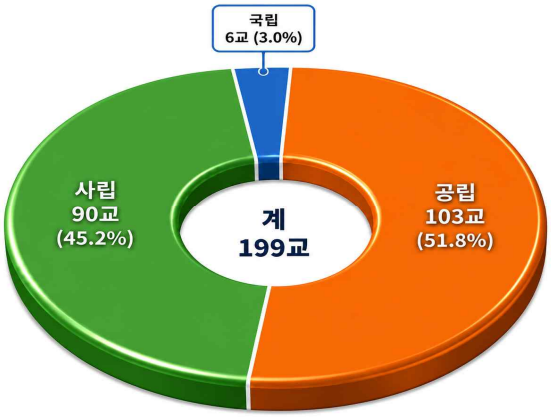
〈표 2 · 4〉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장애유형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계
중도중복장애	지적장애	63	61	795	15	934
	자폐성장애	6	13	22	25	66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5			5

2 특수학교 현황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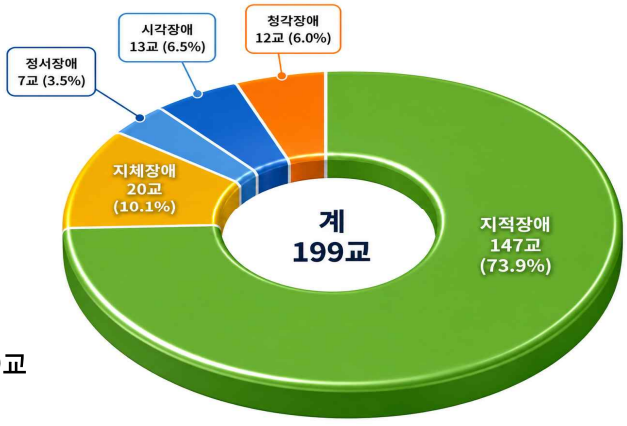
계: 199교

〈표 2 · 5〉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립	6	178	939	356
공립	103	3,620	20,110	6,851
사립	90	2,038	10,944	3,885
계	199	5,836	31,993	11,092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현황〕



계: 199교

〈표 2 · 6〉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학교 수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교 수	13	12	147	20	7	199

〈표 2 · 7〉 시·도별 설립별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설립별 학교 수				장애유형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11	18	32	3	4	16	6	3	32
부산	-	9	7	16	1	1	13	1	-	16
대구	-	5	6	11	1	1	6	2	1	11
인천	-	6	4	10	1	1	7	1	-	10
광주	-	4	2	6	1	-	4	1	-	6
대전	-	4	2	6	1	-	4	1	-	6
울산	-	2	2	4	-	1	3	-	-	4
세종	-	2	-	2	-	-	2	-	-	2
경기	2	15	22	39	-	2	33	3	1	39
강원	-	8	1	9	1	-	8	-	-	9
충북	-	4	7	11	2	1	6	1	1	11
충남	1	8	2	11	-	-	10	1	-	11
전북	-	7	4	11	1	1	7	2	-	11
전남	-	4	5	9	1	-	8	-	-	9
경북	-	3	5	8	-	-	7	-	1	8
경남	-	9	2	11	-	-	11	-	-	11
제주	-	2	1	3	-	-	2	1	-	3
계	**6**	**103**	**90**	**199**	**13**	**12**	**147**	**20**	**7**	**199**

〈표 2 · 8〉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단위: 교)

시도	계	학교과정 설치별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서울	32	6	22	28	28	27	26
부산	16	4	10	13	14	12	10
대구	11	-	4	10	10	11	11
인천	10	1	7	9	10	9	8
광주	6	3	6	6	6	6	5
대전	6	2	4	6	6	6	6
울산	4	-	3	4	4	4	4
세종	2	2	2	2	2	2	2
경기	39	4	32	34	36	35	30
강원	9	-	5	9	9	9	8
충북	11	1	8	10	10	10	10
충남	11	1	4	9	9	11	9
전북	11	1	3	9	10	10	10
전남	9	-	5	9	9	9	9
경북	8	-	4	8	8	8	8
경남	11	-	5	11	11	11	11
제주	3	-	3	3	3	3	3
계	**199**	**25**	**127**	**180**	**185**	**183**	**170**

※ 유·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는 각 학교과정별로 각각 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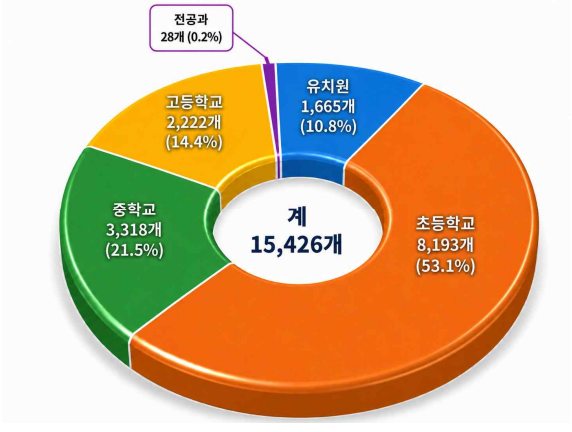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표 2 · 9〉 특수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과정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치원	1,288	1,665	5,193	1,828
초등학교	5,115	8,193	38,960	8,668
중학교	2,279	3,318	15,758	3,657
고등학교	1,231	2,222	12,715	2,737
전공과	17	28	158	51
계	**9,930**	**15,426**	**72,784**	**16,941**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현황〕



계: 15,426개

〈표 2 · 10〉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과정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 치 원	1,193	1,437	1,621
초등학교	3,532	8,375	8,651
중 학 교	1,961	4,401	4,614
고등학교	1,490	4,042	4,316
계	**8,176**	**18,255**	**19,202**

4 순회교육 현황

〈표 2 · 11〉 순회교육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별					학교과정별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영아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	891	140	45	-	1,076	117	429	298	232	1,076	321	327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432	84	3	26	545	48	233	130	134	545	206	217
특수교육 지원센터	423	41	32	1,934	2,430	802	966	430	232	2,430	-	1,720*
계	**1,746**	**265**	**80**	**1,960**	**4,051**	**967**	**1,628**	**858**	**598**	**4,051**	**527**	**2,264**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비정규교사 48명 포함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표 2 · 1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단위: 명, 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수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 학급 수	배치 인력 현황		
			교사	일반직 공무원	기타 (치료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등)
197	216	68	1,740	55	567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표 2 · 1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		취업		비진학 · 미취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 / 전공과)	진학률	취업자 수	취업률	
고교 과정	특수학교 고등과정	2,299	1,241	54.0	107	10.1	951
	고등학교 특수학급	3,813	2,206	57.9	534	33.2	1,073
	고등학교 일반학급	1,319	869	65.9	42	9.3	408
	소계	**7,431**	**4,316**	**58.1**	**683**	**21.9**	**2,432**
전공과	특수학교 전공과	2,051	43	2.1	1,098	54.7	910
	고등학교 전공과	85	4	4.7	52	64.2	29
	소계	**2,136**	**47**	**2.2**	**1,150**	**55.1**	**939**
계		**9,567**	**4,363**	**45.6**	**1,833**	**35.2**	**3,371**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2026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Ⅲ

2026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33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75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86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113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19

Ⅲ. 2026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2026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3%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3 ·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명, %)

시도	전체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58,683	323,802	193,896	197,888	774,269	741	7,012	3,479	3,850	15,082	1.3	2.2	1.8	1.9	1.9
부산	30,743	130,133	77,704	70,340	308,920	511	3,703	1,716	1,873	7,803	1.7	2.8	2.2	2.7	2.5
대구	27,256	105,332	62,466	58,411	253,465	496	2,999	1,339	1,572	6,406	1.8	2.8	2.1	2.7	2.5
인천	33,187	138,836	81,498	75,229	328,750	641	4,159	1,999	2,069	8,868	1.9	3.0	2.5	2.8	2.7
광주	17,480	68,664	41,770	40,280	168,194	180	1,537	845	982	3,544	1.0	2.2	2.0	2.4	2.1
대전	17,202	63,491	38,822	37,609	157,124	273	1,650	735	971	3,629	1.6	2.6	1.9	2.6	2.3
울산	11,653	54,198	32,977	31,022	129,850	207	1,412	696	836	3,151	1.8	2.6	2.1	2.7	2.4
세종	5,472	29,386	16,481	14,648	65,987	155	668	267	204	1,294	2.8	2.3	1.6	1.4	2.0
경기	133,889	654,452	384,286	357,558	1,530,185	1,862	15,722	7,122	7,012	31,718	1.4	2.4	1.9	2.0	2.1
강원	12,123	58,433	35,916	35,764	142,236	207	1,460	799	905	3,371	1.7	2.5	2.2	2.5	2.4
충북	13,133	69,854	42,266	40,069	165,322	401	2,403	1,211	1,309	5,324	3.1	3.4	2.9	3.3	3.2
충남	18,751	99,737	60,950	59,349	238,787	468	3,137	1,409	1,506	6,520	2.5	3.1	2.3	2.5	2.7
전북	14,669	70,534	46,907	47,208	179,318	377	2,263	1,127	1,177	4,944	2.6	3.2	2.4	2.5	2.8
전남	13,381	71,431	46,039	44,680	175,531	249	2,184	1,111	1,172	4,716	1.9	3.1	2.4	2.6	2.7
경북	23,243	101,185	63,119	63,189	250,736	429	3,268	1,507	1,698	6,902	1.8	3.2	2.4	2.7	2.8
경남	33,237	148,297	93,889	88,462	363,885	456	4,020	2,044	2,190	8,710	1.4	2.7	2.2	2.5	2.4
제주	4,746	34,560	20,316	18,497	78,119	143	1,105	475	490	2,213	3.0	3.2	2.3	2.6	2.8
계	468,848	2,222,325	1,339,302	1,280,203	5,310,678	7,796	58,702	27,881	29,816	124,195	1.7	2.6	2.1	2.3	2.3

*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학생을 포함
※ 연도별 비율: 1.7(2021), 1.8(2022), 1.9(2023), 2.0(2024), 2.2(2025), 2.3(2026)

(2) 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31,993명으로 2025년의 31,027명에 비해 966명이 증가함

〈표 3 · 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생 수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28,942	30,027	31,027	**31,993**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별 비율은 시도의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설립 분포에 따라 차이가 있음

〈표 3 · 3〉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계
서울	272	213	1,268	878	1	1,653	2	-	3	192	4,482
부산	71	14	873	304	10	774	6	1	2	155	2,210
대구	65	45	1,101	245	17	423	37	1	2	141	2,077
인천	90	38	957	188	2	692	31	1	-	28	2,027
광주	73	20	680	163	3	451	4	1	-	74	1,469
대전	86	12	527	145	-	407	5	-	-	3	1,185
울산	15	20	478	43	5	266	1	-	-	12	840
세종	-	1	139	40	1	165	4	3	-	16	369
경기	26	30	2,649	549	7	2,346	30	-	1	74	5,712
강원	42	4	583	61	2	328	13	-	-	47	1,080
충북	120	60	783	140	14	372	2	-	-	87	1,578
충남	1	3	937	190	-	577	3	-	-	14	1,725
전북	43	11	751	93	3	337	12	-	2	69	1,321
전남	41	7	722	119	5	380	11	-	1	30	1,316
경북	2	3	1,003	92	5	478	17	-	-	14	1,614
경남	9	11	1,061	281	10	918	8	5	-	64	2,367
제주	-	1	282	63	-	268	5	-	-	2	621
계	**956**	**493**	**14,794**	**3,594**	**85**	**10,835**	**191**	**12**	**11**	**1,022**	**31,993**

-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는 국립 939명(2.9%), 공립 20,110명(62.9%), 사립 10,944명(34.2%)임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3 · 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사립학교 위탁비율
서울	458	1,865	2,159	4,482	48.2
부산	-	1,636	574	2,210	26.0
대구	-	1,241	836	2,077	40.3
인천	-	1,650	377	2,027	18.6
광주	-	1,213	256	1,469	17.4
대전	-	891	294	1,185	24.8
울산	-	557	283	840	33.7
세종	-	369	-	369	-
경기	377	2,984	2,351	5,712	41.2
강원	-	1,016	64	1,080	5.9
충북	-	758	820	1,578	52.0
충남	104	1,403	218	1,725	12.6
전북	-	761	560	1,321	42.4
전남	-	764	552	1,316	41.9
경북	-	524	1,090	1,614	67.5
경남	-	2,060	307	2,367	13.0
제주	-	418	203	621	32.7
계	**939(2.9)**	**20,110(62.9)**	**10,944(34.2)**	**31,993(100.0)**	**34.2**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특수학급 학생 수는 72,784명으로 2025년의 69,908명에 비해 2,876명이 증가함
 -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비해 768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함

〈표 3 · 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생 수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61,993	65,966	69,908	**72,784**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5,193명, 초등학교 38,960명, 중학교 15,758명, 고등학교 12,873명(전공과 포함)임

〈표 3 · 6〉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465	-	465	10	4,328	-	4,338	12	1,873	19	1,904	20	1,297	268	1,585	42	7,963	287	8,292
부산	-	218	-	218	5	2,035	3	2,043	-	763	13	776	7	625	97	729	12	3,641	113	3,766
대구	-	224	-	224	11	1,521	-	1,532	6	600	-	606	7	384	14	405	24	2,729	14	2,767
인천	-	446	-	446	6	2,792	-	2,798	-	1,084	5	1,089	-	762	62	824	6	5,084	67	5,157
광주	-	109	-	109	6	800	-	806	11	346	9	366	14	246	74	334	31	1,501	83	1,615
대전	-	208	-	208	-	1,066	-	1,066	-	361	9	370	-	307	40	347	-	1,942	49	1,991
울산	-	143	-	143	-	1,006	-	1,006	-	413	-	413	-	315	-	315	-	1,877	-	1,877
세종	-	133	-	133	-	415	-	415	-	135	-	135	-	80	-	80	-	763	-	763
경기	-	1,467	4	1,471	-	11,366	21	11,387	-	4,522	169	4,691	-	3,724	158	3,882	-	21,079	352	21,431
강원	3	144	-	147	6	999	-	1,005	-	378	-	378	10	300	-	310	19	1,821	-	1,840
충북	3	307	-	310	8	1,519	-	1,527	12	617	14	643	16	474	20	510	39	2,917	34	2,990
충남	2	357	-	359	6	2,297	-	2,303	5	860	45	910	2	663	24	689	15	4,177	69	4,261
전북	-	257	-	257	12	1,471	-	1,483	-	565	22	587	7	367	40	414	19	2,660	62	2,741
전남	-	176	-	176	4	1,638	-	1,642	-	677	15	692	-	567	24	591	4	3,058	39	3,101
경북	-	171	-	171	-	2,135	13	2,148	-	723	133	856	-	559	191	750	-	3,588	337	3,925
경남	-	301	-	301	2	2,765	11	2,778	6	970	110	1,086	7	762	137	906	15	4,798	258	5,071
제주	-	55	-	55	5	678	-	683	15	239	2	256	18	159	25	202	38	1,131	27	1,196
계	**8**	**5,181**	**4**	**5,193**	**81**	**38,831**	**48**	**38,960**	**67**	**15,126**	**565**	**15,758**	**108**	**11,591**	**1,174**	**12,873**	**264**	**70,729**	**1,791**	**72,784**

*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58명(대구 14명, 인천 18명, 경기 118명, 충북 8명) 포함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9,202명으로 2025년의 19,532명에 비해 330명이 감소함

〈표 3 · 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생 수	15,344	15,590	15,595	15,687	16,061	16,600	17,514	18,474	19,254	19,532	**19,202**

-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유치원 1,621명, 초등학교 8,651명, 중학교 4,614명, 고등학교 4,316명임

〈표 3 · 8〉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소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15	63	78	6	1,029	36	1,071	3	451	106	560	10	286	268	564	19	1,781	473	2,273
부산	-	47	154	201	2	813	1	816	-	356	57	413	9	289	99	397	11	1,505	311	1,827
대구	-	37	204	241	1	748	2	751	6	248	40	294	7	180	78	265	14	1,213	324	1,551
인천	-	62	94	156	-	687	4	691	-	402	15	417	-	373	40	413	-	1,524	153	1,677
광주	-	6	26	32	-	165	1	166	2	102	30	134	3	80	45	128	5	353	102	460
대전	-	8	26	34	-	192	-	192	-	105	6	111	-	84	30	114	-	389	62	451
울산	-	20	28	48	-	148	-	148	-	103	6	109	-	112	11	123	-	383	45	428
세종	-	11	-	11	-	83	-	83	-	36	-	36	-	30	1	31	-	160	1	161
경기	-	76	58	134	-	2,204	16	2,220	-	1,009	134	1,143	-	827	181	1,008	-	4,116	389	4,505
강원	-	31	7	38	-	141	-	141	-	126	13	139	5	112	10	127	5	410	30	445
충북	-	30	18	48	6	299	4	309	5	178	11	194	4	169	22	195	15	676	55	746
충남	-	46	19	65	1	252	1	254	1	81	20	102	-	80	29	109	2	459	69	530
전북	-	37	46	83	4	369	-	373	-	178	42	220	9	123	71	203	13	707	159	879
전남	-	45	10	55	-	121	1	122	-	59	12	71	-	43	7	50	-	268	30	298
경북	-	82	146	228	1	627	14	642	-	219	74	293	-	120	65	185	1	1,048	299	1,348
경남	-	69	67	136	1	472	3	476	3	240	70	313	4	233	108	345	8	1,014	248	1,270
제주	-	11	22	33	2	194	-	196	1	54	10	65	3	31	25	59	6	290	57	353
계	**-**	**633**	**988**	**1,621**	**24**	**8,544**	**83**	**8,651**	**21**	**3,947**	**646**	**4,614**	**54**	**3,172**	**1,090**	**4,316**	**99**	**16,296**	**2,807**	**19,202**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68학급이며, 장애영아 수는 216명임
- 연령별로 1세 미만 9명, 1세 63명, 2세 144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 지원 영아 수는 125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91명임

〈표 3 · 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단위: 학급, 명)

시도	센터 설치 장애영아 학급 수	연령별 지원 영아 수				교육유형별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교육 영아 수	계
서울	11	2	10	23	35	35	-	35
부산	-	-	-	-	-	-	-	-
대구	3	1	3	7	11	9	2	11
인천	5	-	3	4	7	5	2	7
광주	-	-	-	-	-	-	-	-
대전	2	-	-	2	2	2	-	2
울산	-	-	5	1	6	-	6	6
세종	-	-	-	1	1	-	1	1
경기	30	4	22	44	70	21	49	70
강원	1	-	4	2	6	2	4	6
충북	6	-	2	8	10	4	6	10
충남	3	1	1	2	4	3	1	4
전북	2	-	1	2	3	-	3	3
전남	-	-	-	1	1	-	1	1
경북	2	1	8	6	15	-	15	15
경남	1	-	-	2	2	1	1	2
제주	2	-	4	39	43	43	-	43
계	**68**	**9**	**63**	**144**	**216**	**125**	**91**	**216**

2)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99교로 2025년 대비 3교 증가하였음

〈표 3 · 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교 수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196	**199**

- 전국 199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6교, 공립 103교, 사립 90교로 국·공립학교 비율이 54.8%임
- 전국 199개 특수학교를 주 장애유형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2교, 지적장애학교 147교, 지체장애학교 20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3.9%임

〈표 3 · 11〉 설립별 및 주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국립	1	1	2	1	1	6
공립	2	2	92	6	1	103
사립	10	9	53	13	5	90
계	**13**	**12**	**147**	**20**	**7**	**199**

- 전국 199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39교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특별시 32교, 부산광역시 16교 등의 순임

〈표 3 · 12〉 장애유형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4	16	6	3	32
부산	1	1	13	1	-	16
대구	1	1	6	2	1	11
인천	1	1	7	1	-	10
광주	1	-	4	1	-	6
대전	1	-	4	1	-	6
울산	-	1	3	-	-	4
세종	-	-	2	-	-	2
경기	-	2	33	3	1	39
강원	1	-	8	-	-	9
충북	2	1	6	1	1	11
충남	-	-	10	1	-	11
전북	1	1	7	2	-	11
전남	1	-	8	-	-	9
경북	-	-	7	-	1	8
경남	-	-	11	-	-	11
제주	-	-	2	1	-	3
계	**13**	**12**	**147**	**20**	**7**	**199**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립특수학교, 그 외 시도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 · 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11	18	32
부산	-	9	7	16
대구	-	5	6	11
인천	-	6	4	10
광주	-	4	2	6
대전	-	4	2	6
울산	-	2	2	4
세종	-	2	-	2
경기	2	15	22	39
강원	-	8	1	9
충북	-	4	7	11
충남	1	8	2	11
전북	-	7	4	11
전남	-	4	5	9
경북	-	3	5	8
경남	-	9	2	11
제주	-	2	1	3
계	**6**	**103**	**90**	**199**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예술·체육 및 직업교육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설립 지원
- 도시형 캠퍼스 등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운영 제도의 활성화

(2) 특수학급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현황 및 추진실적

- 전국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15,426학급으로 2025년보다 768학급이 증가함

〈표 3 · 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학급 수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14,658	**15,426**

- 학교과정별 특수학급은 유치원 1,665학급, 초등학교 8,193학급, 중학교 3,318학급, 고등학교 2,250학급(전공과 포함)으로 초등학교 과정이 전체의 53.1%를 차지함
- 설립별 특수학급은 국립 46학급, 공립 15,024학급, 사립 356학급으로 총 15,426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특수학급이 전체의 97.7%를 차지함

〈표 3 · 15〉 학교과정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156	-	156	2	909	-	911	2	351	3	356	3	250	58	311	7	1,666	61	1,734
부산	-	76	-	76	1	401	1	403	-	150	2	152	1	88	16	105	2	715	19	736
대구	-	60	-	60	2	288	-	290	1	110	-	111	1	61	2	64	4	519	2	525
인천	-	126	-	126	1	571	-	572	-	212	1	213	-	128	8	136	1	1,037	9	1,047
광주	-	34	-	34	1	177	-	178	2	76	3	81	2	37	13	52	5	324	16	345
대전	-	59	-	59	-	220	-	220	-	84	2	86	-	50	9	59	-	413	11	424
울산	-	46	-	46	-	197	-	197	-	83	-	83	-	56	-	56	-	382	-	382
세종	-	46	-	46	-	93	-	93	-	34	-	34	-	17	-	17	-	190	-	190
경기	-	484	1	485	-	2,243	3	2,246	-	931	33	964	-	628	24	652	-	4,286	61	4,347
강원	1	41	-	42	1	232	-	233	-	92	-	92	1	62	-	63	3	427	-	430
충북	1	101	-	102	2	343	-	345	2	140	5	147	3	82	3	88	8	666	8	682
충남	1	108	-	109	1	506	-	507	1	186	10	197	1	118	5	124	4	918	15	937
전북	-	85	-	85	2	351	-	353	-	127	7	134	1	64	7	72	3	627	14	644
전남	-	68	-	68	1	417	-	418	-	177	4	181	-	106	5	111	1	768	9	778
경북	-	55	-	55	-	481	2	483	-	162	29	191	-	103	35	138	-	801	66	867
경남	-	97	-	97	1	620	2	623	1	220	28	249	1	139	31	171	3	1,076	61	1,140
제주	-	19	-	19	1	120	-	121	2	44	1	47	2	26	3	31	5	209	4	218
계	**3**	**1,661**	**1**	**1,665**	**16**	**8,169**	**8**	**8,193**	**11**	**3,179**	**128**	**3,318**	**16**	**2,015**	**219**	**2,250**	**46**	**15,024**	**356**	**15,426**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28학급(대구 2학급, 인천 3학급, 경기 22학급, 충북 1학급) 포함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유치원 3.1명, 초등학교 4.9명, 중학교 4.9명, 고등학교 5.9명임

〈표 3 · 16〉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2.6	5.5	5.3	5.6	3.0	4.8	5.3	5.1	2.9	4.9	5.3	5.3
부산	2.7	5.6	5.4	6.0	2.9	5.1	5.1	6.9	2.8	5.2	5.2	6.4
대구	3.3	5.5	5.7	6.7	3.7	5.3	5.5	6.3	3.7	5.3	5.6	6.6
인천	2.7	5.2	5.4	6.4	3.5	4.9	5.1	6.1	3.5	4.9	5.2	6.2
광주	2.8	5.0	5.1	6.2	3.2	4.5	4.5	6.4	3.1	4.7	4.8	6.3
대전	2.6	5.3	5.6	6.5	3.5	4.8	4.3	5.9	3.4	5.0	4.8	6.3
울산	2.5	4.7	5.1	6.5	3.1	5.1	5.0	5.6	3.1	5.0	5.0	6.1
세종	2.5	5.9	6.0	5.5	2.9	4.5	4.0	4.7	2.9	4.8	4.6	5.1
경기	2.9	5.9	5.9	6.3	3.0	5.1	4.9	6.0	3.0	5.2	5.1	6.1
강원	2.7	4.4	5.0	5.6	3.5	4.3	4.1	4.9	3.4	4.3	4.5	5.3
충북	2.2	4.7	5.1	5.9	3.0	4.4	4.4	5.8	2.9	4.5	4.6	5.8
충남	3.6	4.8	5.2	5.8	3.3	4.5	4.6	5.6	3.3	4.6	4.8	5.7
전북	2.8	5.3	5.1	6.3	3.0	4.2	4.4	5.8	3.0	4.4	4.6	6.0
전남	3.4	4.9	5.5	5.8	2.6	3.9	3.8	5.3	2.6	4.1	4.3	5.5
경북	2.5	5.3	5.3	7.0	3.1	4.4	4.5	5.4	3.0	4.6	4.7	6.1
경남	2.4	4.8	5.4	5.9	3.1	4.5	4.4	5.3	3.1	4.5	4.7	5.6
제주	2.4	5.5	5.7	6.0	2.9	5.6	5.4	6.5	2.8	5.6	5.5	6.2
평균	**2.7**	**5.3**	**5.4**	**6.1**	**3.1**	**4.8**	**4.7**	**5.7**	**3.1**	**4.9**	**4.9**	**5.9**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향후 과제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등 장애유형별 또는 특정 분야별 특수학급 설치·운영 추진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영아 학급은 특수학교 35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68학급으로, 총 103학급이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82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216명으로 총 298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 연령별로는 1세 미만 20명, 1세 85명, 2세 193명으로 총 298명임

〈표 3 · 17〉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학급)

시도	연령별 지원 영아 수				배치기관별 지원 영아 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합계		
									지원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영아 학급 수	영아를 배치한 유치원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센터 지원 영아 수	순회 지원 영아 수	계	영아 학급 수	영아를 배치한 유치원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서울	4	14	29	47	7	-	12	11	35	-	35	18	-	47
부산	1	3	8	12	6	1	12	-	-	-	0	6	1	12
대구	1	3	7	11	-	-	-	3	9	2	11	3	-	11
인천	1	4	7	12	2	2	5	5	5	2	7	7	2	12
광주	3	3	7	13	3	5	13	-	-	-	0	3	5	13
대전	-	2	8	10	5	-	8	2	2	-	2	7	-	10
울산	-	5	1	6	-	-	-	-	-	6	6	-	-	6
세종	-	1	4	5	2	-	4	-	-	1	1	2	-	5
경기	6	27	54	87	6	-	17	30	21	49	70	36	-	87
강원	-	4.0	2.0	6	-	-	-	1	2	4	6	1	-	6
충북	1	2	8	11	1	-	1	6	4	6	10	7	-	11
충남	2	3	5	10	1	3	6	3	3	1	4	4	3	10
전북	-	2	5	7	2	-	4	2	-	3	3	4	-	7
전남	-	-	1	1	-	-	-	-	-	1	1	-	-	1
경북	1	8	6	15	-	-	-	2	-	15	15	2	-	15
경남	-	-	2	2	-	-	-	1	1	1	2	1	-	2
제주	-	4	39	43	-	-	-	2	43	-	43	2	-	43
계	**20**	**85**	**193**	**298**	**35**	**11**	**82**	**68**	**125**	**91**	**216**	**103**	**11**	**298**

향후 과제

-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를 통해 적기에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기관) 연계 강화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장애영아의 가족지원 강화

4)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27교 245학급(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0교 55학급 포함),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1,288교 1,665학급으로 총 1,415교 1,910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표 3 · 18〉 유아 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교, 학급)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교 수	127	10	1,288	**1,415**
학급 수	245	55	1,665	**1,910**

-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684명(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69명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에 5,193명, 유치원 일반학급 1,621명으로 총 7,498명임

〈표 3 · 19〉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일반유치원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유아 수	684	169	5,193	1,621	**7,498**

-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비는 공립유치원 5,814명, 사립유치원 992명으로 총 6,806명이 지원받고 있음
- 1인당 월 교육비 평균은 공립유치원 254.6천 원, 사립유치원 536.2천 원임

〈표 3 · 20〉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1인당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시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대상자 수	지원액(월)	대상자 수	지원액(월)
서울	480	306	63	844
부산	265	220	154	590
대구	261	150	204	401
인천	508	290	94	584
광주	115	476	26	710
대전	216	220	26	510
울산	163	180	28	450
세종	144	310	-	-
경기	1,543	396	62	666
강원	175	201	7	405
충북	337	220	18	600
충남	403	200	19	600
전북	294	170	46	605
전남	221	220	10	590
경북	253	200	146	471
경남	370	220	67	540
제주	66	350	22	550
합계 및 평균	**5,814**	**254.6**	**992**	**536.2**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표 3 · 21〉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

특수교육통계('26.4.1.기준)				보육통계('25.12.31.기준)				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소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127	1,288	1,193	2,608	178	1,830	533	2,541	**5,149**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강화
- 유아단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연계 강화

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전국에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 인력은 교사 1,740명, 일반직 55명, 치료지원인력과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기타 인력 567명으로 총 2,362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연간 예산 총액은 약 2,818억 원임

〈표 3 · 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백만 원)

시도	센터수	교사			일반직			기타				계	연간 예산(총액)
		정규	계약	소계	정규	계약	소계	치료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기타	소계		
서울	11	115	4	119	4	-	4	-	-	38	38	161	15,301
부산	6	85	3	88	8	-	8	-	1	4	5	101	26,323
대구	6	103	6	109	4	-	4	-	11	1	12	125	9,561
인천	6	92	-	92	-	-	-	8	1	9	18	110	9,139
광주	3	35	11	46	-	-	-	-	2	11	13	59	17,474
대전	5	57	-	57	6	-	6	3	1	8	12	75	10,365
울산	3	44	-	44	1	-	1	35	1	5	41	86	10,155
세종	1	21	-	21	2	-	2	-	2	-	2	25	10,825
경기	27	389	-	389	6	-	6	43	1	50	94	489	38,860
강원	18	63	1	64	1	-	1	30	-	7	37	102	4,721
충북	11	101	-	101	9	-	9	13	-	11	24	134	25,380
충남	15	102	3	105	6	1	7	36	1	30	67	179	42,438
전북	15	90	-	90	4	-	4	2	-	21	23	117	12,147
전남	23	75	-	75	-	-	-	26	-	41	67	142	10,203
경북	23	141	-	141	-	-	-	10	-	27	37	178	11,268
경남	21	158	1	159	3	-	3	63	-	7	70	232	15,728
제주	3	39	1	40	-	-	-	7	-	-	7	47	11,871
계	**197**	**1,710**	**30**	**1,740**	**54**	**1**	**55**	**276**	**21**	**270**	**567**	**2,362**	**281,759**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186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54개를 운영하고 있음

〈표 3 · 23〉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시도	통합교육지원단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지원단 수	구성인원 수	센터 수	거점 영역
서울	11	193	5	시각(2), 청각(2), 지체중복(1)
부산	6	63	6	시각(1), 청각(1), 지체(1), 발달(1), 진로직업(1), 장애영유아(1)
대구	6	148	3	시각(1), 청각(1), 정서(1)
인천	6	108	2	시각(1), 청각(1)
광주	3	83	1	시청각(1)
대전	4	60	1	시청각(1)
울산	3	20	1	시청각(1)
세종	1	19	-	-
경기	25	338	5	시각(1), 청각(1), 시청각(1), 지체중복(1), 건강(1)
강원	17	173	2	시각(1), 청각(1)
충북	10	112	4	시각(2), 청각(1), 발달(1)
충남	14	131	1	시청각(1)
전북	14	177	4	시각(1), 청각(1), 지체(1), 행동중재(1)
전남	22	209	3	시청각(3)
경북	22	213	4	시청각(4)
경남	19	195	10	시청각(2), 전환교육(4), 시청각·전환교육(1), 진로직업(1), 장애영유아·전환교육(1), 시청각·장애영유아·전환교육(1)
제주	3	22	2	시청각(2)
계	**186**	**2,264**	**54**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학교-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담당 교육전문직, 교사, 행정직원 등 전문인력 배치·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지원 확대

6) 장애 발견 진단·배치 체계 구축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학생 52,005명 중 45,031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배치율은 86.6%임

〈표 3 · 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단위: 명, %)

시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배치 비율	선정 취소자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서울	1,119	858	2,556	2,233	952	763	66	54	4,693	3,908	83.3	148
부산	814	731	1,650	1,555	1,269	980	-	-	3,733	3,266	87.5	142
대구	775	640	1,370	1,293	1,188	1,073	15	12	3,348	3,018	90.1	99
인천	756	546	2,084	1,928	1,190	976	11	11	4,041	3,461	85.6	250
광주	319	304	634	483	278	194	-	-	1,231	981	79.7	62
대전	337	337	834	721	276	231	3	3	1,450	1,292	89.1	55
울산	222	200	925	717	320	258	6	6	1,473	1,181	80.2	24
세종	126	124	388	327	126	78	-	-	640	529	82.7	16
경기	2,486	1,592	8,796	8,070	2,890	2,486	122	103	14,294	12,251	85.7	939
강원	263	263	697	596	255	201	10	8	1,225	1,068	87.2	157
충북	445	405	1,176	1,117	454	387	14	13	2,089	1,922	92.0	102
충남	618	558	2,010	1,852	371	312	3	3	3,002	2,725	90.8	68
전북	477	468	1,183	1,081	634	517	8	8	2,302	2,074	90.1	66
전남	503	401	1,480	1,338	197	188	1	1	2,181	1,928	88.4	130
경북	427	364	1,375	1,282	843	689	18	14	2,663	2,349	88.2	66
경남	428	387	1,611	1,389	679	509	1	1	2,719	2,286	84.1	72
제주	187	170	440	415	187	134	107	73	921	792	86.0	21
계	**10,302**	**8,348**	**29,209**	**26,397**	**12,109**	**9,976**	**385**	**310**	**52,005**	**45,031**	**86.6**	**2,417**
영아	118	116	-	-	-	-	385	310	503	426	84.7	89
유	578	561	4,161	3,681	2,355	1,749	-	-	7,094	5,991	84.5	669
초	3,883	2,691	13,698	12,072	5,120	4,114	-	-	22,701	18,877	83.2	1,039
중	3,261	2,698	6,827	6,241	2,829	2,457	-	-	12,917	11,396	88.2	302
고	2,462	2,282	4,523	4,403	1,805	1,656	-	-	8,790	8,341	94.9	318

※ 기간: 2025년 4월 ~ 2026년 3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자 수 포함

-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34명이며, 이 중 6세는 216명, 7세는 84명, 8세 이상은 134명으로 나타남

〈표 3 · 25〉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단위: 명)

시도	6세		7세		8세 이상		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20	7	3	2	2	1	25	10
부산	44	12	16	4	25	9	85	25
대구	93	29	47	10	44	26	184	65
인천	2	1	2	-	11	3	15	4
광주	-	-	-	-	-	-	-	-
대전	2	-	-	-	2	-	4	-
울산	7	6	-	-	-	-	7	6
세종	-	-	1	-	3	-	4	-
경기	25	6	8	1	11	3	44	10
강원	-	-	-	-	2	1	2	1
충북	1	-	-	-	-	-	1	-
충남	3	-	-	-	-	-	3	-
전북	10	5	3	-	10	3	23	8
전남	-	-	-	-	4	1	4	1
경북	1	-	-	-	6	-	7	-
경남	8	2	4	1	9	6	21	9
제주	-	-	-	-	5	2	5	2
계	**216**	**68**	**84**	**18**	**134**	**55**	**434**	**141**

※ 2026. 6. 1. 기준

-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은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31.3%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23.3%로 나타남

〈표 3 · 26〉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단위: 명, %)

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계
	인근에 특수교육 기관이 없어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타	
서울	-	-	12	5	2	6	25
부산	10	8	3	2	62	-	85
대구	-	30	26	99	21	8	184
인천	1	4	4	3	-	3	15
광주	-	-	-	-	-	-	-
대전	-	-	3	-	-	1	4
울산	-	-	7	-	-	-	7
세종		2	2				4
경기	-	3	4	25	5	7	44
강원	-	1	-	-	1	-	2
충북	-	1	-	-	-	-	1
충남	-	1	-	1	1	-	3
전북	2	-	9	-	4	8	23
전남	-	1	1	-	-	2	4
경북	-	1	1	-	4	1	7
경남	-	3	17	-	1	-	21
제주	-	-	1	1	-	3	5
계	**13 (3.0)**	**55 (12.7)**	**90 (20.7)**	**136 (31.3)**	**101 (23.3)**	**39 (9.0)**	**434 (100)**

※ 2026. 6. 1.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특수학교가 31,993명 중 30,642(95.8%), 특수학급이 72,784명 중 45,599명(62.6%), 일반학급이 19,202명 중 7,485명(39.0%), 특수교육지원센터가 216명 중 91명(42.1%)임

〈표 3 · 27〉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장애유형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체장애	377	714	861	7	1,959
뇌병변장애	3,335	2,347	1,233	76	6,991
시각장애	855	192	328	-	1,375
청각장애	445	631	1,368	6	2,450
언어장애	288	1,935	456	-	2,679
지적장애	13,977	23,388	1,868	2	39,235
자폐성장애	11,292	16,274	1,264	-	28,830
정신장애	6	20	1	-	27
신장장애	3	7	22	-	32
심장장애	7	16	20	-	43
호흡기장애	3	2	12	-	17
간장애	1	2	10	-	13
안면장애	-	2	2	-	4
장루·요루장애	3	10	30	-	43
뇌전증장애	50	59	10	-	119
계	**30,642 (95.8)**	**45,599 (62.6)**	**7,485 (39.0)**	**91 (42.1)**	**83,817 (67.5)**

-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에 193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운영위원은 1,793명,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횟수는 1,883회임

〈표 3 · 2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단위: 개, 명, 회)

시도	위원회 수	구성원									운영실적 ('24. 3.~ '25. 2.)
		교장 (감)	특수 교사	대학 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계	
서울	12	17	39	2	21	-	10	-	13	102	153
부산	6	12	14	6	14	3	3	4	4	60	46
대구	6	10	8	5	19	3	5	-	2	52	64
인천	6	9	16	-	14	1	6	3	9	58	82
광주	3	3	3	4	14	3	3	-	1	31	118
대전	3	6	8	1	19	1	2	-	2	42	35
울산	3	3	7	-	9	-	5	3	3	30	42
세종	1	2	2	1	7	-	1	-	-	13	12
경기	26	60	65	5	52	2	24	6	14	228	304
강원	18	22	64	3	22	-	14	2	15	142	144
충북	11	15	22	6	26	2	11	13	12	107	123
충남	15	22	45	8	41	1	13	8	12	150	124
전북	15	26	61	3	33	5	14	5	18	165	126
전남	23	34	101	6	20	5	11	5	30	212	136
경북	23	32	65	8	45	10	19	4	17	200	217
경남	19	30	45	4	31	11	18	8	17	164	120
제주	3	8	7	1	8	2	5	2	4	37	37
계	**193**	**311**	**572**	**63**	**395**	**49**	**164**	**63**	**173**	**1,793**	**1,883**

향후 과제

- 영유아 건강검진과 조기교육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정보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7)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양성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초등교육(초등)/표시과목(중등)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유치원/초등):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중등):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성적 기준: 전공과목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 2021. 6. 23. 이후, 교원자격검정 대상자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시 교사 자격 취득 불가

● 2026년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한 대학(사범대, 일반대의 교육과)은 34개교이고 승인 인원은 1,332명이며,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총 15개교임

※ 교육대학원은 총정원으로 관리되어 연도별 교원양성정원이 유동적이므로 승인인원 산출 불가

〈표 3 · 29〉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6년도 입학정원	2026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국립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6	46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창원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13	1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부산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18	18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남대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9	9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체육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소계	**7**		**9**	**181**	**181**	
사립	가야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6	26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가톨릭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19	19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19	19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건양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50	5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광주여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2	22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나사렛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남부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6년도 입학정원	2026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단국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전공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전공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전공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한의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상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대전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백석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60	6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신라대	교직과정	체육학부 특수체육전공	20	2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남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유원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용인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우석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원광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위덕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1	2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17	17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6년도 입학정원	2026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인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부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소계	**27**		**37**	**1,169**	**1,151**	
계	**34**		**46**	**1,350**	**1,332**	

- 2026년 승인정원 기준, 교육대학원(13개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2개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30〉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2026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국립공주대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립창원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부산대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서울대 일반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일반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소계	**6**	**9**	
사립	대구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아주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남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용인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설립별	대학원명	2026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우석대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조선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소계	**9**	**10**	
계	**15**	**19**	

※ 출처: 2026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2026년 승인정원 기준, 9개의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양성 및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31〉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 양성·재교육과정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교육대학명	형태	2026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유아특수교육	재교육과정
			(박사)교육심리·상담·특수교육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뇌기반 특수체육	재교육과정
		전문대학원	특수통합·유아교육	재교육과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전문대학원	(박사) 특수교육	재교육과정
	광주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교육심리상담특수교육	재교육과정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1급 취득 가능
	청주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박사)심리상담특수교육	재교육과정
계	9		14	

※ 출처: 2026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대학원의 종류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규정

- 2026년 승인정원 기준, 20개의 국·사립대학교의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32〉 국·사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2026학년도 운영전공	비고
국립	국립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초등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특수직업교육전공	
	국립한국교통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ABA전공	
	전남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한경국립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소계	**4**	**7**	
사립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직업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강남대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건국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고신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광운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광주여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남부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단국대(죽전) 특수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직업재활교육	
		장애인평생교육	
		학습장애.난독증교육	
	대구대 특수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지적학습발달장애교육	
		감각운동발달장애교육	
	동의대 교육대학원	유아특수보육	
	명지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재활전공	
	백석대 교육대학원	유아특수교육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특수체육교육전공	
	위덕대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인제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중부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소계	**16**	**26**	
계	**20**	**33**	

※ 출처: 2026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승인 보류(2026. 4월 기준)

향후 과제

-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내실화
- 장애유형별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수교사 양성체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지원
-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특수교사 양성 및 교육지원 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2)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직 연수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 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직속기관인 시도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통해 특수교육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육 교사 자격연수(유·초·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가 98.3%, 특수학급이 98.1%, 전체 98.2%로 나타남

〈표 3 · 33〉 특수교육 담당 교원 자격 소지 현황

(단위: 명, %)

시도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				특수학급				합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서울	1,301	1,291	10	99.2	1,940	1,936	4	99.8	3,241	3,227	14	99.6
부산	712	691	21	97.1	765	762	3	99.6	1,477	1,453	24	98.4
대구	692	692	-	100.0	607	599	8	98.7	1,299	1,291	8	99.4
인천	688	688	-	100.0	1,123	1,123	-	100.0	1,811	1,811	-	100.0
광주	508	505	3	99.4	346	346	-	100.0	854	851	3	99.6
대전	403	402	1	99.8	450	450	-	100.0	853	852	1	99.9
울산	266	263	3	98.9	418	405	13	96.9	684	668	16	97.7
세종	116	113	3	97.4	189	188	1	99.5	305	301	4	98.7
경기	2,216	2,134	82	96.3	5,160	4,970	190	96.3	7,376	7,104	272	96.3
강원	354	348	6	98.3	442	430	12	97.3	796	778	18	97.7
충북	546	531	15	97.3	703	690	13	98.2	1,249	1,221	28	97.8
충남	603	583	20	96.7	999	948	51	94.9	1,602	1,531	71	95.6
전북	427	427	-	100.0	645	644	1	99.8	1,072	1,071	1	99.9
전남	474	473	1	99.8	822	817	5	99.4	1,296	1,290	6	99.5
경북	515	512	3	99.4	919	907	12	98.7	1,434	1,419	15	99.0
경남	844	832	12	98.6	1,148	1,143	5	99.6	1,992	1,975	17	99.1
제주	207	202	5	97.6	265	258	7	97.4	472	460	12	97.5
계	**10,872**	**10,687**	**185**	**98.3**	**16,941**	**16,616**	**325**	**98.1**	**27,813**	**27,303**	**510**	**98.2**

* 특수학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는 제외

-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1,506개로서 17,355명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약 10억 원임

〈표 3 · 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천 원)

시도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회원 수	지원 예산
서울	27	445	27,410
부산	112	831	55,655
대구	157	996	82,000
인천	115	1,099	56,666
광주	92	792	47,570
대전	52	1,484	49,244
울산	33	271	22,335
세종	31	432	15,190
경기	296	3,993	189,678
강원	8	101	26,000
충북	92	887	72,641
충남	137	1,406	72,895
전북	56	470	55,905
전남	33	743	55,000
경북	91	1,399	88,767
경남	135	1,642	63,180
제주	39	344	18,300
계	**1,506**	**17,335**	**998,436**

향후 과제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질 제고 및 현장 맞춤형 연수 확대
 - 교과별 교수·학습 지도, 장애학생 행동중재, 통합교육,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과정 등
- 특수교육 정책 및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확대
-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정서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

8)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38,138천 원, 초등학교 34,614천 원, 중학교 34,388천 원, 고등학교 39,656천 원임
- 신설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60,320천 원, 초등학교 59,547천 원, 중학교 60,580천 원, 고등학교 65,873천 원임

〈표 3 · 35〉 특수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천 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서울	19,658	39,658	13,879	53,879	13,643	53,643	16,988	56,988
부산	46,628	84,543	38,740	74,570	42,533	82,546	53,781	85,479
대구	27,370	30,250	29,976	48,976	33,383	53,740	39,532	63,282
인천	46,376	92,416	39,040	65,456	36,013	64,391	37,534	86,320
광주	21,873	55,296	26,296	83,663	35,635	103,448	32,489	52,300
대전	24,409	44,409	27,857	47,857	29,058	49,058	39,747	59,747
울산	35,116	74,626	33,010	59,233	35,235	73,799	37,579	79,536
세종	58,673	68,673	46,194	56,194	47,062	57,062	62,715	72,715
경기	42,579	72,579	42,986	72,986	30,429	60,429	32,515	62,515
강원	23,775	46,547	24,895	47,834	27,973	51,792	28,570	53,662
충북	21,078	52,686	21,749	50,208	20,727	50,112	32,071	50,187
충남	53,825	57,964	46,608	55,221	48,283	55,692	51,474	56,481
전북	49,536	71,536	39,532	61,532	39,836	61,836	40,793	62,793
전남	42,010	63,916	45,490	67,592	39,278	51,580	42,911	64,963
경북	43,180	59,664	59,926	65,713	52,311	58,003	56,227	68,508
경남	45,844	70,844	29,145	54,145	31,134	56,134	39,871	64,871
제주	46,413	39,830	23,116	47,240	22,056	46,588	29,356	79,496
평균	**38,138**	**60,320**	**34,614**	**59,547**	**34,388**	**60,580**	**39,656**	**65,873**

※ 특수학급 운영비: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 지원인력(인건비 제외),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4조 356억원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4.2%의 비율을 나타냄

〈표 3 · 36〉 시도교육청별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금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비율
				전체(A)	전체(A) 중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서울	11,695,442,328	353,725,406	31,592,537	14,237,366	12,137,316	1,082,287	343,560	430,361	401,411,517	3.4
부산	5,515,606,856	169,707,735	81,444,843	56,774,309	5,122,888	164,189	129,286	230,000	308,450,362	5.6
대구	4,257,622,692	122,918,704	60,344,217	4,574,259	-	-	510,759	43,500	188,391,439	4.4
인천	5,608,944,546	146,623,047	121,731,250	9,491,408	6,742,858	192,339	215,395	3,572,704	281,826,143	5.0
광주	2,825,667,838	84,507,497	21,413,024	5,648,439	1,584,492	217,513	92,345	242,731	112,121,549	4.0
대전	3,069,156,891	84,195,263	40,485,567	10,798,854	2,797,422	888,631	339,556	417,405	137,125,276	4.5
울산	2,418,780,590	59,251,522	35,322,085	13,140,913	1,465,918	459,130	52,456	155,000	108,381,106	4.5
세종	1,181,723,366	29,617,256	11,816,063	10,745,249	19,334	34,360	64,918	1,111,000	53,388,846	4.5
경기	22,925,864,292	698,190,734	121,272,785	13,120,000	3,000,000	6,670,000	783,565	41,419,863	881,456,947	3.8
강원	4,329,565,000	84,752,021	26,723,724	18,622,740	7,084,542	672,632	276,233	1,082,000	132,129,350	3.1
충북	3,863,296,815	101,118,435	61,688,122	19,245,550	888,977	70,348	229,069	220,000	182,571,524	4.7
충남	4,660,744,208	148,339,980	68,227,115	36,886,861	1,008,634	210,250	326,095	1,331,024	255,321,325	5.5
전북	4,443,685,009	99,456,215	65,664,969	10,143,748	4,657,292	1,311,826	233,520	687,541	177,497,819	4.0
전남	4,711,184,262	111,191,872	57,912,304	3,883,447	505,000	1,316,133	248,151	216,000	174,767,907	3.7
경북	5,589,312,979	120,330,044	76,271,720	48,314,490	23,298,226	346,552	385,163	750,080	246,398,049	4.4
경남	6,605,775,035	163,991,567	110,857,516	34,714,032	1,351,289	3,441,207	551,560	3,533,000	317,088,882	4.8
제주	1,654,159,421	41,017,043	21,060,689	13,039,491	81,760	795,067	190,723	1,230,198	77,333,211	4.7
계	**95,356,532,128**	**2,618,934,341**	**1,013,828,530**	**323,381,156**	**71,745,948**	**17,872,464**	**4,972,354**	**56,672,407**	**4,035,661,252**	**4.2**

※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2026년도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 4조 356억 원, 국립특수학교 653억 원, 국립학교 특수학급 53억 원을 합하여 총 4조 1,062억 원임

〈표 3 · 37〉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단위: 천 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시도		2,618,934,341	1,013,828,530	323,381,156	17,872,464	4,972,354	56,672,407	4,035,661,252
국립	특수학교	39,024,718	12,420,830	10,901,030	1,833,346	152,290	961,840	65,294,054
	특수학급	3,083,430	2,099,533	25,498	11,000	10,740	62,880	5,293,081
계		2,661,042,489	1,028,348,893	334,307,684	19,716,810	5,135,384	57,697,127	4,106,248,387

- 2026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3,063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99천 원 감소함

〈표 3 · 3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 원)

연도	특수교육 예산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
2018	2,759,503,150	90,780	30,398
2019	2,984,447,992	92,958	32,105
2020	3,134,043,528	95,420	32,845
2021	3,188,731,273	98,154	32,487
2022	3,305,625,487	103,695	31,878
2023	3,679,244,503	109,703	33,538
2024	3,733,749,357	115,610	32,296
2025	4,100,440,298	120,735	33,962
2026	**4,106,248,387**	**124,195**	**33,063**

- 2026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4조 1,350억 원으로 2025년도에 비해 약 141억 증가된 금액이며, 2026년 6월 기준 교육예산의 4.4%를 차지함

〈표 3 · 39〉 연도별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율

(단위: 천 원, %)

연도	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2017	57,003,830,743	2,664,432,153	4.7
2018	63,872,934,485	2,783,412,270	4.4
2019	70,743,520,000	3,039,704,368	4.3
2020	72,097,627,000	3,174,800,528	4.4
2021	70,429,061,000	3,248,756,273	4.6
2022	83,362,762,000	3,343,304,487	4.0
2023	92,102,436,000	3,726,768,503	4.0
2024	86,045,510,000	3,763,794,357	4.4
2025	94,661,997,000	4,120,928,298	4.4
2026	**94,672,738,000**	**4,134,980,387**	**4.4**

*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고등·평생지원특별회계 예산
** 시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향후 과제

-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특수교육 정책 추진 및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기준 유치원 675명, 초등학교 819명, 중학교 353명, 고등학교 140명으로 총 1,987명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음

〈표 3 · 4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37	32	25	15	109
부산	83	37	16	4	140
대구	17	48	12	3	80
인천	39	13	8	4	64
광주	17	10	1	1	29
대전	2	1	1	-	4
울산	24	12	5	2	43
세종	-	3	2	-	5
경기	71	254	77	16	418
강원	22	40	24	13	99
충북	27	16	4	12	59
충남	48	47	14	10	119
전북	34	45	14	6	99
전남	47	41	27	8	123
경북	80	103	68	23	274
경남	100	80	48	22	250
제주	27	37	7	1	72
계	**675**	**819**	**353**	**140**	**1,987**

■ 향후 과제

- 통합학급 학생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통합교육 협력교수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교육과정 조정 및 통합교육 상담 등 지원 강화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교육부 고시 제2025-10호, 2025.3.4. 〔별표 2〕)

 -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57,508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통합학교 관리자 교(원)장 11,160명이 특수(통합)교육 연수 과정에 참여함
-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 및 일반·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델 확산을 위해 '정다운학교' 328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3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표 3 · 41〉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3~15시간 미만	15~29시간	30~59시간	60시간 이상	계
서울	4,892	1,071	554	677	7,194
부산	929	1,029	1,292	869	4,119
대구	381	1,482	927	296	3,086
인천	1,191	1,326	922	632	4,071
광주	351	411	457	296	1,515
대전	204	53	110	1,675	2,042
울산	366	606	589	448	2,009
세종	313	154	135	115	717
경기	5,663	2,545	2,389	1,299	11,896
강원	1,258	269	329	86	1,942
충북	615	773	425	456	2,269
충남	1,130	593	982	387	3,092
전북	640	363	984	462	2,449
전남	968	363	590	302	2,223
경북	1,165	1,270	730	524	3,689
경남	1,567	1,118	687	582	3,954
제주	532	274	312	123	1,241
계	**22,165**	**13,700**	**12,414**	**9,229**	**57,508**

※ 2025학년도 통합학급 담당교사 기준

〈표 3 · 42〉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현황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교(원)장 수	전체 통합학교 교(원)장 수
서울	973	1,340
부산	650	719
대구	557	602
인천	560	655
광주	310	322
대전	301	337
울산	280	288
세종	136	141
경기	2,609	2,777
강원	494	494
충북	440	507
충남	695	712
전북	544	656
전남	648	720
경북	862	910
경남	908	1,009
제주	193	201
계	**11,160**	**12,390**

※ 2025학년도 통합학교 관리자 기준

〈표 3 · 43〉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1	10	8	1	30
부산	1	8(1)	5	-	14(1)
대구	10	12	9	3	34
인천	5	9(1)	4(1)	7	25(2)
광주	2	2	-	-	4
대전	2	3	4	-	9
울산	4	13(1)	2	1	20(1)
세종	5	8	3	1	17
경기	15	17	12	8	52
강원	5	2(1)	1	2	10(1)
충북	5	5	1	3	14
충남	17	3	-	3	23
전북	9(1)	19(1)	8	3	39(2)
전남	1	3(1)	1	1	6(1)
경북	7(1)	5(1)	2	4(1)	18(3)
경남	3(1)	3(1)	1	-	7(2)
제주	3	-	3	-	6
계	**105(3)**	**122(8)**	**64(1)**	**37(1)**	**328(13)**

※ 괄호 안의 학교 수는 교육부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수

향후 과제

-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예비교원 통합·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선택과목 운영 및 복수전공 확대 권고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정다운학교 운영 및 컨설팅 확대,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 추진 및 통합교육연구회 조직·운영 활성화
-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 통합학교에 학교 장애인식 검사 및 연계 프로그램 활용 확대

3)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과정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교육청별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방송(유아: 애니메이션, 초등: '대한민국 1교시', 중등: 드라마)을 민관 협력으로 제작·보급하여 일반 국민의 장애인식개선 및 학교 현장의 장애이해교육을 지원함
 - 2025년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는 18,387개교로, 전체의 95%임

〈표 3 · 44〉 유·초·중·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시도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율
서울	2,025	1,897	93.7
부산	968	967	99.9
대구	737	726	98.5
인천	922	849	92.1
광주	553	553	100.0
대전	525	521	99.2
울산	406	403	99.3
세종	169	165	97.6
경기	4,360	4,178	95.8
강원	951	951	100.0
충북	760	746	98.2
충남	1,200	1,062	88.5
전북	1,155	1,120	97.0
전남	1,311	1,097	83.7
경북	1,454	1,309	90.0
경남	1,546	1,546	100.0
제주	304	297	97.7
계	**19,346**	**18,387**	**95.0**

※ 2025. 12. 31. 기준

향후과제

- 학교교육활동과 연계한 학교과정별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지속 개발·보급 추진
- 공모전, 백일장 등 참여형 장애이해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속 추진 및 우수사례 보급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관련 법규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3항, 제4항)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2026년 4월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98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내외부 위원 2,791명을 구성함
- 2025년의 경우,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총 5,172건 지원을 실시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접수를 위한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이 연계하여 운영 중임

〈표 3 · 4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단위: 개, 명)

시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수
서울	11	201
부산	6	84
대구	6	134
인천	6	79
광주	3	62
대전	3	45
울산	3	46
세종	2	26
경기	29	419
강원	18	214
충북	11	190
충남	15	207
전북	15	187
전남	23	339
경북	23	289
경남	21	237
제주	3	32
계	**198**	**2,791**

※ 인권지원단 구성(최소 8명 이상): 센터장(담당과장) 1명, 장학사(연구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1명, 상담전문인력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표 3 · 46〉 2025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횟수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현장지원 횟수	159	132	233	630	664	622	533	257	533	489	497	423	5,172

- 2026년 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강좌는 186개임
- 2026년 일반교육교원 대상 전체 연수과정 8,098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447개임

〈표 3 · 47〉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강좌 수	15	3	6	10	4	20	4	1	33	10	5	11	12	13	22	16	1	**186**

〈표 3 · 48〉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일반교육교원 대상 연수과정 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연수과정 수
서울	803	31
부산	802	20
대구	1,050	17
인천	15	9
광주	415	22
대전	386	31
울산	416	17
세종	200	12
경기	705	85
강원	91	20
충북	316	33
충남	429	26
전북	628	18
전남	27	14
경북	393	33
경남	912	46
제주	510	13
계	**8,098**	**447**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2025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온라인·대면)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전공과) 총 82,983명 중 25,306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함
 - 주요 결과로서 학교폭력 영역은 따돌림 10.0%, 언어폭력 8.4%, 신체폭력 5.6%, 강요/괴롭힘 3.2% 순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학습권리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1.8%가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경험이 있었다'라고 응답하였고, 학교생활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2.4%가 '착·탈의 시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 대면 조사의 경우, 후속 조치 지원에 동의하여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83명임
 - 대면 조사 후속 조치 결과 28건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학생 27건, 장애학생 1건임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체 28건 중 물리적 분리 14건, 상담 13건, 교육 프로그램 지원 1건이었으며, 가해자 조치는 전체 28건 중 특별교육 8건, 교육 프로그램 지원 6건, 사과 6건, 물리적 분리 4건, 상담 2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남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구성원(교직원, 학생 등)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 및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주요 현황 진단·분석 및 예방·대응 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6년 4월 기준 건강장애학생은 1,876명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2026년 31교로, 41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월평균 이용 건강장애학생 수는 404명임

〈표 3 · 49〉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명)

시도	병원학교명	월평균 이용 학생 수	담당 인력 수
서울(9)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병원학교	25	의료사회복지사 2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병원학교	44	의료사회복지사 1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69	간호사1
	서울대학교 통합케어센터 어린이병원학교	31	일반교사 1, 평생교육사 1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	34	의료사회복지사 1
	서울아산병원 병원학교	30	의료사회복지사 1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40	일반교사 1, 심리상담사 1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원학교	4	의료사회복지사 1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3	의료사회복지사 1
부산(2)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대구(2)	경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10	특수교사 1
	대동병원 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인천(1)	인하대학교병원 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광주(1)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학마을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대전(1)	충남대학교병원 병원학교	9	특수교사 1
경기(5)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의료사회복지사 1
	국립암센터 병원학교	7	특수교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학교	7	특수교사 2
	파주시티재활요양병원 병원학교	6	특수교사 2
	한서중앙병원 병원학교	8	특수교사 2
강원(1)	강릉아산병원 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충북(1)	충북대학교병원 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충남(2)	국립공주병원 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단국대학교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전북(1)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한누리병원학교	9	일반교사 1
전남(2)	국립나주병원 느티나무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여미사랑학교	24	특수교사 2
경남(2)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 병원학교	8	특수교사 2
제주(1)	제주대학교 병원학교	-	특수교사 1
계	31	404	41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에서 원격수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등은 2,159명임

〈표 3 · 50〉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현황

(단위: 학급, 명, 일)

원격수업시스템 명	학급 수	강사 수	전체 학생 수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학생별 연평균 이용일 ('25. 6. 1.~'26. 5. 31.)
			건강장애	기타	계		
꿀맛무지개교실	14	14	263	55	318	296	137
꿈사랑학교	41	27	351	124	475	543	283
스쿨포유	32	36	1,063	303	1,366	1,565	172
계	**87**	**77**	**1,677**	**482**	**2,159**	-	-

향후 과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확대 및 품질관리 강화
- 건강장애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및 학생관리 체계 고도화
- 병원학교 협력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연계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학교에 설치된 321개 순회·파견학급에서 327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교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1,076명이며, 기관별로 가정 891명, 시설 140명, 병원 45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17명, 초등학교 429명, 중학교 298명, 고등학교 232명임

〈표 3 · 51〉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겸임	891	140	45	-	1,076	117	429	298	232	1,076	321	327

-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206개의 순회·파견학급에서 217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급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545명이며, 기관별로 가정 432명, 시설 84명, 병원 3명, 일반학교 26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 48명, 초등학교 233명,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34명임

〈표 3 · 52〉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급에서 순회·파견·겸임	432	84	3	26	545	48	233	130	134	545	206	217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1,720명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학생 수는 총 2,430명이며, 기관별로 가정 423명, 시설 41명, 병원 32명, 일반학교 1,934명이며, 학교과정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802명, 초등학교 966명, 중학교 430명, 고등학교 232명임

〈표 3 · 5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교육지원센터	423	41	32	1,934	2,430	802	966	430	232	2,430	1,720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비정규교사 48명 포함

향후 과제

-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전담인력 확대 및 순회교육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전국 1,603개 기관에서 1,550개 기관과 연계하여 4,321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05,16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1,348개 기관에서 1,203개 기관과 연계하여 2,4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52,92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3 · 5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현황

(단위: 기관, 개, 명)

시도	문화예술				체육			
	운영기관수	연계기관수	운영프로그램수	참여학생수	운영기관수	연계기관수	운영프로그램수	참여학생수
서울	76	82	184	15,035	41	40	112	2,761
부산	182	49	760	9,605	95	33	390	3,498
대구	143	205	480	9,659	141	138	282	13,155
인천	91	47	167	3,019	31	17	101	3,369
광주	8	27	50	3,739	7	14	42	4,066
대전	32	23	75	3,861	17	16	23	658
울산	7	31	120	4,696	6	3	13	569
세종	5	11	93	1,410	10	12	75	1,280
경기	512	503	919	15,953	443	405	590	9,603
강원	56	76	158	3,571	40	54	76	1,662
충북	20	24	47	1,570	9	11	16	523
충남	36	158	449	15,852	22	81	156	2,778
전북	256	172	447	4,535	260	197	295	2,552
전남	50	34	107	3,536	55	36	94	1,596
경북	72	74	109	5,066	100	73	102	2,608
경남	40	22	115	2,353	6	5	27	653
제주	17	12	41	1,703	65	68	79	1,594
계	**1,603**	**1,550**	**4,321**	**105,163**	**1,348**	**1,203**	**2,473**	**52,925**

※ 운영 기관: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기관: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향후 과제

- 장애학생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 강화
- 관계기관 협력 확대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건강 증진 도모
- 장애학생 문화체육예술 분야 인재 발굴·양성 및 우수사례 확산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지원,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34개교 특수학교 학교기업 내실화 지원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44개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표 3 · 55〉 특수학교 진로·직업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단위: 교, 명)

시도	예술·체육분야 중점 교육과정		직업교육 중점학교		초·중·고 진로 연계교육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서울	4	274	3	67	27	2,348
부산	-	-	1	94	14	1,883
대구	1	212	1	168	5	508
인천	4	382	2	97	6	887
광주	1	13	-	-	1	65
대전	-	-	-	-	-	-
울산	-	-	3	225	4	134
세종	1	143	1	40	2	324
경기	13	1,053	3	123	27	2,711
강원	-	-	-	-	5	166
충북	3	262	4	276	7	948
충남	4	311	11	481	10	562
전북	11	1,213	2	49	9	827
전남	4	246	2	116	9	931
경북	2	235	3	92	6	326
경남	7	609	4	216	2	372
제주	2	100	-	-	3	609
계	**57**	**5,053**	**40**	**2,044**	**137**	**13,601**

〈표 3 · 5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개관연도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장애유형	사업직종
2010	대구5교통합	대구	사립	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사무용지, 세탁, 홍보판촉물제작 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수제청 등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도자기, 천연비누, 제과·제빵, 천연염색 등
2011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이료
	대전혜광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공예, 운동화 전문세탁 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원예, 천연비누, 조립, 임가공, 직업체험 등
	태백라온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장애공감체험 등
2012	꽃동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제과·제빵 등
	미추홀학교	인천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악세사리, 조명장치, 인형만들기 등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포장·충전, 세탁 등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도자기, 원예, 공예 등
2013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목장갑, 도자기, 공예품 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조립포장, 즉석도정, 토퍼 및 학습자료 제작 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향초 등
	울산혜인학교	울산	공립	지적장애	자동차 부품제조, 세차, 신발세탁 등
	창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양파·대추즙, 직업체험 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장갑, 핸드페인팅, 직업체험 등
	부천상록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스팀세차, 클린서비스, 제과제빵 등
	부천혜림학교*	경기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가공, 도서서비스 등
2014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점자도서 출판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 임가공업 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면장갑, 가구, 임가공 등
2015	안동영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2016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직업체험 등
2017	한국경진학교	경기	국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임가공업, 직업체험 등
2018	서산성봉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건조식품, 위생용품 제조
	부산해마루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농업생산품, 농산물 건조식품, 직업체험 등
	소림학교	전남	사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웰빙건강음료 제조·판매, 외주사업장 등
2019	상희학교*	경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2023	청주혜원학교*	충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예산꿈빛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연수세트, 캠핑용 나무제품 등
	대전해든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탁, 음·식료품 등
	아름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커피전문점)
2025	대전맹학교*	대전	공립	시각장애	커피바리스타

*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사업직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 지정 29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5교가 운영 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 · 5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지정연도 및 운영학교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서울	상암고	경복고	-	(문현고) (서울문화고)	(경기고)	-	-	관악고	-	-	-	-	-	-	-	3(3)
부산	-	-	부산전자공업고	-	-	-	-	-	-	-	-	-	-	-	-	1
대구	대구과학기술고	-	-	-	-	대구농업마이스터고	-	-	-	-	-	-	-	-	-	2
인천	-	-	강남영상미디어고	-	-	박문여고	-	인화여고	-		-	(계산공업고)	-	-	-	3(1)
광주	광주전자공업고	-	-	-	-	-	-	-	-	-	-	-	-	-	-	1
대전	-	동대전고	-	-	-	-	-	-	-	-	-	-	(갈마중) (대전전자디자인고)	-	-	1(2)
울산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강원	-	-	영서고	-	-	-	-	-	-	-	-	-	-	-	-	1
충북	제천제일고	-	청주농업고	-	-	-	충북산업과학고	-	-	-	-	-	-	-	-	3
충남	공주생명과학고	금산산업고 국립항공고	당진정보고 서천고	(온양용화고) (천안공업고)	(태안고)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	(청양고)	(서산중앙고)	-	-	-	-	-	-	6(6)
전북	-	-	-	-	-	-	이리고	-	-	-	(전북유니텍고)	-	-	-	-	1(1)
전남	목포공업고	-	전남기술과학고	-	-	-	순천공업고	-	-	-	-	-	-	-	-	3
경북	-	김천생명과학고	-	-	-	-	-	(안동고)	-	-	-	-	-	-	-	1(1)
경남	-	이림고 김해생명과학고	-	-	-	-	-	-	-	-	-	-	이림고 (지정취소)	-	-	1
제주	제주고	함덕고	-	-	-	-	-	-	-	-	-	(서귀포산업과학고)	-	-	-	2(1)
계	7	7	7	(4)	(2)	3(1)	3	2(2)	(1)	-	(1)	(2)	(2)	-	-	29(15)

※ ()안의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관련 기능 수행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고용 관계부처 연계 강화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기 제공 및 체계적 진로·직업교육 이력 관리를 위해 구축한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 2026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299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107명으로 취업률은 10.1%임

〈표 3 · 58〉 2026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어업	정보통신기술	식품가공·제과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서비스	문화·예술	사무보조	사서보조	기타	소계	
서울	349	260	-	-	-	-	-	1	-	4	-	4	1	-	3	13	14.6
부산	157	65	-	2	-	-	-	-	-	-	-	2	-	-	1	5	5.4
대구	170	95	-	3	-	-	2	-	-	6	1	1	4	-	3	20	26.7
인천	134	58	-	1	-	-	-	-	-	-	-	-	-	-	4	5	6.6
광주	94	46	1	-	-	-	-	-	-	-	-	1	-	-	2	4	8.3
대전	82	43	-	-	-	-	-	-	-	1	-	-	-	-	-	1	2.6
울산	55	40	-	-	-	-	-	-	-	-	-	-	-	-	-	-	-
세종	12	12	-	-	-	-	-	-	-	-	-	-	-	-	-	-	-
경기	404	115	1	21	-	-	2	-	-	1	-	8	1	1	7	42	14.5
강원	81	54	-	-	-	-	-	-	-	3	4	-	-	-	-	7	25.9
충북	98	77	-	-	-	-	-	-	-	1	-	-	-	-	-	1	4.8
충남	98	51	-	-	-	-	-	-	-	-	-	-	-	-	1	1	2.1
전북	88	45	-	-	-	-	-	-	-	-	-	3	-	-	-	3	7.0
전남	113	57	-	-	-	-	-	-	-	1	1	-	1	-	1	4	7.1
경북	137	87	-	-	-	-	-	-	-	-	-	-	-	-	-	-	-
경남	175	118	-	-	-	-	-	-	-	1	-	-	-	-	-	1	1.8
제주	52	18	-	-	-	-	-	-	-	-	-	-	-	-	-	-	-
계	**2,299**	**1,241**	**2**	**27**	**-**	**-**	**4**	**1**	**-**	**18**	**6**	**19**	**7**	**1**	**22**	**107**	**10.1**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6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813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34명으로 취업률은 33.2%임

〈표 3 · 59〉 2026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 ·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 · 제과 제빵	이료	영업 · 판매	청소 ·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453	151	4	12	2	1	7	-	2	11	27	14	13	1	12	106	35.1
부산	204	130	1	2	1	2	9	-	-	-	2	-	-	7	1	25	33.8
대구	127	105	-	-	-	-	1	-	-	-	-	1	-	-	-	2	9.1
인천	219	128	1	4	-	-	2	-	-	-	2	4	1	-	3	17	18.7
광주	111	79	-	1	-	-	-	-	-	1	-	-	-	-	1	3	9.4
대전	128	94	-	-	-	-	1	-	-	3	-	1	-	-	-	5	14.7
울산	105	88	-	1	-	-	-	-	-	-	2	-	-	-	-	3	17.6
세종	21	16	-	-	-	-	-	-	-	-	-	-	-	2	1	3	60.0
경기	1,091	555	4	65	-	1	43	-	5	11	26	12	13	2	33	215	40.1
강원	94	58	-	1	-	-	1	-	-	2	-	-	1	-	1	6	16.7
충북	153	88	1	4	-	-	1	-	-	8	1	1	2	-	5	23	35.4
충남	226	122	4	14	-	-	3	-	2	3	6	1	3	-	9	45	43.3
전북	125	88	-	2	1	-	3	-	1	1	2	2	-	-	1	13	35.1
전남	176	110	-	2	1	-	1	-	-	3	-	2	3	-	4	16	24.2
경북	209	153	-	3	-	-	-	-	-	1	2	2	1	-	1	10	17.9
경남	308	194	2	12	1	-	1	-	-	7	4	4	9	-	1	41	36.0
제주	63	47	-	-	-	-	-	-	-	-	-	1	-	-	-	1	6.3
계	**3,813**	**2,206**	**17**	**123**	**6**	**4**	**73**	**-**	**10**	**51**	**74**	**45**	**46**	**12**	**73**	**534**	**33.2**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6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319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42명으로 취업률은 9.3%임

〈표 3 · 60〉 2026년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 ·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 · 제과 제빵	이료	영업 · 판매	청소 ·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162	99	-	1	-	2	-	-	1	-	1	1	-	-	2	8	12.7
부산	108	75	-	2	-	-	-	-	-	-	-	-	1	-	-	3	9.1
대구	90	68	-	3	-	-	1	-	-	-	-	-	-	-	-	4	18.2
인천	106	66	-	-	-	-	1	-	-	-	1	-	-	-	2	4	10.0
광주	46	32	-	1	-	-	1	-	-	-	-	-	-	-	-	2	14.3
대전	46	35	-	-	-	-	-	-	-	-	-	-	-	-	-	-	-
울산	36	28	-	-	-	-	-	-	-	-	-	-	-	-	-	-	-
세종	10	8	-	-	-	-	-	-	-	-	-	-	-	-	-	-	-
경기	308	196	-	-	-	-	-	-	1	1	2	2	1	-	-	7	6.3
강원	38	25	-	-	-	-	-	-	-	-	-	-	-	-	-	-	-
충북	60	29	-	-	-	-	-	-	-	1	1	-	-	1	1	4	12.9
충남	30	21	-	1	-	-	-	-	-	-	1	-	-	-	-	2	22.2
전북	52	35	-	1	-	-	-	-	-	-	-	-	-	-	-	1	5.9
전남	14	7	-	-	-	-	-	-	-	-	-	-	-	-	-	-	-
경북	78	51	1	-	-	-	1	-	-	-	-	-	-	-	-	2	7.4
경남	113	77	-	-	-	-	-	-	-	-	-	-	2	-	1	3	8.3
제주	22	17	-	1	-	-	-	-	-	-	-	-	1	-	-	2	40.0
계	**1,319**	**869**	**1**	**10**	**-**	**2**	**4**	**-**	**2**	**2**	**6**	**3**	**5**	**1**	**6**	**42**	**9.3**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6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2,051명 중 1,098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54.7%임

〈표 3 · 61〉 2026년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이수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거·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232	4	1	3	1	-	2	19	1	2	9	17	6	1	5	67	29.4
부산	104	5	5	15	1	-	1	3	-	4	8	3	4	-	4	48	48.5
대구	169	2	10	28	-	1	3	5	5	29	10	9	7	2	10	119	71.3
인천	143	1	2	24	-	-	1	-	1	5	10	21	17	2	13	96	67.6
광주	69	8	7	8	-	-	-	2	-	3	1	1	2	-	-	24	39.3
대전	123	6	7	11	1	-	-	5	-	11	7	2	1	-	8	53	45.3
울산	86	1	2	5	-	-	2	-	2	3	10	12	1	-	3	40	47.1
세종	7	-	-	2	-	-	-	-	-	-	-	1	1	-	-	4	57.1
경기	287	4	6	85	-	-	15	-	2	23	25	31	4	5	18	214	75.6
강원	83	1	2	3	-	-	3	3	-	5	12	4	5	-	5	42	51.2
충북	134	5	2	17	-	-	10	5	2	12	10	10	5	-	3	76	58.9
충남	95	1	1	22	1	-	4	-	-	8	2	4	7	-	9	58	61.7
전북	80	2	-	4	-	-	1	6	1	3	5	5	5	-	4	34	43.6
전남	104	2	6	8	-	-	8	1	-	15	5	5	6	-	10	64	62.7
경북	177	-	5	18	-	-	1	-	-	28	11	20	9	2	12	106	59.9
경남	132	1	1	6	-	1	4	-	-	15	4	3	2	-	1	37	28.2
제주	26	-	1	5	-	-	2	-	-	1	4	1	1	-	1	16	61.5
계	**2,051**	**43**	**58**	**264**	**4**	**2**	**57**	**49**	**14**	**167**	**133**	**149**	**83**	**12**	**106**	**1,098**	**54.7**

※ 취업률 = {취업자 수/(이수자 수 - 진학자 수)} × 100

- 전국 170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 717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 4,787명이 배치되어 있음
-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지역의 일반학교 17교에 전공과 28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 158명이 배치되어 있음

〈표 3 · 6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특수학교	170	717	4,787
일반학교	17	28	158
계	**187**	**745**	**4,945**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재능 발굴 및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지원을 위해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보 및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다양화 및 학교 졸업 이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운영 다양화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현황 및 추진실적

- 83,808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 · 63〉 치료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지원 인원	지원 예산
서울	10,645	18,676,080
부산	5,894	11,247,360
대구	5,780	9,539,328
인천	7,216	11,391,985
광주	2,805	3,978,240
대전	2,370	2,857,419
울산	2,383	6,224,573
세종	1,171	1,917,297
경기	13,432	31,961,224
강원	2,809	5,596,652
충북	4,111	6,807,197
충남	4,464	7,526,375
전북	4,079	8,214,447
전남	2,982	6,607,088
경북	5,555	11,235,480
경남	6,390	14,518,999
제주	1,722	3,328,948
계	**83,808**	**161,628,692**

-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2026년 4월 기준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사회복무요원 총 15,710명이 배치됨
-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10,709명으로 특수학교 3,482명, 특수학급 7,197명, 일반학급에 30명이 배치됨
- 사회복무요원은 5,001명으로 특수학교 1,776명, 특수학급 3,205명, 일반학급에 20명이 배치됨

〈표 3 · 6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급				사회복무요원	소계	유급				사회복무요원	소계	유급				사회복무요원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단체 (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단체 (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국고 · 지방비	자치단체 (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서울	446	28	-	474	408	882	1,082	34	-	1,116	632	1,748	4	-	-	4	6	10	2,640
부산	361	-	-	361	82	443	373	6	-	379	102	481	-	-	-	-	-	-	924
대구	247	-	-	247	139	386	323	-	-	323	190	513	-	-	-	-	3	3	902
인천	291	-	-	291	17	308	639	-	-	639	9	648	-	-	-	-	-	-	956
광주	115	-	-	115	137	252	195	12	-	207	89	296	-	-	-	-	-	-	548
대전	216	-	-	216	75	291	442	-	-	442	135	577	-	-	-	-	-	-	868
울산	145	-	-	145	82	227	323	-	-	323	170	493	-	-	-	-	1	1	721
세종	60	-	-	60	16	76	159	-	-	159	19	178	-	-	-	-	-	-	254
경기	367	-	-	367	366	733	1,129	-	-	1,129	1,267	2,396	-	-	-	-	2	2	3,131
강원	78	-	-	78	80	158	230	-	25	255	2	257	13	-	-	13	-	13	428
충북	191	-	-	191	17	208	248	-	-	248	26	274	-	-	-	-	-	-	482
충남	182	-	-	182	37	219	469	-	-	469	39	508	4	-	-	4	-	4	731
전북	161	-	-	161	12	173	280	-	-	280	69	349	1	-	-	1	4	5	527
전남	121	-	-	121	52	173	197	3	14	214	120	334	2	-	1	3	2	5	512
경북	149	-	-	149	117	266	430	-	-	430	139	569	4	-	-	4	2	6	841
경남	245	-	-	245	105	350	433	-	-	433	187	620	-	-	-	-	-	-	970
제주	79	-	-	79	34	113	151	-	-	151	10	161	1	-	-	1	-	1	275
계	**3,454**	**28**	**-**	**3,482**	**1,776**	**5,258**	**7,103**	**55**	**39**	**7,197**	**3,205**	**10,402**	**29**	**-**	**1**	**30**	**20**	**50**	**15,710**

- 교통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32,209명 중 16,911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 학생은 91,986명 중 36,108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약 943억 원임

〈표 3 · 65〉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통학 지원 인력 수	통학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통학 지원 인력 수	통학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4,517	2,203	90	1,096	697	968	112	362	10,565	-	-	-	671	1,041	-	312
부산	2,210	1,470	74	374	501	107	136	347	5,593	-	140	691	459	401	-	557
대구	2,088	1,056	-	704	320	321	49	3,482	4,318	61	-	412	351	394	10	835
인천	2,034	1,194	19	101	90	265	72	6,232	6,834	356	85	48	310	639	-	498
광주	1,469	863	11	336	176	236	45	562	2,075	32	101	222	138	335	32	715
대전	1,187	685	17	138	79	149	138	2,271	2,442	-	118	205	136	287	-	645
울산	846	584	4	241	116	204	70	1,210	2,305	-	78	781	435	402	-	1,239
세종	370	226	7	43	21	11	18	343	924	38	27	29	17	16	18	105
경기	5,782	3,194	106	1,526	971	1,461	170	13,030	25,936	-	1,705	5,934	3,163	3,271	-	6,690
강원	1,086	673	10	208	164	187	43	696	2,285	265	104	965	449	451	47	1,539
충북	1,588	988	12	591	271	430	55	4,733	3,736	283	107	996	494	592	171	1,620
충남	1,729	1,327	20	114	82	253	59	3,848	4,791	623	86	150	193	181	170	328
전북	1,324	985	-	43	41	83	53	4,787	3,620	785	73	524	307	356	314	26,324
전남	1,317	826	10	241	196	173	36	491	3,399	989	170	531	416	555	27	758
경북	1,629	872	10	192	142	245	38	1,182	5,273	555	146	1,034	548	635	229	2,551
경남	2,369	1,370	5	496	369	563	51	3,347	6,341	572	153	831	389	649	235	1,632
제주	664	310	8	85	41	46	32	627	1,549	10	74	658	177	72	3	476
계	**32,209**	**18,826**	**403**	**6,529**	**4,277**	**5,702**	**1,177**	**47,550**	**91,986**	**4,569**	**3,167**	**14,011**	**8,653**	**10,277**	**1,256**	**46,824**

- 2026년 6월 기준 전국 199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892대를 운영하고 있음
- 이용 학생은 전체 특수학교 재학생 31,993명 중 순회교육 지원학생 1,076명을 제외한 30,917명의 60.9%인 18,826명임

〈표 3 · 66〉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현황

(단위: 명, 대, %)

시도	학생 수			통학버스 수	이용학생 수	이용률
	전체학생 수(A)	순회교육 학생 수(B)	계(A-B)			
서울	4,482	212	4,270	112	2,203	51.6
부산	2,210	67	2,143	62	1,470	68.6
대구	2,077	68	2,009	49	1,056	52.6
인천	2,027	118	1,909	48	1,194	62.5
광주	1,469	78	1,391	45	863	62.0
대전	1,185	50	1,135	34	685	60.4
울산	840	66	774	29	584	75.5
세종	369	21	348	9	226	64.9
경기	5,712	43	5,669	170	3,194	56.3
강원	1,080	18	1,062	34	673	63.4
충북	1,578	66	1,512	53	988	65.3
충남	1,725	67	1,658	58	1,327	80.0
전북	1,321	19	1,302	53	985	75.7
전남	1,316	31	1,285	33	826	64.3
경북	1,614	-	1,614	39	872	54.0
경남	2,367	137	2,230	51	1,370	61.4
제주	621	15	606	13	310	51.2
계	**31,993**	**1,076**	**30,917**	**892**	**18,826**	**60.9**

- 특수학교 통학차량 총 892대 중 487대는 학교 소유, 405대는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안전교육은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인력 총 2,263명이 이수하였음

〈표 3 · 67〉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단위: 교, 대, 명)

시도	특수학교 수	통학차량 현황						안전교육 이수		
		전체 통학차량 수	운영 차종(대수)			운영 형태(대수)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인력
			16인승 이하	17인~35인승 이하	36인승 이상	학교소유	임대			
서울	32	112	4	30	78	66	46	32	112	112
부산	16	62	-	39	23	62		16	62	136
대구	11	49	-	8	41	8	41	11	49	49
인천	10	48	-	10	38	3	45	10	48	72
광주	6	45	-	11	34	9	36	6	45	45
대전	6	34	-	5	29	14	20	6	34	138
울산	4	29	1	25	3	28	1	4	29	70
세종	2	9	-	1	8	5	4	2	7	18
경기	39	170	4	65	101	81	89	39	170	170
강원	9	34	1	15	18	33	1	9	34	43
충북	11	53	3	12	38	31	22	11	53	55
충남	11	58	-	18	40	28	30	11	58	59
전북	11	53	-	37	16	25	28	11	53	53
전남	9	33	2	14	17	23	10	9	33	36
경북	8	39	2	14	23	28	11	8	38	36
경남	11	51	-	21	30	34	17	11	51	51
제주	3	13	-	4	9	9	4	3	13	32
계	**199**	**892**	**17**	**329**	**546**	**487**	**405**	**199**	**889**	**1,175**

- 급식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32,209명 중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216명, 대학형 전공과 재학생 331명 등을 제외한 31,662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91,986명 중 91,986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1,462억 원임

〈표 3 · 68〉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서울	4,517	4,482	7,206	7,206	7,897	7,897	7,611	10,565	10,565	4,659	6,839	7,540	7,835	13,830
부산	2,210	2,210	5,150	5,150	5,150	5,150	2,162	5,593	5,593	3,280	4,320	5,520	5,770	5,024
대구	2,088	2,077	8,566	8,566	8,566	8,566	3,309	4,318	4,318	7,625	6,641	7,587	8,375	5,764
인천	2,034	2,027	10,144	10,144	10,144	10,144	3,948	6,834	6,834	4,985	6,518	7,244	7,151	8,513
광주	1,469	1,391	11,060	11,060	11,060	11,060	3,086	2,075	2,075	3,740	8,189	8,374	9,144	3,210
대전	1,187	1,185	5,130	5,130	5,130	5,130	1,157	2,442	2,442	3,030	3,530	4,460	4,750	1,795
울산	846	840	5,130	5,130	5,130	5,130	799	2,305	2,305	3,300	4,210	4,920	5,380	1,989
세종	370	369	7,818	7,818	7,818	7,818	548	924	924	6,348	7,018	7,688	7,818	1,252
경기	5,782	5,712	4,856	4,850	5,855	5,847	5,633	25,936	25,936	3,961	4,316	5,116	5,372	21,063
강원	1,086	1,062	5,591	5,591	5,591	5,591	1,123	2,285	2,285	4,603	5,292	5,800	6,110	2,657
충북	1,588	1,578	6,345	6,345	6,345	6,345	3,399	3,736	3,736	3,787	4,223	4,896	5,163	5,451
충남	1,729	1,658	4,600	5,940	6,360	6,380	2,092	4,791	4,791	3,810	4,020	4,720	4,950	5,385
전북	1,324	1,321	4,920	4,920	4,920	4,920	1,235	3,620	3,620	3,895	4,465	5,270	5,385	3,252
전남	1,317	1,285	5,440	5,440	5,440	5,440	1,361	3,399	3,399	3,425	4,725	5,440	5,440	2,913
경북	1,629	1,614	8,380	8,380	8,380	8,380	3,225	5,273	5,273	6,740	7,590	8,220	8,380	10,026
경남	2,369	2,230	4,556	5,911	6,540	7,071	3,045	6,341	6,341	4,204	6,694	7,663	8,237	8,405
제주	664	621	5,600	5,600	5,600	5,600	647	1,549	1,549	4,190	4,190	5,190	5,530	1,318
계*	**32,209**	**31,662**	**110,492**	**113,181**	**115,926**	**116,469**	**44,380**	**91,986**	**91,986**	**75,582**	**92,780**	**105,648**	**110,790**	**101,847**

향후 과제

-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역량 강화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 강구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관련 법규

- 각급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2025년 9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특수·각종학교는 총 12,258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6.7%임

〈표 3 · 69〉 2025년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1,358	97.4	98.5	95.9	93.4	84.2	91.9	97.4	94.4	87.6	79.6	82.3	91.2
부산	635	98.7	98.7	97.6	97.3	94.6	95.7	99.1	94.6	98.4	98.0	97.0	97.3
대구	475	100.0	99.6	99.6	99.6	98.9	97.7	99.6	97.7	97.9	89.7	98.1	98.0
인천	559	97.9	98.0	97.9	98.0	96.1	95.3	98.4	92.5	98.6	97.0	93.4	96.6
광주	324	99.1	99.7	98.5	98.1	92.6	91.0	98.8	96.0	97.5	97.8	88.9	96.2
대전	314	99.4	99.7	100.0	100.0	93.3	97.5	99.7	98.4	99.4	97.5	92.4	97.9
울산	249	98.0	99.6	99.2	97.6	98.8	96.4	100.0	94.4	99.6	98.8	99.6	98.4
세종	107	99.1	100.0	99.1	96.3	97.2	100.0	100.0	97.2	100.0	99.1	97.2	98.6
경기	2,592	99.2	99.1	99.0	98.2	95.5	95.5	99.3	95.7	97.4	96.3	95.0	97.3
강원	641	98.9	98.9	98.3	97.7	95.9	87.7	97.3	85.2	97.3	95.8	92.2	95.0
충북	500	98.6	99.0	98.6	99.2	99.0	93.6	98.6	95.4	97.4	93.8	91.6	96.8
충남	742	98.5	98.7	98.4	97.4	91.8	88.7	98.9	92.3	96.6	96.2	88.9	95.1
전북	758	98.7	99.5	97.8	97.8	94.3	86.3	98.9	96.3	98.5	98.4	97.0	96.7
전남	854	97.3	98.4	96.8	97.0	97.3	76.9	98.0	96.5	97.8	96.7	94.6	95.2
경북	950	98.3	98.2	98.1	97.8	98.3	93.2	98.3	97.8	97.5	96.0	94.2	97.1
경남	1,004	99.3	99.1	98.6	98.2	99.1	88.5	99.3	98.3	98.4	97.0	95.9	97.4
제주	196	100.0	99.0	100.0	100.0	99.5	98.0	100.0	98.0	99.5	98.5	99.0	99.2
계	**12,258**	**98.7**	**99.0**	**98.4**	**97.9**	**95.7**	**92.6**	**98.9**	**95.3**	**97.6**	**95.7**	**94.0**	**96.7**

※ 단순 설치율 현황

- 설립 주체별로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는 97.1%,사립학교는 91.1%임

〈표 3 · 70〉 2025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국·공립	10,474	99.2	99.2	98.8	98.4	96.8	93.7	99.1	95.7	97.5	95.5	94.1	97.1
사립	1,784	95.5	97.4	94.2	92.5	83.7	79.9	96.6	92.7	92.4	89.2	87.3	91.1
계	**12,258**	**97.3**	**98.3**	**96.5**	**95.5**	**90.3**	**86.8**	**97.9**	**94.2**	**94.9**	**92.4**	**90.7**	**94.1**

- 학교과정별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초등학교 96.7%, 중학교 95.9%, 고등학교 95.5%, 특수학교 99.0%, 각종학교 84.8%임

〈표 3 · 71〉 2025년 학교과정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초등학교	6,293	98.9	98.7	98.6	98.0	96.3	92.6	98.8	95.8	97.1	95.1	93.6	96.7
중학교	3,291	98.6	99.1	98.0	97.2	94.5	90.4	98.9	94.6	96.8	94.3	92.3	95.9
고등학교	2,388	98.0	99.2	97.3	97.0	91.8	91.1	98.5	94.7	95.9	93.9	93.1	95.5
특수학교	196	99.0	98.5	99.5	99.5	99.5	98.0	99.5	99.0	97.4	99.0	100.0	99.0
각종학교	90	92.2	91.1	91.1	86.7	83.3	76.7	90.0	82.2	85.6	74.4	80.0	84.8
계	**12,258**	**98.6**	**98.9**	**98.2**	**97.5**	**94.9**	**91.7**	**98.7**	**95.2**	**96.7**	**94.6**	**93.2**	**96.2**

-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살펴보면, 설치 학교는 평균 97.8%, 미설치 학교는 평균 92.8%임

〈표 3 · 72〉 2025년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8,397	99.5	99.6	99.4	98.9	97.4	96.1	99.7	96.2	98.0	96.0	94.7	97.8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3,861	96.7	97.4	95.5	94.6	89.5	82.2	96.7	93.1	94.0	91.4	89.7	92.8
계	**12,258**	**98.6**	**98.9**	**98.2**	**97.5**	**94.9**	**91.7**	**98.7**	**95.2**	**96.7**	**94.6**	**93.2**	**96.2**

- 2025년 9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96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9.0%임

※ 경기도 모두학교(특수학교, 공립)는 '25. 9. 1. 개교했으나, 정보공시 이전으로 해당자료에서는 제외함

〈표 3 · 73〉 2025년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32	96.9	93.8	100.0	96.9	96.9	96.9	96.9	96.9	96.9	96.9	100.0	97.2
부산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구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인천	10	9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1
광주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3.3	83.3	100.0	97.0
대전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울산	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세종	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38	100.0	97.4	97.4	100.0	100.0	97.4	100.0	97.4	94.7	100.0	100.0	98.6
강원	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8.9	100.0	100.0	99.0
충북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충남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북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남	9	100.0	100.0	100.0	100.0	100.0	88.9	100.0	100.0	100.0	100.0	100.0	99.0
경북	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경남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주	3	100.0	100.0	100.0	100.0	100.0	66.7	100.0	100.0	100.0	100.0	100.0	97.0
계	**196**	**99.0**	**98.5**	**99.5**	**99.5**	**99.5**	**98.0**	**99.5**	**99.0**	**97.4**	**99.0**	**100.0**	**99.0**

※ 단순 설치율 현황

향후 과제

- 특수·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지원 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6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7,431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54.0%, 특수학급 졸업생은 57.9%,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은 65.9%이며 전체 진학률은 58.1%임

〈표 3 · 74〉 2026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서울	349	453	162	964	230	51	2	1	36	21	29	64	76	260	151	99	510	52.9
부산	157	204	108	469	60	52	1	3	55	17	2	23	57	65	130	75	270	57.6
대구	170	127	90	387	88	52	1	2	26	21	5	27	46	95	105	68	268	69.3
인천	134	219	106	459	54	93	6	-	20	25	4	15	35	58	128	66	252	54.9
광주	94	111	46	251	35	44	-	2	23	8	9	12	24	46	79	32	157	62.5
대전	82	128	46	256	38	68	-	-	16	9	5	10	26	43	94	35	172	67.2
울산	55	105	36	196	40	71	2	-	10	8	-	7	18	40	88	28	156	79.6
세종	12	21	10	43	12	7	-	-	3	2	-	6	6	12	16	8	36	83.7
경기	404	1,091	308	1,803	111	364	9	-	84	47	4	107	140	115	555	196	866	48.0
강원	81	94	38	213	52	39	-	-	11	6	2	8	19	54	58	25	137	64.3
충북	98	153	60	311	70	53	1	1	14	3	6	21	25	77	88	29	194	62.4
충남	98	226	30	354	50	67	-	-	13	5	1	42	16	51	122	21	194	54.8
전북	88	125	52	265	40	63	6	2	17	9	3	8	20	45	88	35	168	63.4
전남	113	176	14	303	55	62	-	1	25	3	1	23	4	57	110	7	174	57.4
경북	137	209	78	424	87	102	6	-	19	13	-	32	32	87	153	51	291	68.6
경남	175	308	113	596	117	76	2	-	69	25	1	49	50	118	194	77	389	65.3
제주	52	63	22	137	17	23	1	1	13	6	-	11	10	18	47	17	82	59.9
계	**2,299**	**3,813**	**1,319**	**7,431**	**1,156**	**1,287**	**37**	**13**	**454**	**228**	**72**	**465**	**604**	**1,241**	**2,206**	**869**	**4,316**	**58.1**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26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23개교 75명, 대학 130개교 1,116명으로 총 153개교 1,191명임

〈표 3 · 7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교, 명〉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교		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2014	16	84	80	637	96	721
2015	18	54	84	753	102	807
2016	15	48	88	768	103	816
2017	15	46	97	832	112	878
2018	16	56	100	888	116	944
2019	16	50	71	905	87	955
2020	25	95	93	898	118	993
2021	24	94	107	797	131	891
2022	23	87	85	832	108	919
2023	18	100	85	834	103	934
2024	19	62	108	867	127	929
2025	24	79	115	925	139	1,004
2026	**23**	**75**	**130**	**1,116**	**153**	**1,191**

※ 최종 등록기준 학교 수, 대상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제외,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제외)

※ 출처: 대학정보공시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26. 6월 기준)

- 2026년 6월 기준 대학(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은 220개 대학에 2,029명임
- 교육지원인력 유형은 학내 이동 및 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 속기, 점역 등을 대면 또는 원격으로 학습·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교육지원인력으로 나뉨

〈표 3 · 76〉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학교 수	교육지원인력 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일반 교육지원인력	대학(원)	141	91	11	1,389	1,491
	전문대학	43	-	-	217	217
	원격대학	2	44	-	-	44
	소계	186	135	11	1,606	1,752
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포함)	대학(원)	32	229	31	-	260
	전문대학	-	-	-	-	0
	원격대학	2	10	7	-	17
	소계	34	239	38	-	277
계		**220**	**374**	**49**	**1,606**	**2,029**

※ 출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사업 신청서 접수 기준), 한국장학재단(국가근로장학금 장애대학생봉사유형)

향후 과제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기능 내실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보조인력 적시 투입과 첨단 보조기기 확충·보급 체계 강화
- 장애인고등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접근성 및 국가 차원의 학습지원 체계 강화

 * 센터 주요업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자료 개발·보급 지원, 담당자 연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 맞춤형 고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음(평생교육법 제15조의2제1항)
-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운영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19조의2)

현황 및 추진실적

-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20년 10개(시범) → '25년 96개(누적) → '26년 102개(누적)로 지정 확대
 - 2025년 국고 지원 84개 지자체에서 2,164개 프로그램(지역 특성화, 일자리 연계,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87,555명 참여
-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Ⅲ주기) 실시(2026. 1.~)

 ※ 3년 주기: ('24) 후속조치 → ('25) 예비조사 → ('26) 본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기본 계획 수립 기초 연구 등 정책 기초연구 3종 추진(2026. 1.~ 11.)
- 2025년 12월 기준,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 과정(6회), 종사자 역량 강화 연수 과정(4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과정(1회) 등 총 11회 교육·연수과정 운영으로 1,433명 연수생 이수
- 2026년 6월 기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151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그 중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66개임

 *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교육청에 등록되거나 지자체에서 설치·지정한 시설(「평생교육법」 제20조의2)

〈표 3 · 77〉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단위: 개)

서울	전남광주통합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6 (6)	21 (4)	3 (1)	4 (1)	8 (5)	3 (1)	5 (3)	2 (0)	39 (28)	2 (1)	4 (2)	1 (0)	8 (3)	1 (0)	10 (10)	4 (1)	151 (66)

※ ()는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향후 과제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에 따른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확대
- 장애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 지정·설치 및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연계체제 구축 및 평생교육 전달체계 강화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담당 교원 등의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조사,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및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및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평생교육법 제19조의2)

1) 특수교육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학술교류 추진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7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기초 연구', '0~5세 장애영유아 이음교육 운영 모델 개발 연구', '뇌성(피질)시각장애 학생 선별 도구 개발 연구', '특수학급 신·증설비 교부기준 연구',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지침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 특수교육 실태조사(Ⅶ) 본조사', '특수교육 종단연구' 등을 실시하고,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 연차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있음
- 학생의 장애 조기 발견과 특수교육대상자 선별·진단을 위한 기초학습능력검사 개정 연구를 연차별로 수행하고 있음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운영으로 장애자녀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정보와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관련 우수 논문 발굴을 위해 '특수교육연구' 제33권(1호, 2호)를 발간하여 특수교육 관계기관 등에 배부함

- 국내외 특수교육 최신 정보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국내·국제세미나, 한일 특수교육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장특수교육' 제33권을 발간하고 있음

〈표 3 · 78〉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조사, 학술교류, 현장 지원, 성과 관리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 제7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기초 연구	1,155
	• 0~5세 장애영유아 이음교육 운영 모델 개발 연구	
	• 뇌성(피질)시각장애 학생 선별 도구 개발 연구	
	• 특수학급 신·증설비 교부기준 연구	
	•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지침 개발 연구	
	• 기초학습능력검사 개정 연구(3/4년)	
조사	• 2026년 특수교육 실태조사(Ⅶ) 본조사	1,141
	• 2026년 특수교육 종단연구	
	• 2026 특수교육통계 발간	
	• 202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학술교류	• 국내 세미나	392
	• 국제 세미나	
	• 국내 교류 협력	
	• 국제 교류 협력, 한일 특수교육 공동협의회 운영	
	• 현장특수교육 제33권 발간	
	• 특수교육연구 제33권 발간	
	• 스튜디오 운영 관리	
현장 지원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 운영	200
성과 관리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협의회 운영	43
	• 2025회계연도 특수교육 지원 사업 성과 분석 연구	
	• 국립특수교육원 홍보	
	• 출판권 및 저작권 관리	
계	**기획 4건, 연구 6건, 조사 4건, 학술교류 7건, 현장 지원 1건**	**2,931**

향후 과제

- 데이터 기반의 특수교육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확대와 특수교육 성과 분석 강화
- 제7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주요 추진과제 발굴 지원
- 보호자의 장애자녀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온맘 콘텐츠 개발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추진
-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과 교류 협력 기회 확대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용 도서 개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에 따른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군 통합교과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고 있음
 ※ 교과서 및 지도서 10책, 전자책등 2종
-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 접근 지원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교수를 위한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25년) 초 3~4 국어, 수학, 사회 → ('26년) 초 5~6 국어, 수학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모니터링과 기본 교육과정 성취수준* 개발·현장 안내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25년) 고등학교 11개 교과목 → ('26년) 초등학교 9개 교과목, 중학교 11개 교과목
 ※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개편, 건강한 생활 신설에 따른 성취기준 포함하여 개발
- 시각장애학생의 학습권과 시각장애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과용 도서와 학습참고서, EBS 수능 방송교재 등을 대체자료*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음
 * 교과서와 각종 참고서 등을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확대, 음성(데이지) 등으로 제작 또는 변환한 자료

〈표 3 · 79〉 국립특수교육원 교과용 도서 개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교과용 도서 개발	•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 - 통합교과 교과용 도서 개발(1/2년)	700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100
	• 장애영아 교육활동 현장지원 자료 개발	182
	• 기본 교육과정 초·중학교 성취수준 개발	150
현장 지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지원	58
시각장애학생 지원	• EBS 수능 방송교재 시각장애 학생용 대체자료 제작	121
	• 시각장애 학생·교사용 대체자료 제작	700
	• 시각장애 학생·교사용 대체교과서 제작·공급	-
계	**교과용도서 개발 10책 2종, 자료 개발 3건, 현장 지원 1건, 시각장애학생 지원 3건**	**2,011**

■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개정에 따른 기본 교육과정 통합교과 교과용 도서 연차별 개발과 모니터링,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현장 지원 등 후속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보급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자립 및 지역사회 참여 향상을 위해 직업 교과목과 연계하여 진로·직업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와 장애학생 진로 설계 지원 내실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26년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함
 ※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특수교육교원 293명 대상,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26.2.12.)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복지·고용을 연계한 '26년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을 실시함
 ※ 국립특수교육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 주최('26.6.24.,150명)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안 분석과 정보를 소개하는 '진로 이슈페이퍼'를 제공하고 있음

〈표 3 · 80〉 국립특수교육원 진로·직업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자료 개발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 콘텐츠 개발	66
현장 지원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진로 이슈페이퍼' 제공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관계기관 협력 및 취업지원 중앙상설협의체 협의	21
계	**자료 개발 1건, 현장 지원 4건**	**87**

향후 과제

-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다양화와 담당자 전문성 강화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과정별 진로·직업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지원 강화

4) 장애학생 인권보호 현장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전국 198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인권지원단의 활동 범위와 역할 안내, 우수사례 보급을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및 매뉴얼 현행화
 ※ 시도교육(지원)청 인권지원단 업무 담당자 218명 대상 활동 안내, 우수사례, 분임토의 등('26.3.19.)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운영 계획과 매월 활동 보고, 운영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은폐, 축소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익명 제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접수된 사안을 관할 교육(지원)청 인권지원단에서 신속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제3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장애인식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제4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개최로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경기도남부교육연수원('26.1.19.~2.26.), 행정안전부 로비('26.4.15.~4.17), 국립특수교육원(상시) 등
- 장애학생 인권교육 내실화와 인권침해 예방,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보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와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뽀꼬 아 뽀꼬' 음악재능 지원 사업 등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3 · 81〉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인권보호 자료 개발	• 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인권보호 콘텐츠 개발	65.
인권보호 현장 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워크숍, 현장지원 결과 수합, 매뉴얼 현행화 등)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인권지원 관련 모니터링, 인권침해 사안 접수 등)	8
장애공감문화 조성	• 제4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개최 • 장애공감문화 조성 관련 사업	12
자료 개발 1건, 현장 지원 2건, 장애공감문화 조성 2건		**85**

■ 향후 과제

- 인권지원단 현장지원의 지역별 특성 분석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강화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성인권교육, 학급중심 인권친화수업 우수사례 발굴

5) 특수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 현황 및 추진 실적

- 2025년은 집합연수 36개 과정 40기수와 원격연수(상시·정기) 105개 과정에서 각각 2,070명, 36,784명(총 38,854명) 이수함
- 2026년은 특수·일반 교원, 지원인력, 학부모, 공무원 등 특수교육 관련인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35개 과정 49기수, 원격연수 9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82〉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2026.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연수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지도 역량 강화(기본)	15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원 교육용 수어지도 역량 강화(심화)	14	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장애학생 통합체육 지도 역량 강화(초등)	125	초등 교원
	장애학생 통합체육 지도 역량 강화(중등)	139	중등 교원
	특수교사를 위한 동계 산림교육 체험(6개 과정)	161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교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 및 시스템 이해	27	원격수업기관 초등 온라인교사
	시각장애 교직원의 K-에듀파인 웹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기초)	18	시각장애 교직원
	전국특수학교장·교육전문직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134	특수학교장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33	병원학교 담당교사·인력
	뇌성(피질)시각장애 학생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16	시각·지체장애 특수학교 및 센터 교사
	건강장애학생 대상 교수·학습 및 지원 역량 강화	32	원격수업기관 초·중등 온라인교사
	시각장애 교직원의 K-에듀파인·나이스 웹 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	26	시각장애 교직원
전문교육	소방안전강사의 장애학생 소방안전교육 역량 강화	98	소방안전강사
계		838	-

〈표 3 · 83〉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2026.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연수(상시)	(신규) 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한국수어의 이해와 활용	35	교원 등
	(신규) 함께 행복한 학교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258	교원 등
	기본 교육과정 일상생활 활동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324	교원 등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1~2학년군 교과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32	교원 등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연수(상시)	(신규)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군 교과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81	교원 등
	(신규) 기본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73	교원 등
	(신규) 기본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 교수·학습 전문성 강화	57	교원 등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이해와 실제	22	교원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의 이해와 지도	27	교원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기본)	1008	공통
	(수어)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기본)	139	공통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고급)	1336	공통
	(수어)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고급)	81	공통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606	공통
	(수어)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기본)	77	공통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고급)	676	공통
	(수어)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역량 강화(고급)	55	공통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의 이해	182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이해	150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시각장애의 이해	306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청각장애의 이해	29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지체장애의 이해	60	교원 등
	2022 개정 특수교육 선택 중심 교육과정 특수교육 전문교과 직업·생활의 이해	64	교원 등
	(개정) 유치원 현장 중심 통합교육	460	유치원 교원
	(개정) 초등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	847	초등학교 교원
	(개정) 중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	546	중학교 교원
	(개정) 고등학교 현장 중심 통합교육	447	고등학교 교원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189	교원 등
	특수교사의 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 역량 강화	54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장애학생 부모상담	164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시각장애학생 부모상담	8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청각장애학생 부모상담	7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지적장애학생 부모상담	38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지체장애학생 부모상담	7	교원 등
	교원을 위한 자폐성장애학생 부모상담	57	교원 등
	특수교육 디지털 교육자료 만들기	35	교원 등
	특수교육 영상 교육자료 만들기	13	교원 등
	블렌디드 특수교육 수업하기	33	교원 등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9	학교관리자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연수(상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와 복무 관리	27	학교관리자
	실시간 쌍방향 특수교육 수업하기	35	교원 등
	특수교육 수업전문성 향상	153	교원 등
	장애학생 국어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28	교원 등
	장애학생 수학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31	교원 등
	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 기초	177	교원 등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86	교원 등
	장애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첫 걸음	420	교원 등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전문성 강화	203	교원 등
	교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지도 역량 입문	150	교원 등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6	교원 등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8	교원 등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33	교원 등
	모두를 위한 통합학급 운영 기본	412	교원 등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316	교원 등
	(학부모) 시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47	공통
	(학부모) 청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46	공통
	(학부모) 지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482	공통
	(학부모) 지체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51	공통
	(학부모) 자폐 및 정서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584	공통
	(학부모) 장애아동 의사소통의 실제	202	공통
	슬기로운 장애인식개선 생활	442	공통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62	공통
	미디어교육과 저작권 이해	429	공통
	시각장애학생 보행지도	85	공통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기	178	공통
	2018년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 실시 방법의 이해	185	공통
	정서행동검사 바로 알기	97	공통
직무연수(정기)	장애영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역량 강화	171	장애영아 담당교사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행 역량 강화	347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다양성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유치원 통합교육 역량 강화	341	유치원 교사
	다양성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초등학교 통합교육 역량 강화	657	초등학교 교사
	다양성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중등학교 통합교육 역량 강화	579	중고등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원의 AI·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	84	특수교사 교사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 연수 (공동 활용)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교과용도서 활용(바른·슬기로운·즐거운생활)	13	교원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교과용도서 활용(국어과)	39	교원 등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교과용도서 활용(수학과)	26	교원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의 이해와 실제(공통)	27	교원 등
	유·초 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위한 이해와 실제	38	교원 등
	모든 유아가 참여하는 통합학급 놀이	300	교원 등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놀이 중심 인성교육	88	교원 등
	AI시대, 디지털 문해력이 필요하다	129	교원 등
	준비물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교실 속 인공지능(AI) 교육	81	교원 등
	'뚝뚝! 수학탐험대' 활용하기	55	교원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수업의 이해	24	교원 등
	실습형 한글 문해교육의 실제	59	교원 등
	뉴노멀 시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129	교원 등
	행복한 우리 학급을 만드는 행동중재 적용하기	229	교원 등
	긍정적 행동지원의 수업 적용 및 실행 방안	392	교원 등
	학교 생활교육을 위한 상담기법 활용	54	교원 등
	보다 나은 성장을 위한 교직 지침서	29	교원 등
	촘촘히 보살피는 교원 마음건강	55	교원 등
	예술가와 떠나는 미술기행	28	교원 등
자격 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교사 자격전환 연수	17	해당 교원
계		17,578	-

* 대상 구분: 교원 등(교원, 교육전문직, 지원인력), 공통(학부모 등 일반 국민 포함)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적용에 따른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교수 학습 지도 역량 강화 및 협업기관 연계 연수 운영
- 특수교육 관련인의 장애공감문화 조성과 통합교육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 연수 방법 다양화로 학습자의 연수 기회 확대와 현장 중심의 교육연수 콘텐츠 개발

6)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을 위해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영상 60종과 현장지원단이 제작한 수업 지원자료 96종을 에듀에이블(eduable.net)을 통해 보급 예정임

〈표 3 · 84〉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구분	지원 내용	이용 대상
에듀에이블 (eduable.net)	• (시각장애 대체자료) 시각장애 교원과 학생을 위한 교과서, 지도서, 참고도서, EBS 교재 등 • (교육과정 자료)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등 • (수업 지원자료) 멀티미디어북, 교수·학습 영상 등 • (디지털 교육자료) AI·SW교육, 실감형 콘텐츠(AR, VR), 무인정보 단말기 등 • (진로·인권 자료) 인권 보호, 직무교육·진학지원, 장애공감 등 콘텐츠	학생, 교원 등

- 장애학생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교육과정 연계 VR 콘텐츠 2종(의사소통 영역)과 장애학생의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2종(사회, 과학 교과 기반)을 개발·보급 예정임
-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표준체계 개발 연구'와 'AI 활용 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 신장 및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해 정보경진대회·e스포츠 대회·문화행사 등 전국 단위의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음

●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해 플랫폼 운영, 맞춤형 콘텐츠 개발, 실감형 콘텐츠 체험 버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그림 상징을 이용한 의사소통교육 등 디지털 기반 수업 개선이 가능한 교육 지원 플랫폼, 열린배움터(aiclass.nise.go.kr)를 운영하고,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 초등 5~6학년군 사회, 과학, 실과 교과와 연계 사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6종을 개발·보급 예정임
- 자립·지역사회 참여, 사이버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진로·직업 및 인권보호 콘텐츠 2종을 개발 예정임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에듀테크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버스 운영('26, 70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 · 85〉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디지털 교육지원 사이트·플랫폼 운영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 열린배움터(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지원 플랫폼) 운영	514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정보화 교육자료 개발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개발 • 장애학생 기본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 장애학생 진로직업 및 인권보호 콘텐츠 개발	1,145
정보화 연구	•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표준체계 개발 연구 • AI 활용 교육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기초 연구	40
현장 지원 및 대외협력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운영	655
관리·운영	• 학술정보관 운영	48
계	**연구 2건, 개발 4건, 운영 4건, 행사 1건**	**2,402**

향후 과제

-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 확대
- 장애학생 및 교사의 디지털 역량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기초 연구 추진
- 급격한 과학기술 변화와 미래 교육환경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지속 추진

7)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02개('21~'26년 누적) 도시를 선정·지원하고 있음

〈표 3 · 86〉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2020 (10개)		〔경기〕 광명시, 오산시 〔부산〕 서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전북〕 군산시 〔충북〕 청주시
2021 (19개)		〔경기〕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대구〕 수성구, 달서구 〔부산〕 동구, 동래구, 서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전남〕 순천시 〔전북〕 김제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충북〕 충주시
2022 (32개)	신규 (13개)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시, 용인시 〔대구〕 동구 〔부산〕 남구, 영도구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춘천시 〔경북〕 김천시 〔광주〕 남구, 북구, 서구
2023 (70개)	신규 (38개)	〔서울〕 노원구, 영등포구, 은평구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 〔인천〕 계양구, 서구 〔광주〕 광산구, 동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충북〕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나주시 〔경북〕 경주시, 상주시 〔경남〕 남해군
2024 (82개)	신규 (12개)	〔서울〕 강남구, 강서구, 종로구 〔부산〕 금정구 〔대전〕 대덕구 〔경기〕 군포시,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남〕 서산시 〔충북〕 괴산군, 증평군 〔경북〕 안동시
2025 (96개)	신규 (14개)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시흥시 〔충북〕 단양군, 보은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전북〕 정읍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경남〕 산청군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2026 (102개)	신규 (6개)	〔서울〕 광진구, 구로구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충북〕 영동군 〔경남〕 거제시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 관련 전국 단위 기초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2026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Ⅲ주기)」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초 연구 3건,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각 3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및 콘텐츠 각 2종, 장애인 문해교육 콘텐츠 2종 개발·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교·강사 문해교육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음

〈표 3 · 87〉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원격 연수

연번	과정명	기수	인원(명)		만족도 (점)	기간	시수	비고
			계획	이수				
1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 역량 강화	1	100	325	96.0	2.23.(월)~2.27.(금)	8	완료
		2	100	316	95.0	6.15.(월)~6.19.(금)	〃	완료
		3	100	-		8.24.(월)~8. 8.(금)	〃	예정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학습지원 역량 강화	1	100	192	96.0	3.16.(월)~3.20.(금)	11	완료
		2	100	124	94.5	5.11.(월)~5.15.(금)	〃	완료
		3	100	121	94.9	6.29.(월)~7.3.(금)	〃	완료
3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의 문해교육 지도 역량 강화	1	100	164	94.5	4.13.(월)~4. 17.(금)	13	완료
		2	100	-		10.12.(월)~10.16.(금)	〃	예정
		3	100	-		11.16.(월)~11.20.(금)	〃	예정
계			900	1,242	총 3개 과정 9회 운영			

〈표 3 · 88〉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집합 연수

연번	과 정 명	인원 (명)	만족도 (점)	연수기간	시수	장소
1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역량강화	42	99.4	4.28.(화)~ 4.30.(목)	18	국립특수교육원
2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70	96.5	6.10.(수)~ 6.12.(금)	16	경주 (더케이호텔)
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기관장) 직무 역량 강화 과정	23	99.7	6.23.(화)~ 6.25.(목)	15	국립특수교육원
	충남교육청 공무원 대상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역량 강화	69	96.8	7.10(금).	6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행동중재 지원 역량강화	100	96.8	7.9.(목)~ 7.23.(목)	25 (권역별 5차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장애인 디지털 문해 지원 역량 강화	100	예정	8.27.(목)~ 9.10.(목)		
	장애인 학력보완(기초문해) 지도 역량 강화	100	"	10.15.(목)~10.29.(목)		
4	장애인 평생교육 교·강사 문해교육 지원 역량 강화 연수	20	"	8.5.(수)~ 8.6.(목)	25	서울 스페이스 쉐어
		20	"	8.26.(수)~ 8.27.(목)	25	오송ACE컨벤션센터
		20	"	9.29.(화)~ 9.30.(수)	25	부산 스페이스 마레
계		544	총 4개 과정, 21회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연계체제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

〈표 3 · 89〉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단위: 백만 원)

구분	과 제 명	예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3,110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상담콜센터 운영)	2,646
조사·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Ⅲ주기)	400
	• 장애인 평생교육 가족지원 연계 방안 연구	50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 방안 연구	30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기초 연구	30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사업('25) 성과분석	6.5
연구·개발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발달장애)	100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성인 진로개발역량)	400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기초문해)	300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시민참여·문화예술)	100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개발(학력보완)	300
	• 장애인 문해교육 콘텐츠 개발(초등·중학 수학)	300
교육·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60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30
	• 장애인 평생교육 교·강사 문해교육 지원 역량 강화 연수	50
센터 운영	• 연계체제 활성화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등	48.5
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1건, 조사·연구 5건, 콘텐츠 개발 6건, 연수 7건, 현장지원 1건**	**7,961**

향후 과제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규모 확대
- 「장애인평생교육법」(시행: 2027.5.11.)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사업 추진
- 장애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장애인문해교육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 기본 문해교육 교과서 개정 및 고등학교 학력 인정 교육과정 수립 추진
- 장애인평생교육사, 장애인 문해교육교원 양성·관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협력 사업 발굴

2026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부록 I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139
- 부산광역시교육청 / 150
- 대구광역시교육청 / 161
- 인천광역시교육청 / 170
- 광주광역시교육청 / 181
- 대전광역시교육청 / 198
- 울산광역시교육청 / 208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18
- 경기도교육청 / 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236
- 충청북도교육청 / 246
- 충청남도교육청 / 25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267
- 전라남도교육청 / 279
- 경상북도교육청 / 289
- 경상남도교육청 / 30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14

서울특별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Ⅱ 2025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학교명	예정지	장애영역	개교 예정
서울동진학교(가칭)	중랑구 신내동 일원	지적장애	2027. 9월
서울성진학교(가칭)	성동구 성수동 성수공업고등학교 폐교 부지	지체장애	2029. 3월

※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총 9교 설립을 목표로 「공립 특수학교 중장기 기본계획」(2021년) 추진 중

※ 특수학교가 없는 5개 자치구(금천·양천·동대문·영등포·용산)에 추가 설립 지속 검토, 수요 많은 동남권(강동·송파) 및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추가 설립 지속 검토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희망 수요 조사에 따른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25	139	153	500	882	222	345	107	299	968	1,679
2026	142	157	510	913	228	356	113	311	993	1,737
증감	3	4	10	31	6	11	6	12	25	58

※ 2026학년도 신증설 61학급, 감축 3학급, 순증 58학급

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계획(2025~2029)」 지속 추진

- 학교법인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대상 포함, 특수학급 설치 사전 예고제 운영

나)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인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6교

3) 학교장 선발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학교: 23교(외국어계열 6교, 국제계열 1교, 자율형 사립고 15교, 체육계고 1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학교: 10교(영재학교 1교, 과학계고 2교, 예술계고 6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 1교)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안교육 위탁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후 위탁 의뢰
 나) 대안교육지원센터(https://daeancenter.sen.go.kr)를 통해 위탁 및 복귀 절차와 방법 안내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서울특수교육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가) 서울특수교육원(가칭) 설립·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간행물 2025-98) 후속 추진
 ※ 설문응답율 89.1%, 1,087명 참여, 설립 필요성 확인
 나) 설립타당성 분석 결과(정책적·사회적·경제적 분석) 기반 설립 로드맵 수립
2)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다)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전문적 특수교육 지원 확대: 11센터
 장애 유형, 진로·직업교육, 영아교육, 가족지원 등 특성화 사업 운영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가)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강화(NEIS 연계)
 나) 장애의 조기발견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병원 및 진단·평가 전문기관 지정 확대

다.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2) 장애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4)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장애 전담어린이집 장애영유아 통합지원: 7개소
5)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가)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교육 이력 등에 관한 NEIS 연계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학 업무를 위한 NEIS 활용
 나) 장애의 조기발견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진단·평가팀 구성 및 교육 전 진단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병원 및 진단·평가 전문기관 지정 확대: 159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교육과정 중심 통합교육

1) 함께 다지는 통합교육

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함께 추진하는 통합교육 정책 실행

- 통합교육 현장과 밀착된 정책과제 연구 추진
- 정책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실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나) 통합학급 지원 확대

- 다양한 학생들의 의미있는 배움이 살아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UDL) 역량 강화

2)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활성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교수 기반의 더공감교실 운영: 연구학교 8교, 운영학교 22교, 학급단위 운영학교 20교('26. 6월, 20팀)
- AI와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 초등학교 25교 선정 예정('26. 2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통합교육 연수 운영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연수 운영

연수명	대상	인원	주요내용	시기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리더십 혁신 연수 I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 배치된 일반학교 유·초·중·고 교(원)장	(대면) 380 (비대면) 580	장애인식개선공연 통합교육정책안내 장애학생 인권 및 교권보호	2026. 5.
일반학교 관리자 통합교육 리더십 혁신 연수II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 배치된 일반학교 유·초·중·고 교(원)감	(대면) 378 (비대면) 552	통합교육 운영내용 통합교육 사례나눔	2026. 5.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 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교사	100	통합교육, 사회정서학습, AI·에듀테크 활용 학습 등	2026. 4.
디지털 기반 통합교육 교원 연수	초·중·고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초등)60 (중등)40	AI와 보편적 학습설계 AI 활용 수업 사례 등	2026. 4~5. 2026. 9.

다)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11기관
-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1단
- 통합교육지원단 워크숍('26. 4월) 및 사례 나눔('26. 12월) 운영
- 교육지원청 학교과정별 교사 네트워크 구축 확대

나.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지원체제 강화

1)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가)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 수업에서 다양성을 가치 기반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실시

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강화

-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교 내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학부모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확대)

다) 장애공감문화 확산

- 학생 주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학교 지원: 총 30팀
-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문화행사
- 장애공감문화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11단(교육지원청별 각 1단)

다) 장애인권교육 강화: 학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나)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다)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맞춤형 컨설팅장학, '찾아가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라) 특수학교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임상장학, 멘토링 계획 수립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나)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3)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확대
 가)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 인공지능(AI) 활용 미래교실 운영 학교 선정 및 지원: 4교
 -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SELC) 운영 활성화
 나) AI미래특수교육연구회 운영
 다) AI연계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AI연계 특수교육 교육과정 체계 도입
 라) 일상생활 디지털 접근성 교육 활성화(장애특성별 e스포츠 교육 포함)
4) 자율·협력 중심 교원 성장 지원
 가) 교사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연수 확대
 - 저경력(3년 미만) 교사 대상 수업 성장 자율연수
 - 교직단계별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 연수
 - 수업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나) 교원학습공동체, 수업성장 네트워크, 수업 멘토 지원 운영
 다) 수업나눔축제 등 수업나눔 활성화
 라) 특수교육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나.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1)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가)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나)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

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한 맞춤형 직업체험 및 직업 훈련 운영: 2센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서울남부발달장애인훈련센터)

라)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

마)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사업 운영

바) 장애학생 디지털 직업실기 자격취득 과정 운영(1인 20만원 이내, 학교당 최대 150만원 이내, 특수학교 300만원 이내)

2)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

- 아르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활동(텐덤사이클) 지원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활용

다.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1)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

가)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정, 복지시설 등 순회교육 실시

나) 통합교육지원 서울형 순회교육 강화: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순회교육

다) 병원학교 순회교육 확대: 9교 운영

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지체중복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육청-의료기관-학교' 연계 특수학교 건강관리지원 사업 운영
-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지원 사업 운영(교육청-서울대학교병원 협약)

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중부·강서양천/동부·남부)
- 실시간 문자통역(쉐어타이핑), AI기반 실시간 문자통역(소보로), 수어통역, 시각대체학습자료(점자, 데이지자료, 확대자료) 제작 지원

다)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교육지원 제공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 지원

-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병원학교 담당자 및 보호자 교육 강화
-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전교육 편성·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3)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현장중심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지원체제 강화

1)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SWPBS) 운영 확대 및 내실화
 - 특수학교 및 행동중재 전문교사 배치 일반학교 대상 운영
 - 다층지원체계 기반 행동중재 방안 마련 및 실행
2) 개별 학생 행동중재지원 강화
 - 행동중재 전문교사 3기 양성과정(기본) 운영
 - 긍정적행동지원가(퇴직교원 45명) 운영학교 배치 및 상·하반기 보수교육
3) 행동중재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연수명(가칭)	대상	인원	주요내용	시기
행동중재 전문가 되기 연수(상반기)	특수교사	50	증거기반의 실제 이해 등	2026. 7.
행동중재 전문가 되기 연수(하반기)	특수교사	50	증거기반의 실제 이해 등	2027. 1.
긍정적행동지원 학부모 연수	학부모	150명 150명	가정에서의 행동지도, 약물치료의 이해 등	2026. 6. 2026. 10.

4) 서울긍정적행동지원(서울PBS) 실행 콘텐츠 운영
 가) 자료 기반 행동중재 실행을 위한 서울PBS 플랫폼 운영
 나) 서울PBS 누리집(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채널명: Seoul PBS) 운영
 다)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실행자료 개발·보급

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1)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치료지원 내실화: 특수학급 순회학급 학생 재택 치료지원 확대 및 모바일

바우처 앱 서비스 제공

나)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편의 지원

2)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편성

3) 특수학교 서울형 늘봄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제 강화

가) 특수학교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25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지역기관 연계 사업 운영: 14기관

다)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및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가)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편의시설 확충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서울동진학교 외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

2)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 확충

설립	신·증설 예정 학급수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29년 기준)
공립	33	31	30	27	미정	121
사립	13	13	8	12	미정	46
합계	**46**	**44**	**38**	**39**	**미정**	**167**

※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계획(2025~2029)」 추진

2030년 이후는 「제3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계획」 수립 예정

3) 특수학교(급) 공간 재구조화
- 미래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 조성
- 특수학급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서울특수교육원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설립 로드맵 수립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울타리 구축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운영 및 역량 강화

다.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격차 해소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과정 중심 협력 기반 통합교육
1) 통합교육 정책 고도화를 위한 정책 연구 연계 실천 방안 모색
- 제2차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정책 추진 과제 도출 및 사업 추진 관련 재원 확보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활성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 실행 지원
- AI와 함께하는 사회정서학습교실 운영 확대를 통한 에듀테크 기반 협력 기반 교실 속 통합교육 내실화 정책 확산 도모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교수 기반의 「더공감교실」 지속 운영

나.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1)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 수업에서 다양성을 가치 기반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실천사례 발굴 및 보급

2)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운영 다양화
- 장애인식지수 활용방안 모색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 개선 노력 강화
- 학생 주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학교 확대

3)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점검표를 활용한 학교별 자체 점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가)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수업사례 나눔 및 연수 확대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내 AIDT 도입 대응 활용 역량 강화 지원

다) 인공지능(AI) 활용 미래교실 운영 확대

라)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속 지원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3)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 실행을 위한 교원 성장 지원

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 체험 확대

2) 희망일자리 사업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취업 지원 내실화

3)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활성화

다.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1) 순회교육 지원 유형 다양화

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 강화

1)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체제 내실화: 교원학습공동체, 행동중재특별지원단

2)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운영 관련 데이터 관리, 실행도 점검

3) 서울PBS 누리집 및 PBS플랫폼을 활용한 자료기반 행동중재 실행 지원 체제 고도화

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1) 이용자 편의를 위한 치료지원 홈페이지 개선

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기준 및 방식 개선

3)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개선: 서울시보조기기센터와 연계

4)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지역자원 활용,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 활용

5) 방과후학교 활성화, 돌봄교실 확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방향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특수교육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홍보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치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운영(교육청 홈페이지-연중, 상담-수시)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 구축

가)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협의체 운영(1회 이상)

나)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안내 체계 마련

3) 의무교육 이행 철저: 홍보, 상담,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지원,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등 취학 의무가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령 취학 독려

4) 초등학교로의 입학 적응 지원 강화

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연수(5회)

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306교, 730명)

다) 부산장애인복지관협회 연계 예비학교 운영·지원(5개 교육지원청)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체계 내실화(진단평가팀 협의회 2회, 담당자 협의회 2회)

2) 선정·배치 절차 체계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준수

3)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가)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의 취학 또는 재취학 시 적정 절차에 따른 학교 지정·배치 추진

4)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선정·배치 및 정보 관리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처리 간소화 및 결과 처리 실시간 반영

5) 미래 성장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담당자 협의회 2회)

6)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기능 강화: 6개(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영유아, 진로직업탐색)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확대

가) 특수학교: ('25) 15교 379학급 → ('26) 16교 408학급

나) 특수학급: ('25) 540교 701학급 → ('26) 550교 736학급

다) '27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 조사 및 특수학급 설치 필요 학교 사전 안내(4~5월)

2)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및 환경개선 지원

가) 학급 신·증설에 따른 시설·설비 설치 및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40학급)

나) 특수학급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사업(25학급, '23.~'25.까지 총 81학급 추진 완료)

다) 특수학교 장애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장애맞춤형 IoT 스마트교실 50학급, 무장애 실내·외 환경 조성 2교,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18실)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지도역량 강화 연수 지원

나)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전국특수교육연구대회 등 연구대회 참여 권장

2) 특수교육지원단 운영
가) 4개 영역(교육과정, 수업, 통합교육, 행동중재) 구성(79명)
나) 특수교육지원단 협의회(5월) 및 팀별 컨설팅·연구활동(연중) 운영
3) 특수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및 특수교육 관련 연구회 조직·운영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1교)
나) 교육연구회 운영·지원(PDC교육, 1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6팀) 및 컨설팅 운영
나)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5원), 장애유아 지도교사·학부모 연수(10회)
다) 통합교육지원실 구축(5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권장
나) 일반학교 교원의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권장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통합교육 협의회 운영,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운영
나) 통합교육 연구학교(1교), 통합교육 중점학교(13교) 운영·지원
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유치원) 통합교육 컨설팅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실 실시(2회)
나)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1회)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장애이해 교육활동 지원(장애이해교실 300학급, 장애공감학생동아리 3교)
나)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콘텐츠 활용 장애이해교육(유치원:장애이해 동영상, 초등학교:대한민국 1교시, 중·고등학교:장애이해 드라마)
다)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지원: 장애이해온라인방탈출 콘텐츠(유, 초), 영상 콘텐츠(중, 고)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교육 50교)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가) 6팀(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84명으로 구성

나) 인권침해 예방 컨설팅 및 사안별 지원(정기지원, 특별지원)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후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찾아가는 성, 인권교육(중학교 특수학급 40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가)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및 디지털 활용 교육 강화

나) 인공지능 기반 로봇 활용 교육 운영(특수학교 2교, 특수학급 4학급)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교 자율성 강화

나)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전공과 운영 10교, 40학급)

다) 특수학교 진로직업 특성화교육과정 운영(4교)

라)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1팀)

2) 일반학교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통합교육계획, 특수학급 운영계획 수립(3월)

나) 지구별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4회)

다) 특수학급 담당교원의 통합교육 내실화 노력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이수 철저

라)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및 운영비 예산편성

마) 통합교육계획 수립·운영,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 적정 배치 및 일반 학생수 감축(1~5명) 권장

다.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가) 특수·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수립·적용

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치료지원 등 관련 서비스 포함하여 작성)

다) 개별화교육계획 3유형(교과, 생활지원, 교과 및 생활지원)

2) 개별화교육 운영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현황 조사(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 4월)

라. 특수학교(급) 동행장학

1) 특수학교 장학

가) 학년초 현장지원 장학: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 협의(4월, 16교)

나) 학기중 현장지원장학: 교육실습, 방과후·돌봄학교, 지원인력 운영, 학교 현안 등 협의

다) 학교 내 자율장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2) 특수학급 장학

가) 특수학급 현장지원장학: 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맞춤형 교육환경 개선, 현안 등 협의

나)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4회, 47개 지구)

3) 컨설팅 장학

가) 특수교육지원단(교육과정, 수업, 행동중재, 통합교육팀) 연계 컨설팅

나) 교육(지원)청별 통합교육지원단, 나이스현장지원단 등과 연계한 주제 중심 컨설팅 지원

마.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중증장애학생 지원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운영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수업일수(170일), 수업운영형태(방문수업, 가정학습, 체험학습)

바.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과정, 특색교육, 인성교육 등과 연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운영

나) 특수학교(급)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29교)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급) 체육활동 특화교실 운영(13교)

나)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14종목, 선수 168명)

사.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교육 여건 개선,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내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1교)

나) 학교-의료기관 간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한 전담 간호사 운용

3)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를 통한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지원(2개 센터)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지원(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인제대해운대백병원학교)

나) 원격수업 위탁기관(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사)꿈사랑학교) 운영 지원

다) 학교 복귀 전·후 프로그램 운영(5교)

5) 행동중재 지원

가) 특수학교(급)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특수학교 15교, 특수학급19교)

나) 행동중재 컨설팅 운영: 행동중재 순회교사, 지원단 활용 컨설팅 운영

다)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현장지원단(35명), 자문위원(3명)

라) 병원연계 행동중재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명

마)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운영(10명, 대학부설연수원 위탁)

아. 늘봄·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방과후·돌봄 운영

가)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운영(16교, 312개 프로그램, 1,728명)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유·중·고) 방과후학교 운영(64교, 64개 프로그램, 277명)

다)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155교, 169개 프로그램, 582명), 지원인력 운영(26개교, 113,670천원)

라) 기관연계형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기중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13개 기관, 25개 프로그램, 83명)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가)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지원(10교, 12학급, 55명)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참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91개원, 지원인력비 원당 3,000천원)

3) 늘봄·방과후 지원인력 역량 강화

가) 특수학교 늘봄실무사 역량 강화 연수(13명)

나) 특수학교 늘봄실무사 방과후·돌봄 컨설팅 지원(공립 8교, 사립 5교)

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인력 증원 배치: ('25) 914명 → ('26) 924명(사회복무요원 포함)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지원(시교육청 주관 집합연수 4회 등)
2) 치료지원: 물리치료 등 총 11개 영역, 마중물카드를 통한 지원(5,844명)
3) 통학 편의 지원: 유치원~고등학교 지원, 연3회 학기별 지원(2,747명)
4)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신규 대여 24회, 제작 지원 7월 예정)
5)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지원 : 가족지원 연수(2회), 가족지원 프로그램(6회), 가족상담(50가족), 학부모 자조모임(3팀)

차.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
 가) 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 학교 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장애학생 학교 담당자(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운영
 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라) 장애학생 일과 중 학교 이탈 예방 노력
 마)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원 및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바) 장애학생 교육실습,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학교 안전 내실화
 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개편)안에 따른 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
 나) 연 2차시 이상 응급처치교육, 초등 5학년 이상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실시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유괴 예방
 라) 특수학교 안심 알리미·학교안전 지원 사업: 학생 등하교 문자 알림·위치 추적 확인, 통학버스 위치 추적 서비스, 통학버스 운전자 스마트폰 제어 시스템 지원

카.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

1) 장애학생 진로체험활동 강화
 가) 특수학급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급(중, 고) 대상(35교, 182명)
 나) 미래교육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급(초, 중, 고) 대상(37교, 228명)
 다) 찾아가는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급(초, 중) 대상(45학급)
 라)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개 직종(46교, 548명)

마)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개최: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 대상(247명)

2)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가)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나)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3교)

다) 직업교육 거점센터(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학급(고) 대상(25교, 200명)

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부산전자공고) 운영: 특수학급(고) 대상(13교, 99명)

마)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부산혜성학교 「꿈이룸」, 부산해마루학교 「에코해마루」

바) 장애학생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17개 기관, 20개 프로그램(34교, 128명)

사)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특화훈련(실무작업, 외식산업 분야) 연계(일반고 3학년 9교, 10명)

아) 장애학생 기관연계 직업평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20교, 121명)

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진로 정보 제공 강화

3) 장애학생 취업·진학 지원

가)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13개 기관)

나)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연수, 상담, 체험)

다) 장애학생 채용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 운영(5개 기관, 15명)

라) 장애학생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 운영(고등학교 이상 특수학교(급), 10교)

마)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고등학교 특수학교(급), 20교)

바)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정보 및 상담(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연계) 제공

사)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학생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7월), 입학적응 예비학교(5~12월) 운영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7~10월)

2) 특수교육대상학생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10월)

3)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협의회(8월, 12월)

4) 특수교육 거점지원센터별 유관기관 협의체(시각, 청각, 발달) 운영(6~7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2학기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4~8월)

2) 특수교육대상학생 상급학교 진학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6~10월)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통합교육 연구학교 협의회 지원(6~7월, 11월)

2) 특수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팀별 연구회 운영(5~12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 성과보고회(10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통합)교육 연수(7~11월)

2) 통합교육 중점학교 컨설팅 지원(6~9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초·중·고 200학급, 6~12월)

2) 유치원 대상 찾아가는 장애공감 인형극 운영(80개원, 6~12월)

3) 장애공감 학생 동아리 운영(3개, 4~12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교육(지원)청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6단(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나) 더봄학생 재학교 중심 정기현장지원 실시

2)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대응 체계 강화

가)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 신고함 설치 및 CCTV 설치 확대

나) 장애학생 대상 사안 발생 시 보고체계 강화를 통한 사안별 신속 지원

다)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강화

3) 장애인권 존중 문화 조성

가)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화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특수학교 미래형 다목적 직업훈련실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지원

2) 특수학교(급) 인공지능 기반 로봇 활용 교육, AI교육 우수 사례 발굴·보급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지원

가) 특수학교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7월, 2회)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컨설팅 실시(5~11월)

다. 순회교육지원 강화

1) 순회교육대상 학생 학기말 평가 및 2학기 계획 수립(7~9월)

2) 순회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수업 나눔(3팀, 6~7월)

라.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부산장애학생 체육 한마당 개최(9월)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 교사 연수(6월)

2) 행동중재 지원: 전문가 양성과정(8~12월), 병원연계 행동중재 지원(7~12월)

바.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여름·겨울방학 방과후·돌봄 운영(여름방학7~8월, 겨울방학12~'27. 1월)

2) 기관연계형 여름·겨울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 23개 기관(예정)

3) 특수학교 방과후 과정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사 대상 직무 역량강화 연수 및 현장 컨설팅 실시(26교)

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 직무역량교육 등) 실시

2) 치료지원 제공 기관 현장지원 및 점검(6~12월)

3)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7월)

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

1) 2026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개최(9월)

2)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운영(10월)

3)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컨설팅(11월)
4)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및 현장실습 운영 점검(11~12월)
5)「My JOB 프로젝트」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12월)

대구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학생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가. 학생 성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나.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특수교육 다양성 및 질 제고

다. 학생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 통합교육

3. 추진 중점과제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나.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및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1인당 50만원 이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운영 및 순회교육 제공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공립 150천원, 사립 401천원 이내)

라)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지원 강화

- 장애영유아 담당교원 연수 및 컨설팅 기회 확대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사업 운영

2)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사립유치원 배치(3인 기준) 시 특수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나) 놀이 중심 탐구학습 중점 통합유치원 운영(2원)
- 단설유치원(대구인지유치원), 병설유치원(대구불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4개원/동부·서부·남부·달성교육지원청별 1개원)

나. 대구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역량 강화

1) 학생 맞춤형 체험교육, 연수 및 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특수교육 역량 강화 중심 역할 수행
2) 진로·직업 실기 연수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역량 강화, 특수교육 행동중재전문가 교원 300양성('26~'28)
3)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강화 및 확대
 - 온맘 부모교육-온맘 리더 부모교실, 학부모 양육 전문가 200명 양성(총4반, 주중·주말반 편성), 온맘 처음 부모교실, 온맘 성장단계별 부모교실, 온맘 공통 부모교실
4)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5)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3개소)
 - 대구광명학교(시각장애), 대구영화학교(청각장애), 대구덕희학교(정서장애)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추진
2) 중증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형 특수학교 운영(대구천내초등학교 4학급)
3)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운영(대구예아람학교 문화예술 중점 운영, 대구이룸고등학교 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지정 운영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장 선발)
4) 2026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운영

가) 신설: 9학급(유 1, 초 2, 중 2, 고 1, 특3)

나) 증설: 21학급(초 13, 중 5, 특 3)

라.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전문성 제고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가)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 장애교원 지원교사,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1명 추가 배치

2)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제고

가) 특수교육 교원 전문학습공동체 운영(155팀)

나) 특수교육 교원 연구회 운영(2팀/정보화교육, 진로직업교육)

다) 특수교육수업지원단 운영(유·초등 9명, 중등 9명, 총 18명)

라)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 활동 강화(지원장학, 권역장학, 멘토링장학)

마) 대구교육연수원과 협력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및 역량 강화 연수 확대

바) 특수교육 자료 수집·관리를 위한 세미나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79명)를 통한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수업, 통합교육 지원, 문제행동 중재, 장애이해 교육 등 실시

2) 교수, 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각 1팀, 총 6팀)을 구성하여 기본·정기 현장지원 강화

3) 통합교육지원실 10교 운영

4)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색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6개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3시간 이상 이수)

2)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지원

3)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 학교」 확대 운영(34개교)

4)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운영

5) 예비교사 대상 통합교육 소양 강화

다.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2)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운영비 지원(유·초·중·고·특 교당 80만원)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성교육 전문가, 특수교원, 경찰,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각 1팀, 총 6팀)을

구성하여 정기·특별 현장지원 강화

2)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3) 유·초·중·고·특·각종학교 직원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이상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장애학생 맞춤형 AI·디지털 교육 확대(특수학교 11, 특수학급 22)

2)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12교), SWAI교실(7교) 등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3) 장애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한 「대구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6월)

가) 대상: 특수학교(급) 및 비장애학생 등 220여명

나) 종목: 정보경진부문 18종목(정식 16, 시범 2), e스포츠부문 11종목(정식 9, 시범 2)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편성·운영(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5-5호)

2)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가) 학교 특성, 학생·보호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특수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문화예술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다)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3) 유·초·중·고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연구 및 보급

4) 특수학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설계 및 성찰 주간 운영(11교, 22,000천원 (교당 1,700천원~2,200천원 차등 지원))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가) 2026 특수교육수업지원단 컨설팅 실시(수시 신청)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나눔 등

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

-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실기) 직무연수(20~30시간, 70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대상 통합교육 연수(6시간 60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대상 진단평가 도구 연수(6시간 60명)

다) 행동중재전문가 300 양성 직무연수 운영(270시간, 540명)

6) 장애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
가) 학교별 운영 사례, 현안 과제 및 해결 방안 등 공유
나) 희망학교 및 권역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실행력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 방안 안내(2026. 2월)
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과중심, 생활지원중심, 교과 및 생활지원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나) 2025 특수교육연구회 「2025 개별화교육계획 예시, 2025 행동중재 사례집」 활용
2)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실시
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4)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 실행 과정 누가기록 및 구체적 평가 기술을 통한 성장 및 이력 관리 강화
5)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또래활동 활성화) 지원(특수학교 11교, 40,000천원 지원)
- 학생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 집중 지원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 및 재택 순회교육 운영
2) 자료제작 및 구입, 여비, 운영비 지원 등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

1) 특수교육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분야 진로직업교육 지원
2) 고교 특수학급 연합 '빛솔합창단', 보명학교 '소리나무합창단' 등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 학생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구축(심리안정실 등)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나)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운영(특 2교)

-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원(225,620천원)

3)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강화

가) 병원학교 2학급(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운영

나) 병원학교별 정규 특수교사 1명 배치

다) 병원학교별 건강장애담당교원 연수회 실시 및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건강장애이해 증진

라) 병원학교별 학교복귀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1:1 맞춤형 찾아가는 학교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4)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꿈사랑학교, 스쿨포유) 운영

나) 교과 선택권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제공 등 교육내용 다양화

다)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시 선교육지원 등 교육 공백 최소화

라) 스쿨포유 초등과정(1,4학년) 화상강의 전담교사 2명 배치·운영(대구특수교육원 내 위치)

5) 행동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가) 대구특수교육원-대학,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연계 가족상담(30가족)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돌봄·방과후 활동 내실화를 위한 지원 확대

가)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2명)·늘봄교무행정실무사(9명) 배치

2) 특수학교(급) 늘봄학교 운영 지원

가) 초1~2학년 희망 학생 대상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나) 초등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자원봉사인력)

아.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지원

가) 인력 지원 현황: 총 858명(실무원 581명, 사회복무요원 277명)

나)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신규채용: 3개월 이내 직무연수 연 30시간 이상(사회복무요원은 16시간 이상)
- 기존인력: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 직무연수 연 15시간 이상
- 자체연수 강화: 지원 대상학생 맞춤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2) 치료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치료지원비 지원(월 16만원)
 나) 치료지원 서비스 영역 세분화(우리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맞춤)를 통해 선택권 확대
3)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및 기타 편의시설 지속설치로 Barrier Free 구축
 다) 특수학교(급) 리노베이션을 통한 교실환경 개선

자.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
 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지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교기업, 거점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구)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나)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직업평가 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등 직업평가 협업
 다) '학교 내 장애학생일자리' 사업 내실화
 - 5개 공립특수학교, 특수교육원 및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취업 전 직장 적응훈련, 사회 적응훈련 강화, 추후 사업체 취업으로 연계
2)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실기 직무연수과정 개설(하계 방학 중, 7개 과정 예정)
3) 대구특수교육원-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운영 활성화
 가) 진로직업 및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대상
 - 진로직업 11과정, 특수체육 2과정 운영
 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양성과정 대상자 모집 및 취업 지원
4)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학교기업 '성산' 운영(특 5교 연합)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1교)
 다) 진로직업교육 업무 전담교사 배치
 - 진로전담교사 및 현장실습전담교사 특수학교당 1명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나. 대학 입학 정보 제공을 통한 진로 선택 지원 및 대학 진학 후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대학 입학 설명회(7월 예정)

- 대구·경북권 대학 참여
- 대학별 입시 요강,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지원제도 안내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

2) 사립유치원 배치(3인 기준)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나.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2)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교형 특수학급 확대 추진

다.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전문성 제고

1)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추가 배치

2) 특수교육교원 전문학습공동체, 연구회, 수업지원단 운영 강화

3)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계속 배치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통합교육 실시

2)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연계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특수교육 직무연수 지속 추진

2)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간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활성화

다.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운영 확대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생 교육적 요구에 기반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속 운영

3)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모델 연구 지속 추진

다. 학생 성장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1)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 자료 제작 등 지속 추진

2)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중점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격차 완화 및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 지속 운영

라.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대구특수교육원 중심 체험교육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 전공과 교사, 진로전담 교사, 현장실습전담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현장실습 강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및 참여 대학 확대

나. 장애학생 대학 입학 설명회 지속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1. 기본 방향

가.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특수학교 설립〔공약 2-34〕

1) 특수학교(급) 신·증설: 수시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정기 특수학급 계획 수립
2)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3) 공립특수학교 신설

나. 꿈·도전·성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공약2-45〕

1) 대학형 전공과* 운영으로 직업교육 확대

* 대학형 전공과: 전문대학의 인프라 및 인력을 활용한 전공과 교육과정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전문화와 취업 경로 다양화를 위한 대학형 전공과 운영

2) 장애학생 진로·취업 컨설팅단 운영

가) 진로진학상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진로·취업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나)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컨설팅(온·오프라인)
다) 특수교사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취업·복지 연수 운영

3) 특수교육대상학생 글로벌 동행 국제교류

가)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교사의 사제동행 국제교류
나) 진로직업 탐색 및 글로벌 소통 중심 교류 추진

다.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1) 특수교육 교육과정지원단 구성 및 운영
2) 장애학생 미래교육 역량 강화

가) 특수교사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연수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읽걷쓰 아이(AI)' 수업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3) 교육공무직 역량 강화 연수

4)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교(원) 관리자 대상 특수(통합) 교육 연수 운영

라. 통합교육 운영 지원

1) 일상적 장애 공감 문화 정착
 가) '학교 장애인식 검사' 교육자료 개발 및 전국 보급
 나)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고)
 다) 장애인식개선 장애공감문화 공연 운영
2)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가)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나)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평가 및 치료비 지원
3) 통합교육 지원
 가) 초·중·고 통합교육 교육활동 협력교원 배치 운영(20교)
 나) 통합교육 활성화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통합교육 중심학교' 운영
 다) '통합교육지원단' 및 운영(특수교육지원센터 6개단)

마. 특수교육 운영 지원

1) 중도·중복장애거점센터 운영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학급 대상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협력
 (특별건강관리, 의료인력 간호사 지원)
 나) 중도·중복장애학급 재활복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다)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사 및 지원인력 교육·치료 컨설팅 수시 지원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가) 장애학생 예술인제 프로그램 운영(오케스트라, 합창, 댄스, 미술)
 나) 고등학교 특수학급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라) 특수학교 장애학생체육활동 지원
 마) 통합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바. 장애학생 교육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의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2) 특수학교(급) 종일반 운영

3) 장애학생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 전문직업인 양성 특화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2)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및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3) 직업교육 거점학교(급) 및 거점센터(1센터) 운영

4)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5) 장애학생 취업직무교육 운영

6)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7)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역량 강화

가) 「교육에서 고용까지」 지역사회 연계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확대

나) 진로직업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아. 장애학생 인권·정서행동 지원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2) 발달장애학생 정서행동 지원

가) 행동 중재 전문가 양성

나) 공·사립 특수학교 정서·행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다) 행동중재지원단(교육(지원)청별) 구성 및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위기 행동 관리·대응

3) 행동중재전문관 운영

4) 특수학교(급) 정서행동 공간 구축

5) 특수교원 및 지원인력, 보호자 대상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6개 센터)

2)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건강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하대 병원학교 운영(협력학교: 인천연일학교)

다)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스쿨포유) 지원

차.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 학급 운영 : 5개 학급 11명

나)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재배정 : 5개 센터 50,000천원

다) 통합교육 중심 유치원 선정: 5개원

라)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마)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지원 강화 추진계획 수립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 1회 22명

나) 진단·평가 매뉴얼 제작 보급: 1회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2개, 20명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가) 특수학급 신증설: 117학급(유 5, 초 60, 중 34, 고 13, 특수학교 5)

나) 특수학급 노후화 환경개선: 46교(유 3, 초 20, 중 6, 고 9, 특수학교 8)

다) 대학형 전공과 학급 운영: 2교 8학급(인천청인학교, 인천연일학교)

2) 인천형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19교 27학급

3) 예술특화직업교육 운영: 9교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향상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지원단 역량 강화 직무연수: 25명

나)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 연수: 인천 11명, 전국 300명
다) 교사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과정 수: 33
라)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과정 연수: 20명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역량강화 연수: 60명
바) 진로직업 역량 강화 연수: 160명
2) 특수교육교원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113개, 1,080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6개단 구성
나)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 협력 교수팀 운영: 6개팀
2) 「학교장애인식 검사」 현장 적용
가) 국립특수교육원 서버 이관 및 교육자료 배부
나) 시도교육청 정다운학교 및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정다운 학교 운영: 2교(운서초등학교, 선인중학교)
2) 통합교육 중심 학교 운영: 23교(유 5개원, 초 8교, 중 3교, 고 7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나) 장애 인식 개선 학생 동아리 운영: 10교(고 10)
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운영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학교 찾아가는 장애 공감 문화 공연: 37교(고 37)
나)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전직원 대상 장애 공감 문화 연수 실시
다) 공사립 유치원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장애 공감 연수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인권지원단 구성: 6개단 87명

나)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75교(유 3, 초 21, 중 13, 고 33, 특수학교 8)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강화

3)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컨설팅

나.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지원 확대

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수업 지원: 90교 97명, 주 1~5회(학생별 맞춤형 순회교육)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일반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30교

2) 특수학교 전문직업인양성 예술체육특화과정 지원: 9교, 1,535명

3) 특수학교 장애학생체육활동: 9교, 1,492명

4)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인재 프로그램 운영: 41교, 66명

라.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인천형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운영: 19교 27학급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재활복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20교, 27학급)

다)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안내

라) 자세유지 및 보조기기 이용 컨설팅 실시: 4개 병원, 1기관 연계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치료(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교육청-5개 연계 구성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전문 보조인력(간호사): 12교 24명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지원: 12교 22명, 병원 1기관 연계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청각장애학생 대상 원격문자통역 지원: 고 1교(1명)

나) 청각장애 통합교육 컨설팅 실시: 4교(유2, 초1, 고1)

다) 통합학급 대상 청각장애 이해교육: 28교(유4, 초21, 중3)

라) 통합학급 대상 수어교육: 4교(초4)

마) 청각장애학생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여: 3교(초2, 중1)

바) 시각장애학생 점자교육 및 보행지도: 2교 2명

사) 시각장애학생 심리상담 및 진로컨설팅: 8교 8명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인하대학교 병원학교 1학급

나) 원격수업 지원: 스쿨포유 초·중·고 118명(요보호 포함 153명)

다) 전문인력: 병원학교 파견 특수교사 1명, 초등 원격수업 특수교사 3명

라) 건강장애 담당교사·담임교사 대상 업무지원 및 수시 상담

마)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1개 프로그램, 8교 32명

5)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6개단 121명

나) 행동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대상자 선정: 20명(일반 10명, 특수 10명)

다) 학생 대상 개별 심리상담·미술·운동 지원 예정

라) 학부모 대상 행동중재 컨설팅 실시

마) 교사 대상 행동중재 컨설팅: 20명

바)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공간 구축: 27교(특수학교 5교, 일반학교 22교)

마.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동봄 및 방과후교육 운영 지원: 6개 센터, 235백만원

나)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7,121명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가) 유치원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79개원 126학급

나) 초등학교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5교 5학급

다)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9교 32학급

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공사립 학교 767명
나)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계획 수립 안내(3월)
다)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1,013명
라) 초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260명
마) 유치원 종일반 참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97명

2) 치료지원 내실화
가)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6,245명
나) 치료지원 가맹점 모니터링: 치료지원 내용, 기록 관리 등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치료지원: 언어치료 80명, 작업치료 9명

3)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가) 장애학생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160회
나)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대여 플랫폼 구축: 인천시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48대, 1,199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557명(261교)

사.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 운영: 10교
2) 특수학교 재난대응교육 실시: 10교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현장 점검: 1회, 10교

아.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마을연계 직업교육 운영: 미추홀학교 1교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3교
다)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8교 42학급
라) 대학형 전공과 운영: 재능대학교 4개 학과, 1~2학년 40명
인하공업전문대학 1개 학과, 1~2학년 40명

2) 진로직업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가) 장애학생「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운영: 17교 45명
나) 직업교육 거점 「찾아가는 직업준비 프로그램」운영: 31교 439명
다) 특수학급 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팅 운영: 중학교 57교, 고등학교 30교

3)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산업체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25교 153명

나) 발달장애훈련센터 연계「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40교 388명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어린이집 재원 5세 장애유아 진단평가비 지원: 1인당 250천원내 실비지원

2) 어린이집 재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월 160천원내 실비지원

3) 장애영유아 담당교원 대상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실시

4) 특수교육대상유아-교사-학부모를 위한 이음교육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

2)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희망 조사

2) 학기 중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수시 지원

3) 교육청 주도의 차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추진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통합학급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레벨 UP! 통합교육' 실시

2)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역량 강화 연수 실시

3) 특수교사 소진 방지 및 마음 챙김 연수 실시

4) 긍정적 행동 지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5)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진학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6) 특수(통합)교사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예정

7) 중도중복장애학생 응급상황 대처 방법 연수 실시

8) 특수교육교원 디지털 교육 혁신 연수

9) 2022 개정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 실시

10) 특수교사 진로직업 역량강화 연수 실시

11) 특수교육 교육과정지원단 연수 실시
12) 통합교육지원단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13) 특수교육대상학생 AI·디지털교육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14) 특수-통합교육 협력교수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15) 통합교육 교육활동 협력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
16)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학생·학부모·교사의 통합교육지원 요구 수렴 및 지원 형태 다양화
2)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사례 나눔
3) 학교 장애인식 검사 서버 이관 및 교육자료 보급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정다운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2) 통합교육 중심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유·초·중 통합학급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2)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강화
2) 학생 맞춤형 순회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이관 실시

나.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재활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및 의료기기 지원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시각장애학생 점자교육, 보행지도

나) 시각장애학생 시기능 평가 및 훈련

다) 시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개별 심리 상담

라) 시각장애학생 진로·직업 컨설팅

마) 시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대여

바) 저시력 노트 제작 및 점자 자료 제작

사) 통합학급 시각장애 이해교육

아) 청각장애 학생 교과수업 원격 문자 통역 지원

자) 청각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지원 및 대여

차) 청각장애 통합교육 컨설팅 및「찾아가는 청각장애 이해교육」 실시

카) 통합학급 대상 찾아가는 수어교육

3) 행동중재 지원

가) 학생·학부모 대상 개별 심리상담 지원

나) 개별 학생 행동중재 사례 관리

다) 행동중재전문관 위기학생 집중사례 관리

라)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대상 행동중재 컨설팅

마) 특수학급 장애학생 정서·행동지원 공간 조성 사업 지원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대학형 전공과 입시 설명회 운영

2)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지원

3)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찾아가는 진로취업 컨설팅 운영

5) 진로 소식지 'My job' 발행

광주광역시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방향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구분	세부 추진 내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2.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3.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4.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3-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3-4. 순회교육 지원 강화 3-5.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3-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3-7.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3-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3-9.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3-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3-1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등 적극 홍보
-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보급
- 특수교육 안내자료(리플릿, 포스터 각 1종) 개발·보급: 6월, 보건소, 주민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배포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영아학급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및 조기 지원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및 프로그램 보급

라)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확대 및 운영 내실화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가)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이음교육 지원

나)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 시) 상담 제공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다)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2)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담인력 확충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다)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수요자 중심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로 특성화하고 전문적 교육 지원 강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배치 유형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총 계
	유	초	중	고	소계	공립	사립	소계	
신설	1	2	3	2	8	-	-	-	11
증설	-	1	4	1	6	17	13	30	26

나)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다) 신설 특수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우선 설치 계획 수립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가)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등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나)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우선 배치 및 전보 유예 방안 마련

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원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점자, 수어 등 특수교육 관련 국가 공인 자격취득 지원

나)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다) 특수교육교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라) 장애특성과 통합교육 관련 지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 목록 마련 및 적용

나)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다)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라)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초·중등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 및 연계 프로그램 보급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감, 통합학급 담당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관리자의 특수(통합)교육 관련 연수 연간 3시간 이상 이수

-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특히 순회교육 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통합학급 협력수업' 운영 성과 일반화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교수 등)을 강화하여 통합교육 성과 제고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나) 교과용 도서 연계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발굴·확산
다) 장애 당사자 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권장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장애인의 날(4.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나)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인력풀 구성 및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장애예술인(단체) 초청공연 등) 지원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4)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기반 마련
가)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 실시
나)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예산 편성 및 운영

5)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가) 전문가 콘텐츠 개발과 학생, 교직원 공모전,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
나) 인터넷, 방송, 인쇄물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나) 현장지원 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등 실시

다) 매월 1회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라)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가능

마)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 강화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자기권리인식, 자기보호 등) 함양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다)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보호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라)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직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24)·보급('25)

바) 제46회 장애인의 날 맞이 「2026 장애 인권 주간」 운영: 4.13.~4.24, 교육감 서한문 발송, 현수막 게시, 교육활동 전개, 계기교육 자료 제공, 신문제작 및 보급, 유공자 표창 전수 등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맞춤형 학습 지원 및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AI교육 중심의 활용 환경 구축 및 관련 기기 활용 확산

나) 장애학생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콘텐츠 보급

다)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선도교원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

1)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플랫폼 운영 지원

2)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가) 체험·실습 중심의 SW·AI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 및 방학 중 장애학생 SW·AI캠프 등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VR·AR 콘텐츠, AI 로봇 등 에듀테크 기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실감형 체험교실' 등 활용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메타버스(가상공간)' 운영 및 '실감형 체험 콘텐츠'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 교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맞춤형·참여형 교육지원 확대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교의 특성 및 여건,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2) (일반학교)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나)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 보급을 통한 교육과정적 통합 지원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 등 실시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5)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구성

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는 학기마다 실시

라)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또는 보호자, 통합학급 교사에게 통보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전학 또는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나) 교육과정과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안내 자료 보급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재택·순회교육 실시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순회교육 실시

다) 순회교육 담당 인력을 활용하여 순회교육의 지원 범위와 내용 결정

라)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가능(건강장애학생 포함)

마)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나)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다)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특수교육대상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향유권 보장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체계적인 건강·체력관리를 위한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건강증진 도모

나) 관계기관(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개발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적극 장려

다) 지역 및 장애 영역별 특색 있는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라) 미래 체육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특기와 역량 발휘를 위한 기회 제공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 확대

나)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특수교육(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관련 직무연수 실시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22.6.)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나)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다) 교사 대상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내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 지원인력 배치·확대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전담팀을 통해 학생 건강·안전에 관련 컨설팅 제공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라) 의료 지원인력을 통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실시

마) 의료 지원인력을 통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실시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학습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 역할 강화

다)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라)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마)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환경 등 교육실태 파악 및 적절한 교육 지원 강화

바) 청각장애특수학교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수어 연수 및 학생 수어 교육 강화(한국수화언어법 제11조)

사) 시청각장애(deaf-blind) 학생 평가지원 자료집 현장 활용 지원(′24., 광주광역시교육청 개발)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

- 학마을 병원학교 1학급 운영
- 병원학교 위탁 운영: 여미사랑 병원학교(화순), 느티나무 병원학교(나주)

나) 건강장애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 방안 마련 및 위탁교육의 경우 개학 이전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여부 통보

다) 병원학교 학생 등을 위한 대학생 보조강사 및 전문상담 지원

5) 행동중재 지원

가)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에 대해 체계적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전문가 연계 강화 및 지원 환경 조성 확대

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교원, 학부모의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대학 연계 실습중심) 및 프로그램 운영

다)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강화

사. 특수교육대상자 늘봄·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늘봄·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가) 초등 늘봄학교 지원('26. 초1~2학년)에 따라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현장지원단 구성 및 방문·점검·컨설팅 지원 등)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강화

나)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방학 및 학기별 운영 준비 상황 점검 및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발달 수준과 특성,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 교내·외 우수 자원 발굴·연계 지원 확대

라) 특수학교 늘봄실무사 배치·운영('24.~)에 따른 늘봄실무사 대상 컨설팅 운영으로 늘봄·방과후·돌봄 내실화 추진

마) 늘봄학교 실무 인력 대상 행정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2)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발굴·지원 확대

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환경 구성 및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확대

나) 교육청은 자체 또는 지역 내 자원을 발굴·보급하여 늘봄·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

3) 장애학생 맞춤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늘봄·방과후·돌봄 늘봄지원연구사 및 늘봄실무사 등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이해하고 원활히 지원하도록 지역 여건에 맞춘 교육(연수) 지원 및 정보 제공 추진

나) 방과후·돌봄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관리 체계 구축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활동 보조,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신변처리, 이동 등)할 때 다양한 유형의 인력풀* 운영 및 단위학교 배치·지원

4) 지역사회 늘봄 및 방과후·돌봄기관 연계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교육 활성화 및 돌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연계 확대

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보건복지부)' 등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연계 확대

라) 방학 중에도 장애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및 돌봄사각 지대 방지를 위해 장애학생 방학학교 위탁 운영(10개 기관)

5)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소질·적성을 계발하고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지원

나) 교내강좌 개설 및 위탁, 개별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 범위, 장애학생 지원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교육부) 마련을 통해 지원인력 관리·운영 지원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채용 시, 장애인 학대, 성범죄 등 범죄 이력 조사 등을 통해 자격조건 관리 강화

(3)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주기적 업무평가(근무성적평정 등)를 실시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1)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2)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2) 치료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치료지원 지원 강화

나)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다)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실시

3)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가) 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이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다) 각급학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담당자 교육 및 실태점검 철저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가)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장애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통학 환경 개선(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다) 장애학생 등·하교시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가)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나) 안전 대피 훈련으로 파악한 재난상황별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점검 강화

나)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다) 특수학교(급)의 노후된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라)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지원
마)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특수학교에 간이체육시설, 체육관 등 설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 피해 예방

4) 특수학교 학생 안전 관리 강화
가) 특수학교 학생 생활지도·관리 방안 및 대책 마련

5)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가) 학교보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단지역 악취·소음·먼지 등 피해,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나)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라)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1)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 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2022. 6. 29.)

2)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6기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기관 포함)

3) 장애인 평생교육 통계 기반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실시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나.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생애주기별 전환교육프로그램 장학자료 개발·보급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2)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통학구역(학구) 기준에 따른 학생 배치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권역별 특수교육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2)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추진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교육 담당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참여

2) 통합학교 교(원)장·감의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실시: 3시간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지원 실시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실시

2) 행동중재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특수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연수 실시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2026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특수교원 연수 실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파악 및 순회교육 실시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장애학생 문화체험 활동 운영 및 지원
2) 장애학생 실내악단 구성 및 운영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컨설팅 실시 및 협력 지원
2)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컨설팅 실시
3)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지원
4) 건강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5) '행동지원 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 중재 및 컨설팅 제공

사. 늘봄·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1) 초등학교 늘봄학교 안정적 운영 및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2)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및 지원
3)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카드제 운영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상으로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2)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치료지원비 지원

3)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4)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지원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장애학생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1) 영유아기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부터 장애 진단·등록 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나) 영유아기 발달 촉진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조기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 확대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체계 강화

다)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 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리플릿 제작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이 있는 특수학교(특 4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육지원실 운영(2센터)

나) 유치원 특수학급(59학급) 및 통합유치원(1개 원), 통합교육 거점유치원(2개 원) 운영

다)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치원 특수학급 소속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학적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록 및 관리

라)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과후·돌봄 참여 지원 강화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진학 과정 지원

나.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1) 특수교육대상자 정보 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취소 및 졸업 시까지

2)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가) 특수교육원(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나)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 특수교육원: 특수교사 연수, 진로·직업교육,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유아교육 및 치료지원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3)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총 57명) 및 전담 인력 배치

나) 특수교육원(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운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연구학교 가산점 및 학습 휴가, 연수 지원 등 제공)

4)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상담 제공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다) 진단·평가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특수학교(급) 확충

1) 특수학교 신·증설

가) 과밀학급 축소를 위한 특수학교 학급 증설(6학급)

나) 지역별 불균형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1교)

-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가칭서남학교, '29. 3. 개교 예정)

2) 특수학급 신·증설 및 다양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6학급)

나) 교육·치료·돌봄 병행을 위해 재활병원* 내 학급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6학급), 대전웰니스병원(1학급), 대전보람요양병원(1학급)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 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공간 부족 등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이 불가능하여 설치 기준 초과 학급에 협력교사* 추가 배치* 일반학교(유 3개원, 초 3교), 통합교육지원실(3센터)

나)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급) 운영*을 위해 특수교육교원 배치 확대

* 전일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파견학급 배치기준: 학생 4명, 교사 2명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교원 중 보직교사 증치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특수교육 교사학습공동체 공모·운영(8팀, 68명)
-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교사 연구회(7팀, 74명)
- 통합교육 교사 연구회(6팀, 53명)

나) 특수교사, 일반교사 대상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4~11월)
다) 신규(저경력) 특수교사 직무연수(3~4월)
라)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실행가 과정 직무연수(2~12월)
마) 장애학생 실생활 속 범죄예방 연수(5월)
바) 보완대체 의사소통 역량 강화 연수(7월)
사)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 교육과정, 심폐소생술(2월, 6월, 8월)
아) 특수학교(급) 미디어교육 교사 연수(7~8월)
자) 직업교육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 1기, 2기(4월, 11월)

3)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 특수교사 마음 챙김 연수 1기(5~6월), 2기 (10~11월)

4) 현장 지원 중심 특수교육 맞춤형 장학 자료 개발(2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장애유아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2개 원)
나) 거점형 통합교육지원실 운영(3센터), 통합교육지원단 운영(3팀)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
가) 학생 및 교원의 장애 인식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장애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통합교육 실시학교 대상 '학교 장애인식 검사'적용 확대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유치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운영
- (관리자) 통합학교 교(원)장, 교(원)감 특수교육 이해 연수 이수(9월, 3시간)
- (통합학급 교사) 원격직무연수(3기관, 8개 과정, 특수·일반교사 590명)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가) 정다운 유치원(유2개원), 정다운 학교(초3교), 정다운 교실(중4학급)
나) 일반·특수교사가 함께하는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6팀)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1팀)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학교(급) 방문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나) 특수교육수련체험관 방문 '찾아오는 장애공감교실' 운영(행복동행버스 이용)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운영 확대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학생동아리 운영

4) 장애인식개선 홍보(연중) 및 특수교육 이해 라디오 캠페인(5~6월, 150회)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3팀)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

다) 매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 지원 및 특별지원) 결과 보고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 동아리 운영(5교), 인권동아리 운영 사례발표회(12월)

나)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대전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일부개정 고시('26.5.)

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고시 외 과목 개설 안내(5월)

다)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나이스 교무업무 기능 개선사항 활용, 장애학생 평가조정, 통합교육 운영 등 안내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18명)

3)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5월)

나)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교사연구회 운영(7팀)

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특 3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수립

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법적 요건 이행 및 보호자 참여 보장 안내(3월, 8월)

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원) 대상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점검(12월)

다) 특수교육원(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관리

다.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대상 선정 및 지원

가) 일반학교 순회학급(12학급), 병원학교(1학급), 병원파견학급(8학급)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가정·병원·복지시설 방문 순회교육 지원(주 3회 이내)

다) 순회교육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2)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및 담당교사 연수 및 복무 관리 지도

3) 특수학교(급) 교사의 연가, 병가, 특별휴가 및 출장 시 수업 지원

라. 장애 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61명)

나)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노력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병원 소속 간호사가 학교 방문 및 교육활동 시간에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가래 흡인, 경관영양 등 개별 맞춤형 의료적 지원(3교)

나) 기관 연계 특수교사·물리치료사가 학생 운동 발달 프로그램 운영(특 1교)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지원 사항 포함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거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1센터)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단평가 지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나)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통합학급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장애이해교육 운영
- 찾아오는 시각장애이해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중학교 청각장애학생 실시간 원격 문자 통역 지원
- 시·청각장애학생 담당교사 및 보호자 교육 운영, 보조공학기기 지원

다)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시각장애학생 대상 시기능, 점자, 보행 수업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 청각장애학생 대상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소아암 병동 내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교원 배치(충남대학교병원, 1명)

나)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협력학교: 대전대신초)

다) 초등학교 과정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화상수업 운영(초등교사 1명)

라) 원격수업 운영 위탁기관 연계 교육 지원(스쿨포유 48명, 꿈사랑학교 3명)

마)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4월)

5)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전문가 연계 강화 및 지원 환경 조성
- 특수교육원(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3개 기관)
- 학교 내 행동중재지원팀 구성 및 행동중재지원계획 수립·운영(특 6교)

나) 특수교사 및 통합교사의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
- 기초이론(2. 9.~13., 31시간), 심화이론(8. 10.~14., 32시간)
- 실습Ⅰ(개별 실습 계획, 42시간), 실습Ⅱ(행동분석전문가(KBA) 코칭, 28시간), 실습Ⅲ(슈퍼바이저(BCBA) 지도, 12시간)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하여 특수교육실무사 지원(586명)

나) 인권보호,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지원 방법, 복무규정 등 연수*(2회)

* (기간)하계 7.28.(화)~30.(목), 동계 '27.1.26.(화)~28.(목) (형태) 집합 및 원격연수

2)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226명)

가)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나) 장애학생 활동 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운영(방학 중)

3) 기숙사 생활지도원, 수어통역사,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가) 대전맹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배치

나) 수어통역사 운영을 통한 청각장애학생 맞춤 지원

다)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대학 연계 교육봉사 운영(16교)

4) 치료지원 내실화

가)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운영 약정 체결

나) 신규 치료지원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사전 점검(1회)

다)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협력병원 심층 평가 및 진단·평가팀 운영(매월)

라) 사설 치료지원 제공기관 운영 실태 정기 현장 점검

5)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가)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통합시스템* 운영(1개 원, 3센터)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유한 기기를 특수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일괄 대여

나) 시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운영(1회)

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등 편의 지원

바.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운영 지원

가) 재난 대응 조력자 지정 제도(Buddy System) 운영

나) 학교 내 비상(호출)벨 설치·활용으로 위기관리 대응 능력 강화

2) 등·하교 안전 계획 및 교출(가출) 대비 계획 수립·운영 지원

가)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보호 인력 배치 및 통학 환경개선

나) 노후 통학버스 교체 및 차량 증차(특 1교, 1대)

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

4)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5)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진로역량 개발 지원

1)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특수교육원 기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강화(진로중심교사 15명)

다)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및 체계적 관리

2)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개별화교육계획에 학생의 진학 및 성인생활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계획 포함
나) 현장실습의 활동유형, 절차, 범위, 시간 등을 학칙에 정하여 수업으로 인정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
4) 전공과 운영 및 내실화
5)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대전혜광, 대전해든, 대전원명, 대전맹 4교)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체계 강화
가)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나)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전문인력 배치(취업지원관 3명)
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교육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연 2회)
3) 지역 내 참여 일자리 확대
4)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학생보호 및 진로 직업교육 운영
나) 현장실습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정부(공공기관) 장애인일자리사업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선 참여

다.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2)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 활용
3)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및 활용 지원
4) KT IT 서포터즈단 연계 ITQ 자격취득 지원

라. 문화예술·체육 활동 내실화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운영교 공모 30교)
2)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 음악회' 운영(4월)
3)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연계 통합형 '친구사랑 해양캠프' 운영(6월)
4) 끼발한 밴드 모집·운영 및 끼발한 발표회 개최 운영
5)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 교원 연수 강화

마. 초등 방과후·돌봄 및 유·중등 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1) 초등 방과후·돌봄 연차별 확대에 따른 지원 강화
2) 특수학교 초등 방과후·돌봄 및 유·중등 방과후·돌봄 운영

-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추가 배치·운영(2명→3명)

3)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학급 운영(53학급)

4)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방학 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5) 개별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전자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운영('26. 1.~)

6) 방과후활동서비스 연계 지원(보건복지부 주관)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을 위한 홍보 및 담당교사 연수

나. 특수교육원 부속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 운영

다. 서남부 특수학교 설립 추진 중,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통합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이해 연수(9. 21.~22), 통합학급 담임교사 원격연수(연중)

나. 모든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결과 조사(12월)

다. 통합교육 성과공유회(12월)

3. 개인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특수교육 AI·디지털 플랫폼 구축(중학교 과정) 및 성과공유회(12월)

나.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점검(12월)

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연수(7월, '27. 1월, 대면·비대면)

라.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및 운영 사례 나눔 성과보고회(12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방과후·돌봄 지원인력(강사,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연수(8월)

나. 특수학교 전공과 선발평가(10~11월)

다. '2026 꿈끼팡팡! 끼발한 발표회' 개최(11월)

울산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교육비전: 모두를 위한 통합의 울산 특수교육

2. 교육목표

가. 촘촘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 실현

다. 특수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탄탄한 교육환경 조성

3. 추진방향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라.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4.주요내용

■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 센터 운영강화 ■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 협력기반통합 교육여건조성 ■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역량 강화 ■ 일상적장애 공감문화정착 ■ 장애학생 인권지원강화	■ 순회교육지원 강화 ■ 문화예술체육 활동지원강화 ■ 장애특성별 맞춤형지원강화 ■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강화	■ 지역사회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고등교육 기회확대 ■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2) 특수교육대상영아 지원강화

가) 영아의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6명

3)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강화

가) 의무교육비 지원: 공립 월30천원 이내, 사립 월100천원 이내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지원(특수학급 미설치교 등)

다) 특수교육실무사 및 지원인력 배치: 실무사 39명, 사회복무요원 19명

라)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운영시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4)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3팀

나)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확충 및 활용 지원 강화

다) 2026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실시: '26. 6~8.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설치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명	상담전화	역 할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55-6601	센터운영·통합교육·장애이해교육 총괄, 특수학교 및고등학교 특수교육 지원
울산강북 특수교육지원센터	219-5790	강북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울산강남 특수교육지원센터	227-6604	강남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2) 시설 현황

구 분	사무실	진단 평가실	치료실		직업교육실		연수실	학부모 실	조기 교육실	기타	계
			센터내	거점	센터내	거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	6	·	2	·	·	6	16
울산강북 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8	·	·	1	1	·	·	12
울산강남 특수교육지원센터	2	1	4	3	1	·	1	1	1	2	16

3) 인력 배치

구 분	장학관	장학사	순회 교사	직업 재활사	치료사			행정 일반	기타	계
					언어	감각	심리 상담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	2	9	1	2	2	1	2	1	21
울산강북 특수교육지원센터	·	1	19	·	7	6	2	1	1	37
울산강남 특수교육지원센터	·	1	16	·	7	6	2	1		33
계	**1**	**4**	**44**	**1**	**38**			**4**	**2**	**91**

라.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1) 특수학교(급) 신설: 12학급(유4, 초5, 중3)

2) 특수학교(급) 증설: 15학급(유1, 초5, 중5, 고1, 특수학교3)

3) 특수학급 설치 현황: 80.7%(설치학교: 247교/ 전체학교: 306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38	46	115	197	57	83	37	56	247	382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가)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나)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및 학급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다) 장애학생 행동문재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과정 연수 실시

2)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가) 교육청, 학교 단위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나) 교사 간 정보와 자료 공유, 연구 등 자율적 수업연구회 운영지원
3)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승진가산점 등)
4) 특수교육교원 연수기회 확대: 국립특수교육원, 울산교육연수원 등
5) 교원치유센터 연계운영, 산림복지프로그램 활용연수 등 마음회복 연수운영

바.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1) 학교 및 교사 수요자 지원 중심의 컨설팅 실시
2) 특수교육 밎춤형 컨설팅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 및 운영: 연중, 3팀, 필요시 수시 현장 컨설팅 지원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지원
2)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통합교육 중점학교「정다운학교」운영
 가)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1교 운영
 나) 통합교육 선도학교 정다운학교 19교 운영
 다)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원교사 배치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내실화
 가)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건강장애지원, 시·청각 거점운영
 나)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영·유아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집합연수: 2회
 나)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이수 권장
2)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통합학급당 연 15만원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3)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운영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1) 특수학교(급)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기별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가) 특수학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기기 확충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나) 장애학생의 정보화 교육 장소 제공(교육정보실, 여가문화체험실)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가) 학생참여형 수업, 교내외 진로체험 자원등을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

3)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가)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나)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다.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구분	자격 구분			소속
	유치원	초등	중등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2	7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8	8	3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7	7	2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2) 특수학교 체육 교기 운영

학교명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종목	볼링	역도	육상	수영, 역도, 스키

3) 전문직업인양성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6개 위탁운영

4)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특수학교 4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2)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안정적 학교복귀를 위한 원격수업 제공

나) 원격수업 지원: 스쿨포유(20명), 꿈사랑학교 위탁운영(17명)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시·청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청기, 송수신기 등 지원

나) 시각대체교과서 지원

4)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연중, 3팀

나) 특수학교 행동중재전담교사 배치(4교 10명)

5)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가) 유치원특수방과후과정 편성 운영: 39학급 135명

나) 초등 늘봄학교 운영: 늘봄학교 확대시행에 따른 현장 방문·컨설팅 지원

다) 특수학교 방학 프로그램 운영지원

라)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개인별 방과후교육 수강(1인 월12만원 이내지원)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치료지원 내실화 및 심리상담 지원 강화

가) 학교재활지원: 재활사가 해당학교에서 주2회 재활지원

나)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월 16만원 이내 전자카드 결제

다) 심리상담 지원: 1인 10회기,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및 그룹지원

2)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시스템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현황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종류		보유현황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	10종97개
	청각장애	11종58개
	지체장애	105종140개
	의사소통장애	10종10개
진단평가 도구		36종42개
시각장애이해 교육용 교구		8종 78개
청각장애이해 교육용 교구		1종 2개
스마트러닝 기기		태블릿PC 112대 노트북 31대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종류		보유현황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	9종 23개
	지체장애	74종 108개
	청각장애	5종 5개
	의사소통장애	7종 19개
진단·평가 도구		18종 241개
교재·교구		19종 3,163개
도서		7종 2,552개
직업훈련교구		1종 9개
성교육자료		1종 57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 12개
신체운동활동자료		14종 26개
컴퓨터활용 CD자료		76종 157개
기타		4종 16개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종류		보유현황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	4종/25개
	지체장애	6종/20개
	청각장애	1종/1개
	의사소통장애	7종/7개
진단·평가 도구		7종/31개
교재·교구		5종/277개
도서		24종/844권
직업훈련교구		6개
성교육자료		1종/11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36개
신체운동활동자료		9종/22개
컴퓨터활용 CD자료		1개

3)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학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계
2026년	448	20	254	722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 신규채용자(30시간 이상), 기존인력(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

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신규배치 사회복무요원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 기존 사회복무요원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직무교육 실시

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가) 장애학생 안전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26년도 예산확보

5)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나) 특수교육대상자 차량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6)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및 학교주변 통학환경 개선

나) 재난대응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다) 학교별 재난상황별 취약요인 분석 후 학교단위 재난 대응 메뉴얼 정비

4.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 직업교육 다양화

1)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 지원

- 대상: 중, 고 특수학급
- 내용: 제과제빵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운영 지원
- 방법: 지원센터 및 거점학교 직업교육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활용

나)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 내용: 직업교육·현장체험활동 지원인력 여비, 교육 운영비 등 지원
- 지원액: 특수학교 전공과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급당 2,000천원(80학급)

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가) 울산혜인학교(2011년 선정) 학교기업 설치·운영

나)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업체)와 협약, 연계운영

3)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교육청카페 '청마실' 운영

- 대상: 전공과 학생
- 내용: 카페 '청마실' 실습을 통한 바리스타 등 서비스업 현장실습

나)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장 운영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일반사업장 일자리 현장실습

4) 장애학생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

가) 지원고용 사업을 통한 장애학생의 실질적 취업 기회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사후지도 강화

5) 특수학교 장애극복활동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나) 프로그램 내용: 현장학습, 건강증진프로그램, 타지역 견학활동 등

나. 고등교육 기회 확대

1)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체험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가)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대학생활체험 운영(2회, 46명)

나) 대학진학설명회 운영(6. 14.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총 101명 참석)

다. 장애 성인 평생교육 지원

1)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초·중등교육 지원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영아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을 위한 관련정보 지속 홍보

2)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진단비 지속 안내

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강화

나.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1) 울산특수교육원 설립추진: TF팀 운영, 세부추진계획 관련부서 협조

2)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추진: TF팀 운영, 세부추진계획 관련부서 협조

다.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실시('26. 7.~12.)

2) 특수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을 통한 자율장학 지속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통합교육 중점학교 컨설팅 지원

2) 통합교육 연구학교 성과 공유회('26. 12.)

3)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통합교육지원단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속 지원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7개 프로그램, 32교 45회 지원

2)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공모전 개최('26. 6.~7.)

3)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작품 온·오프라인전시회 개최('26. 10.)

다. 장애학생 인권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속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지원

2) 긍정적행동지원팀 지속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 관련 컨설팅 제공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2026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

나.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1)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서 수립안내 및 자체점검 결과제출: '26. 10.

2)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지원

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2026년 특수교육대상학생 미술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치료, 심리상담, 지원인력, 통학비 등)

1) 치료지원 내실화 및 심리상담 지원 강화

가)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상시 신청(월 16만원 이내 전자카드 결재)

나) 치료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26. 8.)

2)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 '26. 5.~10. 5회기 운영

나) 청각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 '26. 5.~10. 5회기 운영

4.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다양한 현장실습 및 직업교육을 위한 사업체 개발

2) 2026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 참여('26. 10)

3) 학부모 대상 자녀의 진로·취업 등 미래진로 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 추진 방향

가. 비전: 특수교육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의 미래 모델 실현

나. 목표

1)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
2) 미래를 열어가는 특수교육 교육환경 조성
3)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 책무성 조성

2. 중점과제

가.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1) 함께돋움교육과정 운영
2) 장애영유아교육지원
3)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나. 특수교육 미래체제 구축

1)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확보
2)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1) 질높은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2) 방과후 교육 및 돌봄 운영
3)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운영

1) 함께돋움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개발 위원 구성

- 유 2명·초 4명·중등 6명·교육청 3명 총 15명 이내로 구성
- 함께돋움교육과정 및 개별화교육지원 계획 수립 컨설팅
- 2026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현장 적용 연수(2월)

나) 문화 예술 체육 중점·진로와 직업 중점 교육과정 운영

-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예산 지원
- 읍면지역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육 강사 지원

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지원단 구성(5명) 운영 및 컨설팅(6월, 특수학교 2교)

라) 문화예술체육중점학교 운영 예술 강사 지원(특수학교 2교)

마) 함께돋움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사 워크숍(12월)

바) 특수교사 공동체 월별 권역별 모임 운영(19권역)

2) 2027학년도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지침 개발

가) 2027학년도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개발 위원단 구성 및 운영

- 유·초·중·고 특수학교(급) 교사 및 관리자로 구성(4월~10월)

나)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총론 2.0 및 2022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반영

다) 2027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시

나. 장애영유아교육 지원

1)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가) 장애영유아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비 지원(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나) 지역사회 기관 협조체제 구축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가)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순회교사(4명) 지원

나) 장애영유아 순회교사 수업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

다) 어린이집 교사 통합교육 연수 운영

- 개별화 교육지원계획(월1회 이상)
- 장애인권 및 문제행동지원

3)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토요 가족지원 프로그램 연계 장애영유아 가족 프로그램

나) 장애영유아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 장애영유아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한 가정당 10회기, 주 1회)

다. 문화예술·체육 중점 및 진로와 직업중점 교육과정 운영

1) 중점학교(문화·예술·체육,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특수학교 2교)

가) 세종이음학교, 세종누리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예산 지원

나) 읍면지역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육 강사 지원

2) 문화예술·체육 중점 지원

다) 문화 예술 중점 역량강화 연수 운영

라) 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방송댄스, 볼링 등 7개 프로그램, 124명)

마)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총 23개 메달 획득(금, 8개, 은 8, 동 7개)

바) 읍면지역 특수학급 찾아가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4월~12월)

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운영(3월~27.2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영유아 통합교육지원 강화

가)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를 함께 통합하여 교육하는 통합유치원 설립 협의체 구성

나) 통합교육 질적 확대 방안을 위한 현장교사 의견수렴

다) 장애 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라)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 운영 지원

2)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단 역할 활성화 방안 마련

- 특수교육대상 학생 포함 시 통합학급 적정 학생수 방안 마련
- 장애영역별 특성에 따른 통합지원 컨설팅 실시

나) 정다운학교 운영 모델 다양화 방안 마련

- 프로그램 중심의 정다운학교 운영(18개교)
- 협력강사 운영을 통한 정다운학교 운영(4월~12월, 4개교)

나.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활성화

1) '학교장애인식지수' 및 연계 프로그램 보급 및 장애인식 수준 추이 분석

2)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활성화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단 운영

나) 학교(급)별 전문가, 특수교사, 일반교사로 구성

다) 통합학급 수업, 장애학생 지도,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 지원

라)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 장애인석개선 교육

다. 특수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근무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대상 특수교육관련 연수 참여

나) 학교과정별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원격연수(15시간 이상) 수강 및 대면연수 강화

다) 통합교육 및 장애공감문화 관련 연수 과정 운영 지원

라) 장애특성별 맞춤형 행동중재 연수 운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질높은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학생 월평균 913명(학생 1인당, 월 16만원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언어 재활 순회 지원(총 55명)

3) 특수교육대상학생 심리적응행동훈련, 직업치료 영역 확대

4)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가) 교육기회 확보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11학급 신증설)

나) 특수학급 신·증설시 환경구성비 지원

다) 법적 정원 초과시 특수학교(급) 신증설 원칙

5)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지원

가) 원거리 특수교육대상학생 월별 통학비 지원(월평균 171명)

나) 읍면지역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 차량지원(5교)

6) 특수교육대상학생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가) 장애 특성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

나)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개별 컨설팅 지원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맞춤형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가) 중증장애인일자리 근로자 대상 보수교육 실시(연 2회)
 나) 찾아가는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중2, 고1, 고3 실시
 다)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일배움과정(8시간) 직업체험(10시간)) 프로그램 운영
2)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및 학교내 일자리
 가)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운영(6명)
 - 보비스쿰(카페), 세종시가족센터, 세종도화(제과제빵)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산업체 연계 현장 실습 기관 발굴
 다) 중증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 지원
 라) 장애인일자리지원단 운영(3~12월)
 마)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7월, 11월 연 2회)
 바) 학교 내 일자리 운영(세종누리학교, 세종이음학교 8명)
3) 장애학생 대학입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 운영(7월)
 나) 대학 진학 설명회 및 대학 체험 사업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중심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가. 질 높은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1) 치료 지원 내실화
 가) 학교로 방문하여 학교 일과 시간 중 언어재활 실시
 나) 이응패스 제도 안내를 통한 통학비 중복지원 최소화
2)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학생 지원 방법 검토
 가) 초등학교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나) 늘봄학교와 기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과의 중복 여부 확인 및 대책 수립
3)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가) 전문상담기관 연계 학부모 개인상담 지원
 나) 장애유형별, 가족별 특성을 반영한 토요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확보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

가)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 상담 제공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가) 임상심리사, 전문상담사, 언어재활사, 취업지원실무사 연수비 지원

나) 순회교사 검사 방법 및 해석 연수 및 중증장애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수 지원

2, 통합교육 질적 지원 강화로 미래특수교육 체계 구축

가.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가) 세종시 관내 특수학급 수요를 고려한 신·증설 추진

나) 법적 정원 초과시 특수학교(급) 신증설 원칙

2)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교육권 보장 체제 구축

가) 세종 제3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실시

나) 세종특수교육원 개원('27년 3월)에 따른 체험공간 구성안 마련

3) 특수학교(급) 꿈마루 교실 지원 확대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일상생활 중심, 진로 중심의 학습 공간 구성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심리안정 환경 구축(4교, 3,600만원)

- 유치원: 무장애 통합놀이공간 구성
- 초등학교: 생활중심 교육공간 구성
- 중·고등학교: 진로흥미탐색 중심 교육 공간 구성

나. 통합교육지원 내실화

1)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가) 영유아 통합교육 확대를 위한 통합유치원 설립 협의체 구성

나) 영유아 통합교육 질적 확대 방안을 위한 현장교사 의견 수렴

2)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단 역할 활성화 방안 마련

나) 정다운학교 운영 모델 다양화 방안 마련(4월~12월, 9개월)

3) 맞춤형 장애이해교실 운영

가) 유·초·중·고 학생 대상 인권교육 포함 장애이해교육 연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찾아가는 장애인예술단 및 장애이해교실 운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1)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내실화

가) 시·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방법 및 교육자료 접근성 교육지원 강화

나) 청각장애학생 소속학교 한국수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수어 연수 및 학생 수어 연수 교육 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

가) 교수, 행동지원전문가, 의사, 장학사, 특수교사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 행동지원단 운영

나) 행동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실시 및 임상실습(5명)

나. 개별성장 맞춤형 늘봄(방과후 및 돌봄) 운영

1)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방과후 및 돌봄 교육지원체계 강화

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1인당 16만원 내 실비 지원, 1,100명 이상)

나)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운영

2) 특수학교(급) 늘봄학교 운영 지원

가) 학기 중 3학년 이하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나) 초등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학교 참여 지원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학교내 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1) 학교내 일자리 운영을 통한 현장실습기회 확대 및 취업 연계 지원

가) 장애학생 학교내 직무 개발을 통한 졸업 후 일자리 창출

나) 장애인고용공단 협조를 통한 직무지도원 사전교육 운영

2)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 성인의 사회 참여 촉진

가) 중증장애인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배치

나) 각급 학교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배치

나. 진로 직업 특화교육과정 및 대학입학지원

1) 특수교육지원센터 찾아가는 직업평가 운영

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를 통한 직업능력 탐색

나) 직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장실습지 발굴

2) 대학 진학 설계를 위한 맞춤형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운영

가) 대학 및 장애 영역별 컨설팅을 통한 정확한 입시정보 제공

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 상담

경기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경기특수교육 실현

정책 방향

- [자율] 수요자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 [균형] 교육약자를 고려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로 모두를 위한 교육 보장
- [미래] 학생의 성공적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체제 구축

4대 추진 전략 · 10개 추진 과제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3개년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3개년 ■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3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지원시스템 내실화 3개년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3개년 ■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체계 강화

가) 영유아 건강검진(생후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 등록 단계까지 맞춤형 조기중재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체계 안내 및 연계 강화 추진

나) 의료 및 관련기관 협의체 구축 및 협업을 통한 특수교육 안내 체계 확대

다) 유보통합 관계기관(부서) 간 협업을 통한 장애영유아 지원 홍보 강화 및 교육-보육기관 간 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

2) 모든 장애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 제공

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교육 제공

나) 영아기 발달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으로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족지원 강화

다)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 강화를 통한 장애영유아의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및 이음교육 지원(장애유아 유초 이음교육 안내 자료 개발 · 보급)

라)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장애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마) 장애영유아 담당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 분야별 자료 제공 및 컨설팅 지원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 설립 확대 및 다양화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감축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 불편 해소

나) 특수학교 설립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및 부지 확보(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폐교 부지 활용 추진)

다)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특수학교 추진 사례】

▲ 안성 모두학교('25. 9. 1.자 개교, 유·초·중)

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학교 및 기관과 특수학교간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운동회, 예술제, 체험학습 등 특수학교 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교류 확대

2)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 우선 증설

나)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설치 추진

다) 복합특수학급 운영,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지원, 순회학급 운영, 의료적 지원 등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특수학급 지원체계 개선

라) 연령별 운영 유치원 특수학급 및 유치원 과밀특수학급 대상 교사 추가 배치로 통합교육 강화

3)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복합특수학급 운영 및 학급당 정원 감축

나) 중도중복장애 지원을 위한 교사 배치 확대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역량 강화

1)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개원

가)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고도화 및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6. 3. 1.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개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 활동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업무 총괄 지원, 행동중재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허브 기능 강화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및 전문적 교육 체제 지원 강화

*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5개, 행동중재지원센터(한서중앙병원) 1개

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중증)장애	북부 시각·청각	건강장애
거점지원센터	수원	용인	성남	구리남양주	의정부

나) 학교 현장의 필요에 따른 분야별*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세분화된 현장 지원 확대

* 행동중재, 인권, 상담, 가족지원, 재활, 수어, 점자, 보조공학기기, 보건·의료 등

다) 학부모 및 비장애 형제(자매) 심리상담 운영 등 가족지원 강화

3)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가) 장애(위험)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 상담 제공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직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연 4회) 강화 및 업무 담당자 간 권역별 협의체 조직 및 우수사례 공유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가) 미래형 디지털 활용 특수학교(급) 교수·학습 모델 개발 사후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 기반 마련
나) AI-에듀테크 활용 선도교원 양성 및 현장 컨설팅 지원 등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을 통한 에듀테크 활용 특수교육 지원
라) 의사소통, 정서안정,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AI기반 지능형 프로그램 기기 활용 확대
2)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 강화
가) 일상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나) 특수교육 플랫폼 활용 디지털 특수교육 지원
3)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복합특수학급의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 경기형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기반 성장 맞춤형 교수학습 모델 운영 및 활용 지원
나) 도교육청(교육지원청), 의료기관, 학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업무 협력을 통한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강화
다)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라) 건강장애학생 등을 위한 원격수업 및 병원학교 운영 지원 확대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 교육 연계 강화
가) 초·중·고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및 도내 진로직업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지원 강화

구 분	관련 기관 및 현황
진로직업 지역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7개소 - 미래형 직업교육실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2개소(파주, 평택) 특수교육지원센터 25청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직업교육 거점 및 중점 운영	- 특수학교 학교기업 6교 -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학교 5교
관계기관 연계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2개소(수원, 의정부)

나) 지역사회 연계 전공과 운영, 진로진학설명회, 취업박람회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다)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협업을 통한 장애인 취업 지원 확대 및 유지 도모
라)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 절차·시기 등 현장실습 개선 방안 안내,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및 현장 점검 강화

2)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나) 특수학교의 학점제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지원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나) 미래 체육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 특기와 역량 발휘 기회 제공 확대

다. 교육과정 내실화 및 평생교육 활성화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 방안 모색
나) 복지·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 실시로 장애학생 안전 강화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2026학년도 적용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초5~6, 29책) 신규 보급, 경기형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지원 모델 개발 자료 공유 등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
나) 특수교육 수석교사 교육과정 지원강화(수석교사 6명)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력강사 지원(특수교육 협력강사 500명)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역단위 활성화 기반 조성

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협력 강화

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다) 장애유형·정도,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

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제고

3.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1)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 구축

가) 행동중재 특화형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환경 구축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집중 지원(한서중앙병원 1개소)

2) 행동중재 실행 역량 강화

가) 학생 현장지원 및 행동분석을 위한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 및 4단계 맞춤형 지원

나) 특수학교(급)별, 지역별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다) 학생별 누적 데이터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로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 지원체계 구축

라) 교육공동체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협의체 구축 등 현장 지원 강화

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1) 특수교육 인력 확대 및 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족을 위한 정규교사 확보 노력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확대(77명 증원)

다)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 성별(남학생 배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특수교육 치료 및 방과후 지원 운영으로 교내방과후, 꿈이든카드(자유수강권) 등 학생 필요에 따라 사용

나) 지역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 평가조정 규정 마련,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조정 시행 등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3)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가)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26. 초3까지)에 따라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지원 강화

나) 수요자 요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발굴·지원 확대

다) 방과후·돌봄 담당인력 및 지원인력 운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장애학생 맞춤 지원 강화

라) 지역사회 방과후·돌봄기관 연계 확대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1)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정책 수립

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통한 교육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지속 운영

- SNS, 배너, 동영상 등 다양한 홍보를 활용하여 공감 문화 확산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 유·초·중·고 모든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저소득가정 학생 등 교육약자를 고려하여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하여 제도화

▲ 정책적 성찰을 통해 모든 교육정책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실현

나) 유·초·중·고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부서 간 협업 강화

2)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과 통합교육 탐구수업 공동체 운영으로 통합교육 현장 역량 강화 및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순회교사 배치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다)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라) 특수교사의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역량 강화 연수 및 특수교사의 개별화교육 기본 소양 및 전문 역량 함양 연수 실시

마)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교사 등 대학생 교육봉사 및 멘토링 역량 강화

3)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가)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적 역할 모형 발굴을 위한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 확대, 교육지원청별 컨설팅 및 협력교사 배치 등 지원 강화

나)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교)를 통한 협력적 수업 설계안 개발·보급

나.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교육 이수 내실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대상 장애이해교육 의무 실시(연 2회 이상)
- 유·초·중·고 학생 및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연 1회 이상)

나) 장애이해교육 시, 특정 장애유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각급학교의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교육 실시

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라) 미래형 장애이해교육 및 학교장애인식 검사 활용을 통한 통합 고도화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강화

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협의체 구축, 정기간담회 실시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다) 생활교육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단위 상담지원, 외부 연수기관, 심리상담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교육환경 조성

라)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원스톱 긴급 현장 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침해 긴급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조직 및 행동중재 지원 확대
- 학생 인권 또는 교권 침해 상황 발생 시,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지역자원 활용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운영

마) 특수교육대상자, 교직원,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활용 안내 및 홍보

Ⅲ 향후 추진 계획

1.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평가 지원

2) 장애영유아 담당 교직원 대상 유·보·초 이음교육 운영 지원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기관 확충

-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맞는 교육시설 확보 노력

(참고) 【경기도 특수학교 설립 계획】

설립 년도	지역명	학교명(가칭)	장애유형	교육과정별 학급 수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2028	여주	〔공립〕 여주특수학교	지적/지체	2	8	4	4	2	20
	시흥	〔공립〕 시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4	30
	수원	〔공립〕 새빛학교	시각	2	6	3	3	6	20
	남양주	〔공립〕 왕숙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4	30
	고양	〔공립〕 고양1특수학교	지적/지체	0	12	9	9	2	32
	포천	〔공립〕 포천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6	6	2	28
2029	양주	〔공립〕 양주1특수학교	지적/지체	0	0	15	13	2	30
2030	부천	〔공립〕 대장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2	34

※ 투자심사 추진 시 장애유형 및 교육과정별 학급 수는 배치계획에 맞추어 변동될 수 있음

2) 특수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학교 수요를 감안한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보 및 기존 지역의 유휴부지(폐교 등)을 활용하여 학교 설립 추진

-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분야별 중점 특수학교(급)(직업교육, 예술, 체육 등), 특성화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 방안 모색

3) 복합특수학급 운영교 확대 및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지원 강화('25년 27교 59학급→ '26년 38교 76학급 운영)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화 및 지원 인력 강화

1)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연계한 특수교육 현장 지원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상·하반기 성과평가 실시

2.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미래형 디지털 활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확산

2) 특수교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에듀테크 역량강화 연수 운영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실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및 전공과 운영 지원자료 개발·보급

다. 특수교육교육과정 내실화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 점검 및 컨설팅,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및 중점 운영교 운영,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 영아학급 교육과정 운영 도움자료,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지원 자료,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 도움자료 및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집 보급

3. 현장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현장 중심 행동중재 지원체계 강화

1) 학교 차원의 행동중재지원시스템 구축 확대 및 지원 강화, 교육지원청 행동중재신속대응팀 활성화

2) 행동중재지원센터 개별학생 집중지원 강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운영

나. 지속 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1) 특수교육지도사 정(현)원 증원 추진 및 직무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실시

2) 사회복무요원 적기 배치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및 대학연계 특수교육 봉사활동 내실화

4.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기반 통합교육 강화

1) 보편적 설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

2) 통합교육 운영 역량강화 연수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자료 발간

나.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장착

1)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교육 운영 강화 및 장애인당사자 전문 강사 활용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운영 내실화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 미래를 열어가는 더 나은 강원특수교육 〉

1. 기본 방향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토대 마련

나. 교육공동체 협력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통합교육 확산

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미래사회로 확장되는 교육 실현

라. 지역사회 기반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2. 추진 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라.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내실화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배치 등 지원

- 장애유아지도사(31명),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18명) 배치 운영

나) 유치원 특수교육 전공 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1명, 원주)

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 선택권 및 학습권 증진을 위한 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연도	2025	2026
유치원 특수학급 수	42	42

라)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실효성 제고 및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상호 간의 협업적 교수체계 구축
-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경포유치원, 속초유치원, 솔향유치원, 원통초병설유치원, 유천초병설유치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장애(위험)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대상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2)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광역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구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	춘천	철원
	원주	횡성
	강릉	평창
	속초양양	고성, 인제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정선
	홍천	양구, 화천

3)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적 지원 강화를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구분	소재지
강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춘천계성학교 소재
강원시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강원명진학교 소재

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체제 다양화

1) 개원일자: 2026년 6월 1일 개원
2) 운영 구분: 본원(춘천), 분원(원주, 강릉)
3) 중점기능: 각 지역 특성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라.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한 과밀학급 축소 및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불편 해소
2) 특수학급 신·증설 환경개선비 지원: 급당 35,000천원
(환경개선비: 25,000천원, 교재·교구비: 10,000천원)

3)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

특수학급 현황	2025년: 432학급 → 2026년: 431학급
특수학교 현황	2025년: 211학급 → 2026년: 216학급

마. 특수학교(급) 노후환경 개선 추진: 24학급 지원(학급 당 25,000천원 이내)

바. 특수학교 다양화 및 특성화

1)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특수학교를 소규모 및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2) 특수학교 재구조화로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추진

구분	학교명	학교형태	비고
1	춘천계성학교	유+초+중학교	기본·공통교육 중점
2	춘천동원학교	고+전공과	직업교육 중점

(※ 2023~2027년 설계 및 공사 → 2027. 9. 1.자 재구조화 완료 예정)

사.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학교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 교사 대상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 운영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운영, 산림복지프로그램을 활용한 마음 건강 회복 연수 운영 등)

3) 특수교육담당 교직원 복지지원비 확보로 교육활동 보장(1인당 30만원 이내 실비 보장)

4)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사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5)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디지털교육혁신더배움공동체」 운영 지원(2팀, 10,000천원), 「통합교육더배움공동체」 운영 지원(2팀, 4,000천원)

6)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특 9교)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 통합교육 인력풀 구성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관계기관, 대학 등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

 * 도교육청 '통합교육자문단',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를 권장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

- 학생 및 교원의 장애 인식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한 체계적인 장애이해교육 실시를 위해, 통합교육 실시학교 대상 '학교 장애인식 검사' 적용 확대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교원의 직무연수·자격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및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나) 교육지원청 주관 장애공감 문화 확산 및 협력적 통합교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원)장 연수 운영

다)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특히 순회교육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2교, 인제중, 철원여고, 4,000천원)
- 유치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업(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교수 등)을 위한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3개원, 솔향유, 속초유, 홍천남산유, 6,000천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계획 반영

나)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제정(2019. 12. 27.)

다) 장애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 편성

- 6학급 이하 600천원, 7학급 이상 1,200천원

라) 장애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운영을 위해 장애학생이 포함된 '장애인식개선교육지원위원회' 구성 권장

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 운영(속초청해학교, 태백라온학교)

바) 인쇄물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가)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나)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장애학생 상담활동 강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나) 정기 및 특별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과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제공, 기타 학교 지원 활동 실시

다)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 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자문위원(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나)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추진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 포함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핵심교원 양성

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실시

4)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가)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 중심의 협의체 구성으로 교사용 자료 개발·보급 및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 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2) 개별화교육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의견수렴 절차 준수(학교별·학년별 개별화교육 관련 부모교육 강화)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재택순회교육,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확대
2)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학생당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3)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학교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20학급 이하(교당 12,000천원), 21학급 이상(교당 15,000천원) 학교운영비(총액배분사업비) 지원
2) 활동 중심의 특수학교 운동실 구축 지원(원주청원학교, 태백라온학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 강화 지원(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동해요양병원 등)
2)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을 위해 교내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 지원인력 배치(특수학교 간호인력 배치: 동해해솔학교 간호인력 1명 배치)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 확보를 위해 병원학급 신설 지원(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병원학급 운영: 춘천동원학교 협력)
4)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의료적 지원 인력(의사, 간호사, 치료지원 등)의 참여와 소견 반영으로 학생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 공유
5)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 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6) 건강장애학생 지원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 교원 배치(강릉아산병원학교 운영)
-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학교복귀 축하케이크, 학교복귀준비꾸러미 등 제공)
-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심리치료비 지원

7) 행동중재 지원
- 도교육청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동중재 집중 지원

8)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희망 학생
- 지원내용: 교내 방과후학교, 위탁형 방과후학교, 방학중 계절학교
- 지원기준: 150천원×12개월, 연 1,800천원(1인 기준)

9) 치료지원 내실화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지원방법: 순회치료사 지원, 치료지원비(마음모아카드) 지원
- 지원기준: 160천원×12개월, 연 1,920천원(1인 기준)
- 지원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10)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지원 및 방과후·돌봄 참여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1,464,000천원)

11) 장애학생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평가 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

12)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 구축으로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 업무 협약(2021. 4. 2.)

바.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늘봄학교 전담체계 구축에 따라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운영
-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배치(강릉오성학교 1명 배치-태백라온학교 겸임)
-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1명 추가 선발 예정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1)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진로체험망) 등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2)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의 내실화(속초청해학교, 태백라온학교)
3)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및 지원으로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의 다각화 촉진(원주 영서고등학교)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의 내실화(연수 지원 및 협의체 운영 등)
5) 장애학생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대상: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공과 재학생
 - 지원내용: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38교, 65,996천원),
 직업 실기 역량 강화 지원(100명, 38,004천원)
6)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도교육청 1단, 교육지원청 17단)
7)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권역	거점지역	전환교육지원센터	역할
영서 북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춘천동원학교	- 특수학교(급)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협력 추진 - 특수학교(급) 교사 연수
영서 남부	원주, 영월, 횡성, 평창, 정선	원주청원학교	
영동 남부	강릉, 태백, 동해, 삼척	강릉오성학교 동해해솔학교	
영동 북부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속초청해학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에 대한 적극 홍보
2)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 시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배치

나.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지역 여건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역량 강화

- 도 단위 및 지역 진단·평가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 분석 등 관련 연수 운영(연 2회 운영)

2.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도교육청 '통합교육자문단', 교육지원청 단위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확대
2)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및 관련 서비스 등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3) 교육과정 조정,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강화
4) 교육지원청 주관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원)장 워크숍 운영
5)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장애인식개선을 목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학생 주도로 기획·운영하는 학생동아리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가.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거점지원센터로 운영 중인 시·청각장애 특수학교 지원 확대

나. 특수교사 대상 행동중재전문가 양성 및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강화

다.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가. 참여대상: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재학생

나. 지원내용: 진로 선택을 위한 대학생활 정보 제공, 대학 전공 체험, 진학 컨설팅 등 대학생활 직·간접적 체험 프로그램 제공

다. 지원대상: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신청학교

라. 운영기간: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충북 특수교육 추진 방향



2. 충북 특수교육 발전 방안

충북특수교육 더더더

비전 더 확장되고, 더 두터우며, 더 깊이있는 모두의 성장을 잇다

- **학교를** 대학 캠퍼스로, **지역대학 연계, 캠퍼스형 전공과**
 -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점인정과 직업교육
- **교실을** 보은 옥천 영동으로, **남부3군 거점 전공과**
 - 일반학교 내 별도의 전용 건물을 갖춘 전국 유일 전공과 특수학급
- **학생을** 더 큰 헤아림으로, **과대과밀 해소와 지원**
 - 과밀학급 기간제교사 추가 배치 및 예산 지원









- **세상속으로, 장애학생 전환교육**
 - 지원, 참여, 연계의 단계형 프로그램
- **배우고 더 배우고, 교육공동체 성장 프로젝트**
 - 특수교육 가족이 함께 손잡고 더불어 성장하는 더 큰 배움

- **두터운 통합, 온통 프로젝트**
 - 일반교사를 통합교육 전문가로
- **똑똑한 행동교육 솔루션, 긍정적 행동지원**
 - 아이의 숨은 마음을 두드리는 두터운 행동지원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 진단평가 전문가 양성 '알음자리' 연수 추진
2) 장애영유아거점센터 운영(1개소, 4회 연수 운영)
3) 유치원 통합교육 운영비 지원(58개 유치원)
4)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신설 6학급, 증설 1학급)
5) 유치원 특수교육 방과후과정 운영(68학급)
6)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실 운영(6센터, 10명)
7) 장애유아 이음교육 운영 도움자료 개발(1종)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계형 '알음자리' 연수 추진(34명 인증)
2) 충북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매뉴얼 준수
3) 거점센터 운영 및 인력배치: 행동중재지원센터(4명), 시청각특성화센터(3명)
4)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처우개선: 승진가산점 및 이동가산점 부여
5) 청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행동지원) 중점 교육지원청 지정(1팀→2팀 체제)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2026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

학교과정 / 학급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합계
신·증설 학급 수	7	15	10	8	1	41

2)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특수교육더더더**

가) 충북교육청-홍덕고-충청대 연계 캠퍼스 융합형 전공과 신설(1학급, 8명)

나) 남부3군(충북산업과학고) 전공과 특수학급 신설 토지매입 완료 및 건축 설계 추진(4학급, 2029년 입학 예정)

다) 특수교육기관 설립유형 다양화 추진(타시도 사례 검토: 3개 교육청)

라) 과밀특수학급 지원(2명 초과 기간제 추가배치, 1명 초과 1000만원 지원)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가) 과밀 특수학급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배치(정원 2명 초과교: 17명)

나) 학기중 특수학급 증설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배치(2교, 2명)

다) 특수교육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특수교육 보직교사 증치(3교, 3명)

라) 통합교육 협력교사 증치(통합교육 시범학교 2교, 2명)

2)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사 생애 단계형 연수 운영: 신규임용(예정) 교사 직무연수 60시간(47명)

나) 특수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특수교육 전문 분야 특강(66명), 교원 수어 역량 강화 연수 24시간(39명),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7개 과정, 특수교육 지원센터 역량 강화 연수 6개 과정

다) 통합교육 실행력 강화 연수 운영: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12개 과정

라) 특수교육 학습공동체: 학교간 학습공동체(15팀), 특수교육연구회(1팀) 및 통합교육연구회(1팀) 운영

마) 2025년 온새미 인증제 운영: 특수교육 전문분야 인증 교원(교육과정, 진단평가, 행동지원, 교실수업 분야 15명 인증) 2026년 장학위원 활용

3)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심리적 소진 예방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교권보호 프로그램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특수교육더더더**

1) 「통합교육 온119」 교직원 메신저 메뉴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2) 통합교육지원단(10센터) 및 유치원 통합교육거점센터(10센터) 운영

3)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 강화 사업(58개 유치원)

4)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정다운학교, 온통프로젝트 운영교)

5) 특수학급·통합교육 운영비 지원: 유·초 450만원, 중 550만원, 고 650만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특수교육더더더**

1) 통합학교 관리자(교장, 원장, 교감, 원감) 집합 연수 4회 운영(670명)

2) 일반교사-특수교사 협력 증진 온통프로젝트 운영(13개 학급)

3) 정다운 학교 확대 및 컨설팅 지원 강화(연구학교 3교, 선도학교 11교)

4) 제2기 통합교육 리더교사 양성(34명)

5) 통합교육 연구학교에 일반학급 수업 지원 통합교육 협력 특수교사 배치(2명)
6) 정다운학교 운영 지원 순회 특수교사 본청 배치 운영(2명)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의무 실시 안내
2) 충북특수교육원 장애인식개선 교육용 영화 '숨은영웅 데미안' 제작 및 활용: 제3회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경쟁부문 금상 수상
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안내
4) 충북특수교육원 장애이해체험관(방문체험, 원격체험)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 운영
2)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11교)
3)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정기지원, 특별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시 관리 및 지원(월 1회 이상, 5회)
4) 인권지원단(11개) 협의회 및 역량강화 연수 진행(3월)
5) 각급학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안내
6)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안내(학생, 교원, 보호자, 3월)
7)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 및 연수 지원(학생, 교원, 학부모, 인권지원단 등)
 가) 학교별(또는 더봄학생 소속교)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및 인권보호 역량강화 교육 실시(1~2회기 이상) 안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교원, 학부모 대상 장애학생인권 보호 연수(연 2회 이상) 안내
 다) 인권지원단 장애학생인권 보호 역량강화 연수 실시(3월, 120명)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특수학교 대상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특수학교 11교)
2) 충북특수교육원 '상상누림체험관' 운영: VR·AR, 코딩로봇 등 에듀테크 체험
3) 충북 특수교육 주요업무 설명회 특강 운영: AI·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1회, 319명)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11교 참여)
2)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 운영(1개, 18명)

3)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계획 포함 안내 및 컨설팅
4) 특수학교 지역사회 연계 일상생활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교, 515명)
5) 특수학교(급) 교구설비기준 개정 고시(2026.3.1.시행)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특수학급 미설치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2) 행동지원 및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사항 IEP포함 안내
3) 개별화교육계회 자체점검표 활용 연 2회 자기점검 및 컨설팅

라.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운영(특수학교 11교)
 가) 문화예술활성화(6교), 건강체육활동 지원(5교)
2) '어디서나 운동장' 체육활동 지원 강화
3) '나도 예술가' 예술활동 지원 강화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건강권보장사업 추진(특수학교 4교)
 가) 청주의료원 협력병원 연계 소속 간호사 배치(1교)
 나) 학교자체채용 단시간근로 간호사 배치(3교)
2) 시청각장애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시각2센터, 청각1센터)
3) 건강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북대학교 병원학교 운영(1학급)
4) 청주의료원 공공어린이재활센터 병원학급 운영(1학급)
5)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꿈사랑학교, 스쿨포유)
6)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청주혜화학교)
7) 행동중재 지원
 가) 충청권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 충북특수교육원(전담인력 4명)
 나) 행동중재 학습공동체: 지역별 담당자(월 1회), 자격보유자(월 2회)
 다) 행동중재지원단 운영:도 단위 1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10센터
 라) 긍정적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8교
 마) 행동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위탁연수 일반교원 3명, 특수교원 7명

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방과후·돌봄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2)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협의회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집합 및 비대면 연수(2월, 311명)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원격연수 지원(5~6월)

다) 특수교육실무사 근로일수 확대(300일)에 따른 새학년 준비기간 운영

라) 특수교육 온나누미(유급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648명)

2) 치료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1인당 월 14만원

3)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가)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학교현장 수요조사 실시

나) 충북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확충(11센터, 11교)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을 위한 통학비 지급(실비 발생 시)

아.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 학교 내 돌발적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학교안전강화 대책 수립 시행

2) 각 부서별 대책 이행 및 점검(특수교육 정서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가) 정서위기 특수교육대상자 병원순회교육 실시(온유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나) 청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행동지원)팀 신설

4.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전환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충북특수교육원 발간 '학교밖 진로체험로 1번길' 활용 안내

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학습공동체 운영(10명)

3) 특수학교 학교기업(3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운영

4) 도교육청 내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운영

(1) 청주혜원학교 고3, 전공과 재학생 및 특수학급 고3 재학생

(2) 발달장애 학생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나)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休' 운영

(1) 청주맹학교(시각장애) 전공과 재학생

(2) 시각장애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나. 맞춤형 전환교육 운영 기반 강화

1) 자립 및 전환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원 교육관 운영(25년 12월 개관)

2) 주거, 직업, 여가 등 성인기 삶 중심의 전환교육 통합 프로그램 운영

가) 진로인식 및 탐색(초등학교)

나) 전환 준비(중·고·전공과)

3)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진학 설명회 운영(6월)

4) 사례별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관련 정보 제공

5) 취업(진학)을 앞둔 고3, 전공과 학생 대상 모의면접 컨설팅 운영(9월)

다.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유관기관 연계 협력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과 연계 지원

가) 업무 지원 인력 파견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사항 유기적 협력

나) 고등학교 학생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가)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취업처, 장애관련단체 등 19개 기관 협의체 운영

나) 장애학생 취업지원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4월, 1회)

다) 학교내 일자리 및 현장실습을 위한 취업 안내자료 제작 배포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거점센터 운영(1개소, 연간 6회 연수 운영)

2)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10센터)

3) 장애유아 이음교육 운영 도움자료 개발 및 연수(1회, 10월)

4)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만족도 조사 예정(1회, 11월)

5) 만 5세 장애 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진단평가비 지원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2026.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계형 '알음자리' 연수 추진

2) 청주교육지원청 통합교육(행동지원) 중점 교육지원청 중간 평가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과대특수학교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기관 추진
2) 특수학교 설립 부지 검토 추진
3) 과밀 특수학교(급) 모니터링(컨설팅) 및 지원 만족도조사 실시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2026학년도 온새미 인증제 운영: 특수교육 전문분야(교육과정 및 수업, 행동지원, 심리진단평가, 통합교육) 인증 예정
2) 특수학교(유·초) 1급 정교사 자격연수(위탁) 100시간(27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교(12교) 모니터링 및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용 보편적 행동지원 자료 개발(1종)
2) 교육지원청 연계 통합교육 컨설팅(10회)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온몸으로 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2회, 40명)
2)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수업 개발(유·초·중)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정기지원, 특별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시 관리 및 지원(월 1회 이상)
2) 인권지원단(11개) 협의회 및 역량강화 연수 진행(10월)
3)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활용 및 후속 조치(9월 이후)
4) 인권지원단 장애학생인권 보호 역량강화 연수(10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 교육과정 자료 개발(1종)
2)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워크숍 운영(1회, 11월)
3) 새학년 준비 특수학교 간 교육과정 네트워크 워크숍(27년 2월)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회 자체점검표 활용 하반기 자기점검 및 컨설팅(10센터, 11교)

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운영(특수학교 11교) 모니터링 및 지원

라.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실시

2) 행동분석 전문가 4기 대상자 선발(일반교사 및 특수교사)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점검 실시

바.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 2026. 충북교육안전종합계획에 따른 학교 안전 강화

2) 학교 내 돌발적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학교안전강화 대책 추진

가) 특수교육 정서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나) 상급학교 진학 시 정서행동검사(NISE-K-EBS) 실시를 통한 후속 지원

4. 장애학생 직업교육 및 전환교육 기회 확대

가. 맞춤형 전환교육 운영 기반 강화

1) 충북특수교육원 교육관: 주거·직업·여가 통합형 자립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영역	장소	내용
주거 생활	함께살이집 (자립지원실Ⅰ)	공동생활체험, 스마트홈IoT활용, 협업중심가사, 하루시작하기(출근준비하기), 하루마무리하기(퇴근후 일과정리하기) 등
	홀로서기방 (자립지원실Ⅲ)	자립생활체험, 효율적인 가사루틴 형성, 자립공간 관리, 출근 준비하기, 퇴근 후 일과정리하기 등
직업 생활	꿈품일터 (자립지원실Ⅱ)	오피스직무체험(락커룸과 탕비실 이용, 문서작업, 회의참여, 업무보고, 전화응대) 등
	별빛시네마 (직업체험실Ⅰ)	영화관 직무체험(상영관 청결관리, 스낵바 간식판매, 티켓 체크, 고객응대) 등
	유리마트 (직업체험실Ⅱ)	마트 직무체험(매대진열, 재고관리, 물건계산, 배달, 시재점검) 등
여가 생활	아름드리카페 (학생휴게실)	키오스크 이용, 피크닉 나들이, 단체 또는 개인 문화 커뮤니티 활동(홈카페클래스, 다이어리 꾸미기, 이색카페 즐기기) 등
	두드림마당 (문화예술실)	기념일 행사 및 이벤트 개최, 장기자랑,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악기 연주, 연극, 노래, 춤, 자유 표현 활동) 등
	어울림마당 (다목적실)	체력관리시스템 기반 건강체크, 동적 및 정적 신체활동(피트니스 도구 활용, 요가, 명상) 등

충청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충남 특수교육 실현

추진목적

-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다양한 특수교육 교육환경 조성
- 미래 삶을 준비하는 진로·직업교육

운영중점

1. 학생중심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강화
 -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정착
 - 장애학생 인권·안전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순회교육 지원 강화
 -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4.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특수교육 지원 강화

나)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단계부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다)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 제공 확대 및 부모양육 자료 개발 보급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내실화

가) 장애유형·발달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가이드북 개발·보급

나)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교원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강화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및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신·증설로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과밀학급 완화

※ 특수학교(급) 학급수 (4.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1	10	120	76	86	37	330
일반학교	109		507	197	124	0	937
계	**127**		**602**	**273**	**199**	**37**	**1,267**

※ 특수학교(급) 학생수 (4.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6	34	580	397	479	229	1,725
특수학급	35		2,303	910	689	0	3,937
일반학급	65		254	102	109	0	530
계	**519**		**3,137**	**1,409**	**1,277**	**229**	**6,192**

나) 일반학교 통합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 고려, 특수학급 신·증설(40학급 증)

2) 특성화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미래사회 적응능력 신장을 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나) 대학·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운영

3) 특수교육지원 체제 강화
 가) 특수교육 교원 확보 노력(1,534명, 교사배치율 98.3%)
 나) 과밀 특수학급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제기간제 교사 배치(30명)
 다) 특수학급 학생 정원 준수 및 재정 지원(급당 4,000천원 + 정원초과 1명당 500천원 + 통합학급운영비 특수학급당 500천원)
 라)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지원(급당 10,000천원 내외)
4)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가) 개원: 2027. 9. 예정
 나) 총사업비: 394.8억원(지상2층)
 다) 주요 역할 및 기능: 충남 특수교육 현장 지원, 장애인식개선 사업,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특수교육 혁신 선도 등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 충남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충청남도교육청(1센터), 교육지원청(14센터)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배움자리 운영(3월), 센터별 현장 지원점검 및 정보나눔지리 운영(3월~6월), 센터 저경력교사 멘토링제 운영(14센터)
3) 현장 맞춤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특성화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시·청각장애 거점센터(1), 자유학기제 거점센터(8), 직업교육 거점센터(6)
 나) 일반학교 배치(일반학급, 가정, 시설)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154명)
 다) 치료지원(3,860명) 통학편의 지원(603명), 방과후학교 지원(4,386명)
 라) 통합교육지원단(14개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14센터) 운영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강화
 - (가족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14개), 장애인부모회(7개), 대학 연계 가족지원 프로그램(4개 대학), 부모 자조모임(8센터)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 지원
 - 수어통역사(3명), 보조공학기기(21명)
5) 통학비 지원(603명), 통학버스 지원(1,725명), 통학지원인력 배치(55명)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 교원 역량강화 배움자리: 특수교사 2회, 신규 특수교사 1회 이상 운영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추진(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3회,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센터별 1회 이상), 인권지원단 담당자 연수 1회, 현장실습 담당교사 연수 1회)
3)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교원인사과 사업 연계)
4)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운영(상반기 특수학교 4교 실시)

*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14개 지원청)

5) 특수학교(급) 단위학교 자율장학 실시: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추진
6) 특수교사 수업 전문성 강화: 수업나눔 연수 1회, 찾아가는 전문가 수업코칭(2교, 4명), 학교 밖 학습공동체 운영(15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유치원 통합교육 강화: 통합유치원(2원), 통합교육 거점기관(11원, 4센터)
2)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23교)
3) 일반·특수교사 통합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18개)
4)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학생도움단 운영(4센터, 6개 대학)
5)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특수학급당 500천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연2회 이상,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2) 센터중심 일반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14센터)
3)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구성·운영(1개단, 13명)
4)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장애인식검사 참여(학교장애인식검사 참여교, 25교)
5) 학교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1회)

라. 장애학생 인권·안전 강화

1)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2) 2026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15개단, 본청1, 교육지원청14)
4) 교육지원청별 더봄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운영
5) 장애인권교육 강화(교직원·보호자 대상 연 1회 이상)
6)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15시간 이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유, 초 전학년, 중 1~2학년, 고 1~2학년)
2) (특수학교) 학교 여건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3)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5)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내실화(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6)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2) 다양한 학교 구성원을 활용한 개별화교육 수립 및 운영 강화
3)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활성화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현장 지원 강화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가) 특수학교(급)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지원(66교)
 나) 특수학교 문화·예술 중점 교육과정 운영(7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문화·예술 교육사업 운영(7센터)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체육 꿈나무 지원(42교)
 나)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종합 3위, 금49개, 은54개, 동36개)
 다) 장애학생 체육육성종목 중심학교 운영(6교)
3)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 운영

4) 특수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강화

가) 토요스포츠클럽, 스포츠 재능반,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라.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가) 에듀테크 활용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지원(37교, 2센터)

2)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3)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활용

4)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 활용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9교)

2)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교생활 의료적 지원(11교)

3) 의료기기 의존 중증장애학생 단국대병원 협력 사업 운영(2교)

4) 특수교육대상학생 위기(문제)행동 지원 및 예방활동 강화

5)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지원 강화

가) 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14센터)

나) 행동중재프로그램 운영 지원(37교, 77명)

다)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 위탁 운영(20명)

6)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수어통역사(3명), 수어통역서비스(97명), 보청기·인공와우용 배터리(123명), 보청기·인공와우용부품(56명)

나)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1센터)

7) 건강장애학생 교육 기회 보장(병원학교 2교, 원격수업 1기관)

바.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가) 특수학교 재택학급 설치(7교, 13학급)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154명)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3) 순회교육 담당교원 연수 강화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3,361명)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5센터)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방과후배움카드) 시스템 운영

2) 특수학교 방과후학교운영실무원 배치 운영: 특수학교 9교, 24명

3)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가) 늘봄행정사 배치(특수학교 9교)

나) 늘봄지원실장(임기제 연구사) 배치·운영(특수학교 2교)

다) 늘봄지원실장 미배치교 정원외기간제 배치(특수학교 5교)

라) 공립유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교사 배치(106명)

마) 초등 통합돌봄 강사 지원(57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실무원(595명), 사회복무요원(95명), 희망일자리(176명), 자원봉사자(87명)

2)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 강화 배움자리 운영 (1월)

3)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3,860명)

4)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21명), 대체교과서(17명)

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편의 지원(603명)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학여행비 지원(124명)

4.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9교)

2) 내실있는 진로 교육을 위한 진로연계교육 운영(9교)

3)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14센터)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11교)

2) 고교학점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4월)

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5명)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 진로·진학 지원

가)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지원(30명)

나)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설계·평가·상담 지원(6명)
다)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공동체 배움자리 운영(1회)
라) 장애학생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교육공동체 배움자리 운영(1회)

2)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0교)
가) 학교과정별 교육과정 연계 체험형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3)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교육과정 운영(10교)

4) 장애학생 취업지원협의체 구성·운영(1개단, 27명)

5)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운영(10명), 중증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176명), 장애학생 도제교육형 현장실습(3교)

6) 특수학교 학교기업(4교), 학교협동조합(1교),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2교),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10교)

라.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1)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의 초·중등교육 지원

2)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중심 촘촘한 특수교육 지원

가.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2학기 공립유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지원

2)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지원 체계 마련 및 시범사업 안정적 정착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2학기 특수학급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2) 특수교육 기관 설립 추진: 충남교육청특수교육원, 아산한여울학교(특수학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 맞춤 컨설팅(14개 센터)
- 2027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계획 및 진단·평가 시행

3)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종합관리시스템 시범 운영(7월)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 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기회 확대

2) '충남 특수교육 온수업 한마당' 운영(11월)

가) 수업 토크 콘서트, 수업나눔, 수업자료 공유 등

3) 하반기 특수교육 지원장학 추진

나) 특수학교(6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자문상담, 통합유치원 지원단 운영

2)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연수(관리자 3시간, 통합학급 담임 15시간)

3) 통합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장애공감 문화 확산

가) 장애학생 통합교육 핵심교원 양성 연수 추진(7~12월)

나) 행동중재전문가 양성(20명)

4) 과밀 특수학급 통합교육지원 시간제기간제교사 추가 배치(21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학급 중심 통합교육 활성화

2)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나눔자리 운영(7~12월)

다.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정착

1) 일상적 장애공감 장애인식개선 행사 추진

가) 충청남도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12월)

2) 학교관리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11월)

3) 학교장애인식지수 진단을 통한 장애공감 문화 확산(장애인식검사 참여교 25교)

라. 장애학생 인권·안전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실시(교사, 학생, 학부모 약 3,900명, 연 1회)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3) 장애학생 통합교육지원단·행동중재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7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교육과정 2027학년도 적용 학년군 편성·운영지침 개발

2)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장학 활성화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다. 장애학생 문화 예술·체육 지원 강화

1) 충남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6월)

2) 제14회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9. 19. / 9. 23.)

가) 서산 일원, 참가 규모 1,900여명, 6종목

나) 사전경기: 9. 19. 당진학생수영장(수영)

라.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순회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강화

2) 충남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6월)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필요 학생 맞춤 지원 강화

2)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바.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장지원점검 운영

가)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교육 운영 점검 지원(6센터)

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시스템 단일화(학교장 위탁운영 일몰)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가) 특수학교 늘봄지원실장 미배치교 정원 교육부 요청 (3명)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장애유형과 특징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추가 배치 노력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교육 편의 등) 여건 정비

4.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1)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양질의 체험처·체험프로그램 확충

나) 거점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교 진로체험처 매칭, 안전한 체험처 관리

나) 꿈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1)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교과별 최소성취수준 개발

2)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 현장 안착화 지원

3) 고교학점제 운영 공간 조성 지원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및 실습처 컨설팅 실시

가)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실습 활성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추진 강화

3)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4)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라.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1) 대학생활 체험: 나사렛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2교, 학생 30명 운영)

2) 장애학생 대학입학설명회 개최(7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2. 추진 목표

가.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강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확대

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가)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평가비 지원: 1인 250,000원 범위 내

2)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내실화

가) 교육지원: 특수학교 영아 학급 1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배치 4명

나)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1개원

다)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내실화를 위한 TF팀 운영: 월 1회

라) 특수학교(급) 영유아교육 워크샵: 70명(5월)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이음교육의 이해와 실제 연수: 150명(4월, 2회)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이음교육 운영: 3개 기관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90명

나) 14개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3개 진로·직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다) 지역 특수교육을 연결·조정·확산하기 위한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역할 정립
가)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통합센터 허브 기능 강화로 분절적 지원에서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
-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195명(3월 16일~20일, 10회기), 상반기 워크숍 70명(5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침 수립 및 제공: 운영계획 설명회 97명(1월)
- 특수교육지원센터 상반기 찾아가는 컨설팅: 14개 지역(4~5월)

나)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지역별 순회 교육 실시: 대상 학생 총 101명(재택 16명), 1인당 주 2~3회
- 통합교육지원단 및 행동중재지원팀 운영: 14개단(팀), 컨설팅 등 수시 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15개단(위원 187명)
- 지역 기반 학생 맞춤형 정보제공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보조공학기기, 가족지원, 치료지원(학생 1인당 월 17만원,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3,953명)

3)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지역별 진단·평가팀 운영: 14개 지역교육지원청
나) 진단·평가 연수 운영: 14개 지역교육지원청 자체 계획 수립·운영(학기별 1회)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가) 자료집 제작 및 배포: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길라잡이」

5) 특수교육대상학생 정보관리 체계 마련
가)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및 배치 프로그램 개발 TF 구성 및 운영: 1~6월

6)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행동 중재 거점센터 전담 인력 배치: 행동 중재 업무 전담 교사 1명
나) 장애 특성별 거점센터 운영
- 장애 영역별 거점: 3개 기관(시각, 청각, 지체)
- 행동 중재 거점: 1개 센터
- 문화예술·체육활동 중점: 4개 센터

7) 전북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가) 유관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2025년 11월

나) 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서 수립을 위한 업무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실시
- 실무추진단 구성: 기획·운영팀, 시설지원팀, 정책지원팅, 운영지원팀, 특수교육전문가(33명)
- 협의회 및 보고회 실시: 14회

다) 설립 기본계획 수립: 5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 및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순	학교명	다양화(학교과정)	특성화(교육과정)	비고
1	군산특수학교	유·초·중·고·전공 21학급	문화·예술·체육	2027. 3. 1.
2	전주특수학교	중·고·전공 18학급	진로·직업	
3	서부권(김제부안)특수학교	유·초·중·고 13학급	지역사회연계	2031년 예정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단위: 학급 / 증·감 포함)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합계
	유	초	중	고		
2025	9	27	8	2	4	50
2026	3	23	16	△2	13	57

3)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여건 개선 확대

가) 신·증설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지원: 54개 학급

나)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비 지원: 25개 학급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정원 확충

가) 교원 배치 기준 준수 및 중도중복장애학급 교사 추가 배치: 2교, 2명(정원외)

나) 과밀, 과다수업시수 특수학교(급) 수업 지원 협력 강사 지원: 30명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단위: 학급 / 증·감 포함)

구분	영역	수	운영 내용	비고
연구회	에듀테크, 교육과정, 행동중재, 통합교육	4	· 특수교육 분야 전문 연구 및 현장 적용 방안 연구	
교사 연수회	수업개선	5	· 장애 영역별 교육, 교과교육, 예술교육, 범 교과교육 등 수업 개선 연구 활동	
	진로직업	6	· 특수교육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연구

- 지역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연구: 2명(유치원 1, 중등 1)
- 통합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및 효과 분석 연구: 2명(초등 2)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14개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나) 교원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교원인사과)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시군교육청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14개단)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지원실 지원(1교)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

가) '정다운학교' 중심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확대 운영: 15교

3) 장애 공존 교육환경 확대

가)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수업지원협력강사 지원: 30명

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결·보강 기간제교사 지원: 1명

4)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통한 통합교육 확산

가) 통합교육현장지원단 조직·운영: 통합교육 정책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 및 통합교육 관련 연수 이수 의무화: 연 3시간 이상

나) 일반학교 교원 대상별 맞춤형 통합교육 집합연수 지원: 4회(4, 7, 9, 11월)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가) 특수-일반교사의 협력 모델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37교

나) 통합교육중점 연구학교 운영: 2교(전주늘품유치원, 전주북초등학교)

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프로그램 지원: 78학급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모든 학교 교직원 연 1회, 학생 연 2회 이상 실시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이해교육 실시 안내

나) 장애이해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장애공감 교육자료(그림책, 영상, 활동지) 보급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학부모까지 확대: 연 1회

나) 교내 장애인식개선 학생 동아리 운영 권장

4)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 운영

가) 장애학생 작품 활용 장애공감 그림책 제작 및 보급: 1회(4월)

나) 더 특별한 장애공감교육 교원 연수 운영: 1회(4월)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울소리 오케스트라 운영

가) 장애인식개선공연

- 학교 및 기관 대상 '찾아가는' 공연(6회)
- 학교 대상 '찾아오는' 공연(2회, 전주교육문화관)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 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3,453명

(초4~전공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교원 / 5~6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15개단, 위원 187명

- 정기 지원: 333교, 일반학교 매월 최소 2회(교) 이상, 특수학교 연 2회 이상
- 특별 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수시 실시
- 지역별 더봄학생(224명) 선정 및 맞춤형 지원(상담, 자문, 컨설팅 등)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지원 결과 시스템 입력 및 보고: 14개단(매월)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 연수: 22명(3월)

나) 지역별 인권지원단 협의회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다) 지역별 더봄학생 소속 학교 연수 지원 및 일반교사 대상 연수 실시: 연 2회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가) 장애학생 미래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 특수학교 4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AI기반 미래교육 실시: AI로봇 체험, XR모션센서, 코딩로봇체험, VR자전거 등

다) 인공지능 로봇 활용 미래교육 시범 운영 연구학교: 1교

2)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및 여가활용 확대

가) 2026년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 200명(6월)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가)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TF팀 운영: 월 1회, 「교육과정 운영 도움서」 제작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TF팀 구성 및 운영: 「교육활동자료」 제작 준비(6월)

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 10교(연중)

라) 전공과 업무추진팀 구성 및 운영: 자문 및 실행 위원 15명, 협의회 5회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14개 통합교육지원단 연계

2)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14개 통합교육지원단 연계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지원 강화: 85명

2)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급 운영: 4교, 19명(재택)

3) 재택(가정, 시설, 병원 등) 순회교육 학생 지원: 16명

4) 순회교육 대상 학교의 장애이해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컨설팅 지원

5)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가정(또는 시설) 방문 및 상담 권장: 연 2회

마. 장애학생 창의문화활동 지원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과정 운영 지원: 11교

나) 문화예술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3개 센터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문화체험학습 상반기 운영: 학생, 보호자 24명(5월)

2) 체육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11교

나) 건강 체육활동 중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개 센터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 및 중증장애학생 교육 및 의료적 지원: 40명(5월)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전북대학교병원 협력 학교 내 간호사 배치(2교)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장애영역별 거점 센터 운영: 3개 기관(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학교 11교, 거점센터 3개 기관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지원: 전북대학교 한누리병원학교

나) 원격수업 수강 지원: 스쿨포유, 꿈사랑학교

다)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 담당 교사 연수: 1회, 100명

5)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 전문가(교사) 양성 실행가 과정 연수: 16명

나)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1개 센터

다) 행동중재 지원단 운영: 14개단

라) 특수학교 행동중재 지원: 11교

마) 특수학교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심리안정 환경 조성 지원: 11교

바) 행동중재지원 연구회 운영: 1개팀, 14명

사. 초등 돌봄교육 및 유·중등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 늘봄학교 지원: 10교

2)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3,482명 지원

3)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방학 프로그램 운영

4) 유치원 특수학교(급) 방과후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지원: 62개 학급

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 인력 운영

가) 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지원 인력 운영: 특수교육지도사 442명

나)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운영: 300명

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100명

라)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사 배치: 8명

마) 특수학교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3명

2) 특수교육 지원 인력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 지원 인력 역량 강화 연수(원격): 도교육청 주관 연 5일

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집합): 신규 16시간 이상

3) 치료지원 내실화: 3,953명

가)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기관 및 병·의원 이용 월 17만원 지원

나) 치료기관 모니터링: 11개 특수학교, 15개 도·지역교육지원청 중심 연 1회 이상

4)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

가) 특수학교(급) 승강기 및 기타 편의시설 확충: 27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1,401명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재난 상황별, 장애특성별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 기반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 활성화 지원: 3교

나)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3개 센터

다)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지원: 33교, 571명

2) 진로직업교육 현장지원 강화

가) 지역유관기관과 장애학생 진로직업 협의체 운영: 연 3회

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연 3회

다) 진로직업교사연수회 운영: 6개팀

3) 특수교육 진로진학 지원

가)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15교, 43명, 참여대학 2교(우석대, 전주기전대)

나) 특수학교 전공과 및 대학 입학 설명회: 7월(예정)/ 도내·외 대학 및 도내 특수학교 참여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 3개 센터, 특수학교(4교), 일반고등학교(6교)

2)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특수학교(6교), 일반고등학교(8교)

다. 관계 기관 연계 취업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가) 관계 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복건보지부) 장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활성화

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사업 안내 및 확대

2)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가) 상반기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학교내 일자리사업) 운영: 12교, 35명

나) 특수행정실무사 배치 확대로 고용률 향상 지원: 80명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내실화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 역량 강화 연수: 300명(7월)

2) 특수교육지원센터 하반기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10회(9월)

3) 특수교육지원센터 하반기 컨설팅 실시: 14개 지역(9~10월)

4)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성과 보고회: 1회, 120명(12월)

5)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및 배치 프로그램 시범 적용: 유·초·중·고(7~12월)

6) 전북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중앙투자심사의뢰서 제출(8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급 설치 사전예고제 시행: 특수학급 신·증설 필요 학교 대상(7월)

2) 사전예고제 시행 대상 학교 현장 컨설팅: 지역교육지원청 연계(8~11월)

3) 신·증설 특수학급 후속 지원 현장 컨설팅: 지역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연계(2월)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추진 과제별 연수,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회 등 실시(7~11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간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 설치학교 컨설팅 지원: 14개 시군(요청 시)

2) 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강사 지원 학교 현장 컨설팅: 5교(6~11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맞춤형 연수 지원: 3회(3시간)

2) 정다운학교 운영학교 현장 컨설팅: 학교과정별 선정학교 10교(6~11월)

3)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현장 컨설팅: 2회(6월, 10월)

4) 통합교육 사례집 제작 및 성과보고회: 1회(12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별 이행 실적 취합: 소속기관, 각급학교(12월)

2) 어울소리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전북교육가족 및 도민 대상(10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 연수: 22명(9월)

2) 15개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300명(6월)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보고회: 1회(12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2026년 특수교육 에듀테크 연구회 주관 연수: 2회(5월)

2) 특수교사 에듀테크 활용 수업 역량 강화 직무연수: 2회(8월)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도움서」 활용 연수: 1회(11월)

2)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활동 안내서」 제작: 1종(12월)

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우수사례 공유회: 1회(11월)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컨설팅: 14개 지역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연계(9월)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대상학생 선정 및 운영 지속: 2학기(8~9월)

2) 순회교육 업무 담당자(지역 및 특수학교) 역량 강화 연수: 2회, 32명(9월)

마. 장애학생 창의문화활동 지원

1) 2026년 전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200명(6월)

2) 2026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60명(9월)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결과 보고 및 사례 나눔: 1회(11월)

4)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문화체험학습 하반기 운영: 학생, 보호자 24명(10월)

바.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담당 기관(학교-교육청-병원) 협의: 3회

2) 장애영역별 거점기관 운영 평가회 및 향후 계획 협의: 1회(12월)

3)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 교과용 도서, 대체 자료 보급: 학생 24명, 교사 2명

4)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의 학교복귀지원을 위한 담당자 연수: 100명(8월)

사. 초등 돌봄교육 및 유·중등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늘봄지원실과 특수교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돌봄 안정적 참여 지원

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 80명(1박2일)

2) 치료지원 제공기관 모니터링: 지역별 치료지원 가맹점 142개 기관 (연 1회 이상)

3) 특수학교(급)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 편의 확대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확대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 기반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30명(10월)

2)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사 연수회 운영 평가: 1회(11월)

3) 장애학생 진로탐색 지원 사업 운영 평가: 1회(12월)

4)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활동 평가회: 1회(7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산업체 현장실습 현장 모니터링: 8개 기관(9~11월)

2)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평가회: 1회(12월)

다. 관계 기관 연계 취업 지원 확대

1) 하반기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실습(학교내 일자리 사업) 운영: 30명

2) 직업 관계기관과의 사업(일자리 사업 등) 평가회: 1회(12월)

3)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분야별 사업 평가회: 1회(12월)

전라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가. 특수교육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

나.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영역

가.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조기 발견 및 특수교육 정보 전달 강화

가) 영유아기 발달 촉진과 2차 장애 예방, 조기중재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체계 지원을 영유아 조기발견 거점센터 운영(7청)

나) 거점센터를 통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홍보 및 선별검사비 지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부모교육 및 상담 홍보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교육 중점유치원(정다운학교) 운영(1원)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가) 유치원-초등학교 간 연계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나) 초등학교 방문 체험, 부모 상담 등 입학 전 적응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적령 입학 상담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담당자 연수로 전문성 확보

2)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매뉴얼 개선 및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센터장	장학관	장학사	순회 교사	운영 강사	치료사	운영 보조원	주무관	계
23	1	23	75	19	26	22	1	190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가)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위원회, 인권·통합교육지원단, 유관기관 협의체 등 구성·운영

나) 시·청각장애 거점센터(3), 진로·직업 거점센터(7), 문화예술 거점센터(2)

다) 지자체 등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 가족지원서비스 및 정보 제공

라)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3)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인력 맞춤형 연수 강화

가) 센터장, 교육전문직 워크숍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인력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운영강사, 치료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라.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2)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공약)

3) 특수학급 현황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5	86	63	58	34	246
특수학급	68	418	181	111	-	778

4)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급) 운영 확대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2교), 문화예술(3교), 체육중점(3교)
나) 특수학급: 직업중심(3교), 문화예술(1학급), 체육중점(23교)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연구회 중심 연수를 통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AI·디지털교육 연수
나) 교실수업 개선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다)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28명) 운영
2) 함께 성장하는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 멘토링, 컨설팅 등 실시
나) 특수교육연구회(12팀), 전문적학습공동체(21팀) 운영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추진
3) 특수교육교(직)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피해 교원의 치유 및 복귀 지원
-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법률 지원, 상담 지원 등
나) 특수교육 교직원 등 마음돌봄 연수 운영(7~8월 예정)
- 특수교육 교직원,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 가족 등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단(23단) 구성·운영
나) 장애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등 통합학급 보편적 학습설계 적용 지원
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라) 학교 장애인식 검사를 활용한 통합교육 여건 개선
2)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통합교육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1원, 초2, 중1, 고1)
나) 교육부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초 1교)
다) 통합교육 교사연구회(8팀)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 연수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교(원)장, 교(원)감 특수·통합교육 관련 집합·원격연수 3시간 이상 이수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30시간 이수 권장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인센티브 제공 권장: 학생수, 업무경감, 성과금 반영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전문가 활용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장애예술인(단체) 또는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공연 실시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단-장애이해교실' 실시

다) 각급 학교교육계획에 장애이해(인권)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추진 안내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2026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 실시)

다) 장애인권교육 강화 및 성교육 내실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교육 실시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22청)

나) 정기지원, 특별지원 강화

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 강화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인권 의식 함양 및 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나) 지자체 연계 장애학생 성·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25그룹, 250명)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중심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
 가) 특수교육 미래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특수교육 2030교실 운영(2교, 3실)
 나) 맞춤형 디지털교육 연구회 활동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확산(1팀)
2)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자료 및 플랫폼(열린배움터) 활용 안내
3)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프로그램 등 에듀테크 기반 체험 기회 확대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교의 특성, 교육공동체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및 원격수업 지원
2) 특수교육 보결수업지원 강사 운영(16명, 유 3명, 초 8명, 중 5명)
3)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가) 전라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내
 나) 학교교육과정 내 통합교육 계획 수립·반영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안내
 다)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교(급) 운영 지원 자료 활용 지원
 라)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현장 지원: 교원연수, 자료 보급
 마)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3)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중재 및 의료지원 사항 포함 작성·안내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 확대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컨설팅 실시
 나) 학생 특성을 고려한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연수 시 역할 및 복무 안내

마.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문화예술중점 특수학교 운영(3교)

나) 문화예술중점 특수학급(합창단) 운영(1교)

2) 체육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체육교육 중점학교(3교) 및 체육중점 특수학급(23학급) 운영

나) 특수학급 통합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3)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4) 제8회 전라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9월 예정)

5)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학생 158명)

바. 장애 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전문인력 배치 확대 노력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전담팀 적극 활용

다) 개별화교육계획에 의료적 지원 사항 포함하여 작성

3) 시각·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거점지원센터(3청)를 통한 시각·청각장애학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나) 거점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다) 전남보조기기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 등 교육 지원 강화

나)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2교, 3학급)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준수한 학적 및 성적 처리 안내

5)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 사례관리자 연구회 구성·운영 지원(1연구회, 20명)

나) 행동중재 연구회 운영(1연구회, 15명)

다) 행동중재 사례관리자 대상 슈퍼바이저(3명) 연계 운영 지원

라) 도교육청 개별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46명)

마) 교육지원청(22청) 및 특수학교(9교) 중심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사. 초등 늘봄학교 및 방과후·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 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

가) 공립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69명)

나) 영유아 방과후과정 학급 운영비 지원 확대(특수학급 6,000천원, 특수학교 7,000천원)

다) 영유아 돌봄·방과후과정 자원봉사자 지원(55명)

2) 특수교육 초등늘봄교실 운영

가) 특수학교(급) 초등늘봄교실 참여 희망자 2명 이상 시 편성·운영

나) 특수교육 초등돌봄강사(무기계약제, 10명), 특수학급 초단시간 계약자(76명) 운영

다) 운영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 관리 계획 포함

라) 늘봄지원전담인력 [늘봄실무사(9명), 자원봉사자(101명)] 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가)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나)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관리 계획 수립

다)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초1~2 대상 교내 특기·적성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 특수학급: 통합학급과 함께 특기·적성 및 치료지원 프로그램

라)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액 확대 편성

- 최대 월 20만원 이내 수강료 지원
- 꿈-그린카드(전자카드)를 통한 매월 결제
- 수강 여부 확인 등 및 서비스 질적 관리 철저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

특수교육실무사	통학차량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계
329	27	173	529

2) 특수교육실무사 근무 개선

가) 근무일수: 연간 최소 330일(주휴포함)

나) 직무관련 집합연수일,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일 확대

다) 병가 등 특수교육실무사 대체 인건비 지원

3) 사회복무요원 신청, 배치, 직무교육, 복무 관리 등 운영 철저
4) 치료지원 내실화
 가) 대상자 선정 및 치료지원 영역·방법 등 운영 철저
 나) 복지관, 병원, 사설치료실 등 유관기관 연계구축 지원 확대
 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치료지원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개선
 라) 치료지원의 내용·방법 등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
 마) 고품질 치료지원을 위한 사설 치료실 연 1회 이상 점검
5)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나)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 평가자료 활용
 다)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평가방법 등 명시
6)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가) 통학버스 미이용 학생 중 2km 이상 통학학생 대상 통학비 지원
 나) 통학비 지원방법 개선(실비 지원) 및 점검 강화를 통한 만족도 제고
7)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장애학생 가족의 개별적 요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부모상담,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지원 강화
 나) 가족캠프, 문화·여가 등 휴식·심리·정서 지원 강화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가) 재난 상황별 안전 대피 훈련 실시
 나)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점검 강화
 나) 학교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다)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라)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마) 장애학생 일과 중 학교 이탈 예방 노력
 바) 현장체험학습 시 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체험 기회 확대

가)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9교)

나)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집중학년·학기제,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다)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 협의체 운영 내실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가)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9교 34학급 운영

- 중증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입학전형 보완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원인력 확충, 미진학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2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운영

다)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 운영(53교, 초 16교, 중 25교, 고12)

라) 진로교육 지원 역량 강화

-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 운영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9교) 운영 및 내실화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꿈을 찾는 진로직업 도전활동' 운영 (16학급, 대전 일원)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학부모 연수·진로 설명회 운영(120명 예정)
- 도교육청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 협의체 운영(3개 33명)

3)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

가)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운영 및 지침 개정 안내

나) 현장실습 우수산업체 인증을 통한 양질의 취업 기회 제공

다) 학교 내 일자리(80명)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보조원(22명) 운영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대비한 특수교육 지원체계 및 운영 기준 마련

나. 미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다. 과밀학급 해소와 전문적 진로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 전문인 육성을 위한 예술중점 특수학교 운영 확대

마.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AI·디지털 기반 연수 및 현장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특수통합교육 연구회 운영 내실화

나. 특수·일반교사 협력 중심의 학교 단위 통합교육 운영 내실화

다.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중심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라.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인권보호 체계 고도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AI·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모델 개발 및 확산

나. 행동중재, 의료적 지원 등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강화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및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차별 없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원 체계 고도화

경상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 경상북도 특수교육의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성장지원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목표]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직업 교육 활성화

[추진과제]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특수학교(급) 설치 확대 및 여건 개선 ■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성장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안정화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다양화	■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유관기관 연계 취업 지원 확대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가)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 선별검사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의무교육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 영유아기 특수교육 홍보 리플릿, 부모교육 및 상담, 누리집 연계 홍보

다) 장애(위험)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제공

- 장애자녀 부모지원 종합시스템(온맘), 영유아기 발달 지원 누리집 연계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장애유형·발달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교재교구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

- 거점별 1개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지정·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참여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및 특수교육대상유아 참여 여건 개선
-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참여를 위한 인력 지원 확대

라) 교육-보육기관 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으로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진단평가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 장애영유아 담당 교직원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확대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가)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이음교육 지원 강화

- '유보통합포털'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정원 내 배치]
- 우선 배치 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 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정원 외 배치]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이음교육지원 강화

- 유치원, 초등학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입학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일반·특수교사-학부모 간 특수교육대상유아 관련 정보공유, 초등학교 방문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가) 권역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안동·구미·경산) 운영 내실화

-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항, 구미, 경산, 안동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환경 개선 및 전담 인력 확충

- ('26) 141명으로 순회교사 적정 인원 확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비 확충 및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등 배치 확대

- ('24)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13명 → ('25) 15명으로 배치 확대

다) 센터 기능 구조화 및 역할 전문화를 위한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라)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 중심의 연수 강화 및 근무 교원 처우개선

- 업무 관련 필수영역(진단평가 검사도구, 보조공학기기, 행동중재, 교육과정, 장애영유아 등) 연수 이수, 외부 전문가 연계교육 지원 등
- 전문직 전형 가산점 제공(2021~), 학습휴가(5일), 연수 지원 등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업무 전문성 강화

- 경북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연수 실시('26. 4.)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 및 여건 개선

가) 특수학교 수요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 추진

- (가칭) 칠곡 공립 특수학교 2028년 3월 개교 예정
- 경북 미래형 특수학교 설립 종합계획 연구 용역 추진
- 권역별 과밀 및 장거리 통학 해소를 통한 교육 접근성·학습권 보장
- 경북 미래학교추진단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 경희학교, 구미혜당학교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희학교

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특수학급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사(시간강사) 및 지원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통합유치원 확대

다)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상향
 * ('22) 급당 300만원 → ('24) 학급당 400만원(정원초과 1인당 50만원)

라) 교실 환경 여건 개선 확대
- 특수학급 신·증설비 상향
 * ('22) 급당 3,000만원 → ('23) 학급당 4,000만원→ ('24,'25) 학급당 5,000만원
- 특수학교(급) 공간 혁신 및 노후 학급 환경 개선
 * ('23) 학급당 4,000만원→('24) 학급당 5,000만원
 * 학급당 최대 5,000만원

마) 특수학급 수업 지원 교사제 실시 내실화
- 특수학급 결·보강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권 보장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11개 센터 내 13명 배치

바) 특수학교(급) 수업 지원 특수교육지원강사제 실시
- 과밀학급 해소 및 전일제, 중증장애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
- 교당 1명, 40교 지원

바) 특수교사 단계적 충원 추진
-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현황, 교육 현장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에 특수교사 증원 배치 요청 및 배치 계획 수립

사)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중도중복장애학급' 시범 운영: 김천동부초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

가) 특수교사 중심의 통합교육 지원 체계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협력 기반 통합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

나) 통합학급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참여와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배치 확대 및 통합교육 지원 여건 개선 추진

2)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

가) 학교 장애인식 검사 실시 및 결과 활용
- 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장애공감

문화 조성 및 통합교육 지원 방안 마련
- 검사 실시 기간: 2026. 5.~6.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 교과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필수 연수 과정에 반영하도록 관계 기관 및 학교에 안내
- 일반학교 관리자[교(원)감 포함]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지속 추진
-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권장 및 통합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연수 참여 기회 확대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적 역할 모형 발굴을 위한 '정다운학교' 확대 및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내실화
- 정다운학교(20교)
 교육부 지정(통합교육 연구학교) : 3교(유치원 1원, 초등 1교, 고등 1교), 자체운영: 17교(유치원 8원, 초등 4교, 중학 3교, 고등 2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학교(급)별 프로그램 구성·운영을 통한 장애이해교육 강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모든 유·초·중·고 학부모 대상 장애이교육 연 1회 실시
- 범교과 학습 인권교육과 연계한 계기교육 및 장애이해 수업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회방송'을 활용한 학교(급)별 장애이해교육 운영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및 장애예술인(단체) 또는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 지원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 구미, 경산, 안동)
- 찾아가는 장애공감 문화 공연: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온울림' 앙상블

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유치원)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휴직자는 제외)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마) 장애인식 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 다양화

- 경북교육청 '맛쿨멋쿨' 수어 콘텐츠 활용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 특수학교(급) 현장 지원 강화

-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분야 전문성 갖춘 핵심교원 양성
-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프로그램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 (정기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실시
- (특별현장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실시
-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 조사 실시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다) 통합교육 의식 제고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동아리 운영 지원

- 공모(동아리)사업 학교자율운영제로 운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AI형 에듀테크 및 실감형 콘텐츠 보급(AI 학습보조 로봇 등)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 확대
 * 특수학교 6교 운영: 상희, 경희, 안동영명, 안동진명, 구미혜당, 경북영광학교
 * 장애 특성 고려한 에듀테크 기술 활용 수업 지원 기반 조성: 경주교육청('23)
 * AI 교육 중점 특수학교 지정 운영: 구미혜당학교, 경산자인학교 2교('26)
 * AI 교육 선도 특수학급(교): 포항이동고 외 34개교(급)
- AI 활용 및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교원 연수 기회 확대
 * 사례: AI 스피커 및 플랫폼, 수어 활용 청각장애 학생 AI교육 등
- 의사소통,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활용 확대
-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을 통해 드론·로봇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력
 * 지역 SW교육기관 방문,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등

2) 특수교육 플랫폼 운영

-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안내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장애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기회 제공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특수학교(5교),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특수학급(13교), 장애학생 재능 키움 지원(143명)
- 전문가 멘토링 및 체육 분야 진로 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체육 인재 발굴
 * 특수학교 운동부 지원, 특수학교 1교 1운동 종목 지원, 교육감기 장학생체육대회 개최(10월 예정)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위해 세부 시행 지침 보급

나) 학교과정·배치유형·지역별 특수성 고려한 순회교육 지원체계 구축

다) 특수교육기관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교원 대상 활용 연수 강화

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가) 중도중복장애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생활기능 중심 교육 등 교육과정 전반 활용 가능한 지도용 가이드북 보급 및 안내

나)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지원 강화
- 건강장애·재택순회학생 급식비 및 사회적응활동비 지원(7, 11월 예정)

다)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확대

-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프로그램 지원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경상북도통합예약시스템' 운영
- 중증장애학생 대상 보행능력 향상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착용형 보행재활 로봇 운영 지원

라)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인공와우 수술 및 기기 교체 비용 지원(2022.~, 75명, 3억 5천만원)

마)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지원

- 특수학교(급) 교사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와 장애학생의 심각한 도전행동 집중 지원 확대

* 2022~2025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270시간, 72명)」 이수 완료, 2026년: 30명(예정)

- 행동 특성에 따른 개별 학생행동 중재계획 실행을 위해 학교 내 심리안정실(행동지원실 등), 비상벨 설치 지원

* 심리안정실 및 비상벨 설치 완료: 도내 8개 특수학교 설치 완료('23~'24)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 위한 여건 개선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생활지도원 연수 연 2회 실시

다) 특수교육실무사 처우 개선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야간 현장학습 지원을 위해 학생과 함께 동숙 시 동숙비 지급(1박, 50,000원)
- 방학 중 근무일: 학기 준비일 4일(학년도 기준)

다) 장애학생 가족의 교육 회복과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지원 추진

- 재활승마 가족캠프: 특수학교(급) 재학생 60가족(상·하반기 각 2회 운영)
-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연수, 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

3)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체계 강화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수요 반영 지원 확대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진로·진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가)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다양화 및 학교과정별 교육과정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초·중·고 진로교육 연계강화, 지역사회 연계 현장 체험 중심 진로·직업 교육 기회 확대

나) 특수학교 전공과 중심 진로·직업 프로그램 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교육기회 다양화

다)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1,2학기)

- 고등학교, 전공과 대상 실습형 직무 체험 제공

마)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 강화 및 학교과정별 진로·직업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바)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및 전공과 학생 대상 2개 대학 체험 추진
- 대학 연계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및 학교 자체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활성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2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인동고등학교
- 운영비 증액(2023년 교당 3,000만원→2026년 교당 4,000만원)

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고등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 368명 지원

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통합 위한 자립생활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운영

차) 고등학교과정 장애학생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45교(급)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범부처(교육부-고용부-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고도화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가)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확대

나)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컨설팅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장애학생의 요구와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 연계 강화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조기발견·진단평가 지원체계 강화

가) 선별검사 및 특수교육 진단·평가 지원 강화

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부모지원 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지원 내실화
가) 장애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강화
다) 통합교육 중심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참여 지원 강화
라) 교육-보육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지원 강화
가) 가정·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연계 및 입학 적응 지원 확대
나) 유아 및 보호자 대상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나. 학생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구조화 및 운영 내실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내실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역량 강화
라)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 특성화 및 다양화
가)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나) 특성화·전문화된 특수학교 운영 모델 확산
다) 기존 특수학교 재구조화 추진
라) 특수학교-지역사회 간 교류 확대
2)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나)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3)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나) 특수교육 교원 확충 및 개선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

가) 일반교사의 책무성이 강화된 협력적 통합교육 체제로 전환 추진

나) 통합학급 협력교수를 위한 여건 개선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장애인식 검사 활용

가) 통합교육 실시학교 대상 학교 장애인식 검사 적용 확대

나) 학교 장애인식 검사 연계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가) 교원 자격·직무연수 시 통합교육 교과목 확대 편성

나) 지역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강화

다)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수업 모델 개발 및 현장 적용 지원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정다운학교 및 경북형 어울림학교 지원 강화

나) 학교 단위 통합교육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학교(급)별 다양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지원

나) 학생·교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연 1회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화

다) 학부모 대상 연 1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지원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가) AI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환경 조성
 나) 에듀테크 활용 장애학생 맞춤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 연수 지원
2) 특수교육 플랫폼 운영
 가) 장애학생 맞춤형 플랫폼 열린배움터 운영 안내
 나) 건강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안내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확대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지침 안내
 나) 개별화교육계획 현장 지원
 다) 학교과정·배치유형·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순회교육 지원
 라)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실 운영 확대
5) '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강화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
 다) 경북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

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가) 치료지원 제공기관 관리 강화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나) 시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강화
 다)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내실화
 라) 특수학교(급) 교원 행동중재 역량 강화
 마) 장애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프로그램 지원 강화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치료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여건 개선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다) 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 체제 구축
3)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가) 장애학생 방과후·돌봄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나) 교내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가)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직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 진로·직업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강화
2) 관계부처(기관)간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시스템 활용 확대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가) 특수학교-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운영

경상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목표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3. 중점 추진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진단평가 용역기관 선정, 진단평가 담당자 연수 및 검사도구 지원, 20개 센터)

2)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지원실 운영(창원, 김해, 거제교육지원청, 3실)

3) 장애영아 담당 교사 역량강화 연수(5월, 50명) 및 전국 장애영유아교육 워크숍 운영(6월, 200명)

4)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대상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운영(치료지원 120명, 통학비 200명)

5)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이음교육 시범운영(2개 기관, 유-초 1, 어-특 1)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 적극 활용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및 담당자 대상 관련 지침 안내
3)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배치 조정 (특수교육지원센터 5명→학교 배치)
4)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장애영아 거점센터, 전환교육지원실, 시·청각장애 거점센터)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2025년 대비 31학급 신·증설
2) 신·증설 특수학급 환경개선(82학급)
3) 신설 유치원 및 학교 설립 시 특수학급 의무 설치 강화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과지도, 교육과정 운영, 진로직업교육, 예체능 교과교육, 긍정적 행동 지원 등 연수 확대 운영
 나)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11개 특수학교(급) 및 2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공모형, 5팀) 운영
2)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기회 확대 및 교육활동보호 연계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운영(20개)
 나)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운영(26년 151명)
 - 교육과정적 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집합 연수 운영(4회, 1200명)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온라인 연수 운영(4회, 1000명)

다) 통합교육 행정지원(행정실장) 연수 운영(1회, 300명)
라)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1회, 64명)
마)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2회, 50명)
바)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격 연수 및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연수 위탁 운영(연중)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및 통합교육 지원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2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 교사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교수 등 강화
나) 통합교육 중점학교(더하기교실) 운영(5교)
다) 통합유치원 시법 운영(1개원, 신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인권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나)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장애공감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강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안내
나)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다)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를 위한 실태조사 안내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인권지원단 운영(21개)
나)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현장지원(특수학교는 연 2회)
다)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실시
라)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더봄학생 선정 및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나) 특수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3시간 이상)

다)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 및 강화

라) 학교 단위 장애 공감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가)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2교) 및 공학체험관(경남특수교육원)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 지원학교(특수학교 4개교)

다) 특수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지원

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열린배움터' 활용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아이톡톡 활용 지원

- 교수학습자료, 수업나눔,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교 특성 및 교육 공동체의 요구에 따라 학교 자율적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지원

나) 고등학교 과정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2)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확대

가)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 반영

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후속 지원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실시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확산

다) 기본 교육과정 성취수준 개발 자료 활용

5)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지역 및 학교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지원 확대

- 현장 지원단 구성·운영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 특수교육대상학생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강화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학년 초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 학기마다 실시 및 공유
- 전출입 업무 처리 시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처리 기간 준수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지원을 위한 도움자료 개발 및 보급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특수교사,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나) 유치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안내 및 사례 활용

다) 교과 또는 생활 지원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안내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행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

가)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실시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순회교육 지원 강화

다)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순회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지원

나)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등에 대한 연수 강화

다) 순회교육 담당 교사에게 순회교육 활동비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공연부문 9교, 전시부문 6교, 총 15교)
-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10교실 10명)

나)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미래 체육 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
- 2026. 경상남도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 운영 준비
- 체력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활용 지원체계 개선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체험·수련활동 지원 강화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시설 및 체험관을 이용한 체험활동
- 장애공감체험을 통해 비장애학생의 장애 인식 및 태도 개선 지원
- 1일 체험형 수련활동 및 1박 2일 숙박형 수련활동 운영

라) 특수교사 대상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진단·평가 지원 강화,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적용)
2)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료적 지원 강화 및 지역 의료기관 협약 추진
3)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도서 및 대체자료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4)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교복귀프로그램 지원

나)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4월)

다) 병원학급 운영(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및 경상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라)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개소(5월)

5)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가) 장애학생 개별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44명)

나)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연수(120시간, 이론 60시간/실습 60시간, 29명)

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라)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지원(1교, 김해신안초등학교)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1인당 월 12만원 이내)

2) 특수교육대상학생 참여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지원(489학급)

3) 토요프로그램(민간위탁) 및 방학 중 희망나눔학교(지방보조금) 운영 지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원 배치(678명)

2) 사회복무요원 배치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292명)

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강화

3) 치료지원 내실화

가) 병의원 치료(물리, 작업, 청능훈련) 및 발달재활치료(언어치료 등)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비 지원(월 15만원 이내)

나)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117명 배치)

4)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 및 대안평가 지원

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규정 마련

나)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한 평가 지원방안 지원

5)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가) 보조공학기기 통합지원시스템 운영(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나) 전시 체험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실 운영(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

6)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편의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숙사 숙식비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2교)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11교, 51대)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 학교별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2)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안전생활체험관)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교육과정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나) 학생 맞춤형 진로 역량 개발 지원 강화
다) 지역사회 대학 연계 전공과 운영(1교)
라)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내실화(7교)
마)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진로설계관 운영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한 범부처(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운영

3)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안내
나) 현장실습 시 산업재해와 노동인권 침해 보호 역량 강화

4)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 서비스지원 협의체 운영
나) 전환교육지원실 운영(8센터) 및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12명)
다) 경상남도 진로정보 도움자료 개발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4)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5)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거대과밀 특수학교 해소 및 다양화·특성화·전문화 특수학교 신설 추진 진해나래울학교(2027.3.1.) 및 김해제2특수학교(2029.3.1.) 개교 예정)

나) 지역별 특수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컨설팅 지원

다) 학기 단위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2학기에도 특수학급 신증설)

라. 특수교육 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 장애영유아, 행동중재, 진단평가 등 연수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다) 특수교육교원 국외 연수 실시

라)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2) 특수교육 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현장 지원 활성화

나) 통합교육 연구학교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례 보급

다) 통합유치원 및 통합교육 중점학교 운영 사례 공유

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마) 2026년 유치원 통합교육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1종)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정다운학교 대상)

가) 학교장애인식지수 및 연계프로그램 활용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2)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통합교육 집합(원격)연수 참석 권장

3)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된 통합교육 관리자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강화(교장, 원장, 교감, 원감 등)

4)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2차년도 성과공유회 개최(11월)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 및 현장 적용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나) 인권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강화
2)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 확대
가)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 실시
나)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 실시 강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3)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점검 강화
4) 장애인권 강화 및 인권보호 조항 학칙 반영 추진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3)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4) 특수교육대상자 디지털 교육지원
5) 특수교육 AI 디지털 교육자료 콘텐츠 개발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4)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안내서 개발
5) 특수학교(급) 교구 설비 기준 개정 고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 지원
2)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안내 강화
3)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학급 운영
2)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연수 강화
3) 특수학급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결보강제 운영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경상남도교육감 장애학생 체육대회(10월)
2) 경남 장애학생 문화예술제 개최(10월)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컨설팅 실시
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
4)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연수 운영(120시간, 1년 과정, 24명)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
2) 특수학교 중심의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육(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
3) 방과후교육·돌봄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실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 및 원격연수(2회)
2) 치료지원 내실화 및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관리 철저
3) 학교 단위 정규평가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해 대안적 평가 관리 방안 마련
4)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5)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편의 지원
6) 특수교육활동 긴급치료비 지원

자. 특수학교(급) 안전 강화

1) 학교별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시 및 점검 일반화

2) 장애학생 등·하교 교출 및 이탈 사고 예방 강화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2) 산업체, 장애 맞춤 훈련기관, 학교 연계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 강화

3)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 참여(10월)

4) 대학진학 설명회 운영(6개청)

5) 경상남도 진로직업교육 성과 공유회(11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으로 미래를 여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목표

가.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나. 통합교육 내실화로 장애공감문화 정착

다. 수요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격차 완화

3. 중점 추진 과제

가.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4. 제주특수교육의 강조점

가.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른다.

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른다.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생각하는 힘을 길러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에 충실을 기한다.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통하여 서로 존중하고 건강한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마.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기능적 생활중심 교육활동으로 직무능력을 계발하여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한다.

바.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 환경 변화 등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사. 화해와 상생, 포용의 4.3평화·인권·통일교육 및 제주이해교육 강화를 통하여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다양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Ⅱ 2026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2기관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 73명 선정·배치
3)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10명(신청자 전원)
4) 만3세~5세 장애유아(비특수교육대상유아) 치료비(월16만원) 지원: 305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제주영지학교분교장 및 (가칭)제주특수교육연구원 설립 추진
 나)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청각거점지원센터 2기관
 다)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내 원격화상교육실 운영
 라)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내 특수교육보조공학기기 지원실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
 가) 특수학교 교사동 증축
 (1)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 추진(증축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요청)
 (2)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추진(설계용역 완료)
2) 특수학교 전공과 다양화
 가) 제주영지학교 전공과 취업지원반 4학급
 나) 제주영송학교 전공과 취업지원반 2학급/생활자립반 2학급
 다) 서귀포온성학교 전공과 취업지원반 2학급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특수학급 신설
 (1) 초등학교: 3학급(해안초등학교, 세화초등학교, 신촌초등학교)
 (2) 중학교: 4학급(김녕중학교, 귀일중학교, 제주제일중학교, 제주동여자중학교)

(3) 고등학교: 2학급(애월고등학교, 한림고등학교)

나) 특수학급 증설

(1) 유치원: (1학급: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 2025.9. 3차 학급편성)

(2) 초등학교: 6학급(도련초등학교, 제주중앙초등학교, 한라초등학교, 신제주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새서귀초등학교)
(1학급: 서귀중앙초등학교, 2025.9. 3차 학급편성)

(3) 중학교: 1학급(대정중학교)

(4) 고등학교: 2학급(제주제일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4) 특수학교(급) 신·증설 현황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합계		
	유			초			중			고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계
2025	2	1	1	17	0	17	3	0	3	1	0	1	2	1	1	25	2	23
2026	1	0	1	10	2	8	5	0	5	4	0	4	0	2	-2	20	4	16

5) 제주영지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정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중기학생배치계획 및 과밀학급 현황,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부에 특수교사 증원 배치 요청

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87명 정원을 활용하여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지원, 1학급 2인담임제 운영 학교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39개 연구회(344명)

나)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10명

다) 특수교육담당교원 대상 행동중재 연수: 2026.7. 운영 예정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1)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2)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3)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 대면연수 1회 개최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6개교(유 3, 중 3)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장애학생 및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확대 지원: 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신청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추진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제주장애학생의 날(매년 6월 5일) 및 장애이해교육주간 운영

나)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도교육청 민간위탁사업기관 2기관(제주장애인야간학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 추진

나) 공공형 최초 장애인오케스트라 "핫빛' 창단 및 장애인식개선 공연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가) 세계 자폐인의 날 (4월 2일) 기념 블루라이트 행사 캠페인 참여 및 홍보: 1기관(도교육청)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1회

나) 도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3교 각 1명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나)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특수학교는 연2회 이상)

다) 특별지원: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수시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대면 연수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나)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가)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특수학교 1개교 운영

2) 장애학생 미래교육환경 역량강화 지원

가) 장애학생 미래교육환경 조성 지원: 특수학교 3개교

나) 중학교 1학년 입학 특수교육대상학생 1인 1노트북 지원(희망자에 한함)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수학교 3개교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제주특별자치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적용 지원: 특수학교 3개교

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

가)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나)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감승인과목 개발 안내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점검: 1학기 1회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1학기 1회 이상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가) 특수학교 재택 순회교육: 15명(초 7명, 중 4명, 고 4명)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71명(유 27명, 초 36명, 중 7명, 고 1명)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특수학교 3개교, 민간위탁사업 운영 1기관

2)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특수학교 3개교, 장애인체육회와 연계 지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2센터

나)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2)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3개단

나) 특수학교(급) 교사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10명

사. 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수요조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140교)

2)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화

가) 특수학교: 특수학교별 계절학교 운영(3개교)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절학교 운영(2센터)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평가 연 1회 실시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교육(지원)청별 집합 연수 2일 실시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배치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15시간 이상)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4) 치료지원 내실화 운영

가) 치료비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주희망나눔카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나)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점검 실시(상반기 1회)

5)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106회)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연 2회 이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나)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3명(특수학교별 1명)

2)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학교내 장애학생(전공과) 일자리사업 운영: 특수학교 3개교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3) 제주어린이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바리스타 직업체험교실 운영

4) 제주발달장애훈련센터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

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직업센터(위탁기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도내 특수학급 및 전공과 학생 취업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2기관: 주기적인 홍보 실시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 추가 선정 배치를 통한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3)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시 추가 지원

4) 만3세~5세 장애유아(비특수교육대상유아) 치료 지원 신청시 추가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를 통한 전문성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다)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청각거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

가) 특수학교 교사동 증축

(1)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요청

(2)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일상감사 수검

2) 특수학교 다양화

가) 제주 동부지역에 (가칭)제주영지학교분교장 설립 추진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특수학급 신설: 증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추진

나) 특수학급 증설: 증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설 추진

4) 특수학교 학급 증설: 증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설 추진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 활용 2인 담임제 운영 지속 지원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강화

나)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여름방학 중 연수 신청자 10명에 대해 연수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행동중재지원단) 구성·운영: 학교에서 통합교육 컨설팅 요청 시 수시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을 통한 상시 지원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6개교(유 3, 중 3) 통합교육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장애학생 및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확대 지원: 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신청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지속 추진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햇빛'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장애공감문화 확산
나) 공공형 최초 장애인오케스트라 "햇빛'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공연 실시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가) 미술공모전 및 백일장 등에 교육감 후원명칭 승인 요청 시 승인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나) 도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통한 상담 및 인권지원 내실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운영 내실화
나)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지원
다) 특별지원: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수시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나)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지속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특수교육 디지털·AI 교육자료 보급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보급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4)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적용 지원: 특수학교 3개교

5) 교육감승인과목 개발 지원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점검: 2학기 1회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민간위탁사업 운영 기관 및 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 강화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지원

2) 행동중재 지원

가) 통합교육지원단(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시 행동지원 전문가단 방문 지원

나) 특수학교(급) 교사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방학 중 대면 연수) 지원

다) 특수학교(급) 학부모 대상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1회(2026.6.)

사. 방과후교육·늘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수요조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추가 지원

2)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화

가) 특수학교: 특수학교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시 계절학교 운영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시 계절학교 운영

3) 도내 특수학교 3개교 늘봄학교 운영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학년말 업무평가 1회 실시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교육(지원)청별 집합 연수 여름방학 기간 중 2일 실시

나) 온라인연수 상시 지원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배치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4) 치료지원 내실화: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점검 실시(하반기 1회)
5)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수시 지원
6)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내실화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연 2회 이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협의체 운영 내실화
2)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학교내 장애학생(전공과) 일자리사업 운영: 취업으로 인한 수요 추가 발생 시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운영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내실화
3) 제주어린이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 바리스타 직업체험교실 운영
4) 제주발달장애훈련센터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
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직업센터(위탁기관: 서귀포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도내 특수학급 및 전공과 학생 취업 지원

2026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부록 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2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34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35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5. 10. 1.〕〔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2024. 2. 27.>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2025. 10. 1.>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20.>

③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2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2022. 10. 18.>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제28조에 따른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27.]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

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유아교육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2. 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2024. 2. 27.>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 5. 29.>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 10. 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0. 18.>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4조 삭제 <2016. 5. 29.>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

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 5. 29.>]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정부조직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5. 2. 25.>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2021. 4. 20.>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 29.>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2. 25.>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2.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5.>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 2. 25.>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 6. 21.>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2. 6. 28.]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4. 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목개정 2022. 6. 28.]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본조신설 2025. 2. 25.]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2. 25.>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 5. 29.>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3. 4. 18.]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6. 28.]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6장 보칙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2026. 3. 24.>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삭제 <2026. 3. 24.>
1의3. 삭제 <2026. 3. 24.>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36220호, 2026. 3. 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개정 2025. 2. 25.>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교육부령 제360호, 2025. 6.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수학교의 장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국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인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 6. 20.]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2. 6. 29.>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360호, 2025. 6. 2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6. 30.〉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 명 (한 자)		성별	남, 여
	주 소			
	소 속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학교장) ㊞

시 · 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자르는 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의뢰서(고등학교 과정 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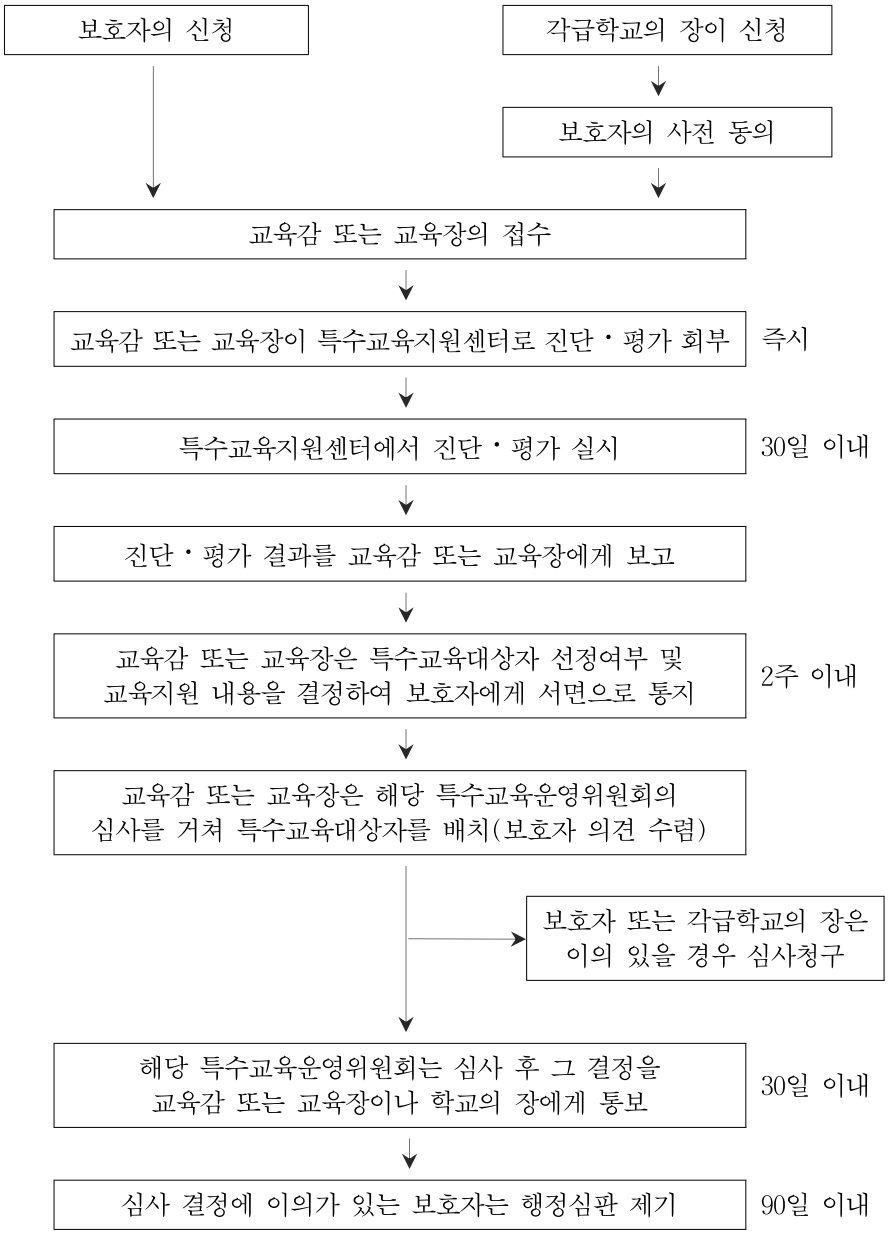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시 · 도교육감(교육장) ㊞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3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 9. 17.〉

(앞면)

심사청구서(전문대학 이상)

① 사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청구인				
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재심청구의 취지				
⑥ 재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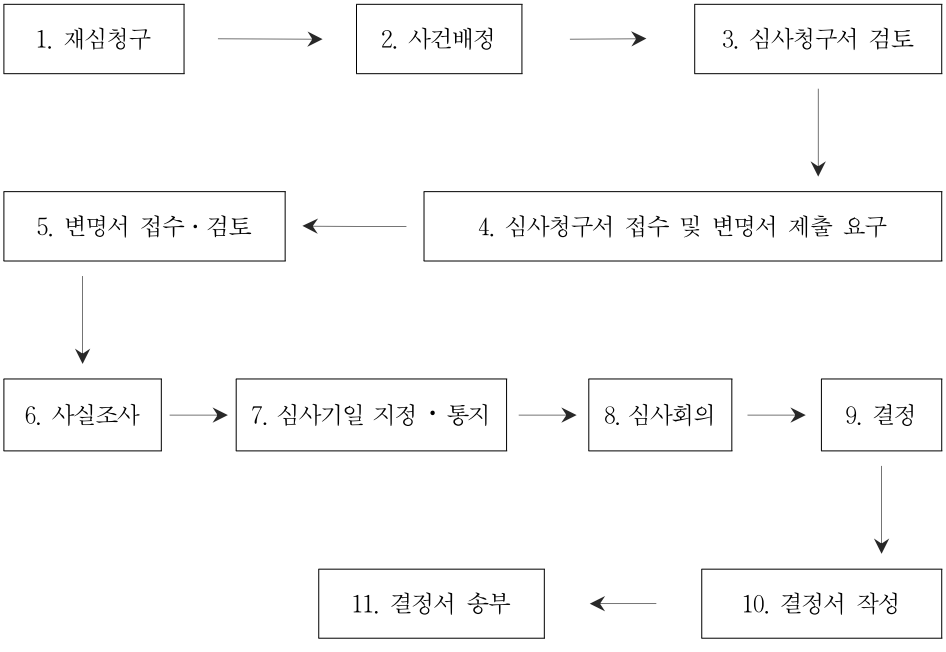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심사결과통지서(전문대학 이상)</td></tr>
<tr><td>① 사건</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② 청구인</td><td>성명</td><td></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소속</td><td colspan="3"></td></tr>
<tr><td>③ 피청구인</td><td colspan="4"></td></tr>
<tr><td>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td><td colspan="4"></td></tr>
<tr><td>⑤ 심사 결과</td><td colspan="4"></td></tr>
<tr><td>⑥ 근거법률</td><td colspan="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9. 9. 17.〉

(앞면)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건					
② 청구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학교			
	학교장	성명		학교명	(전화번호:)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청구의 취지					
⑥ 심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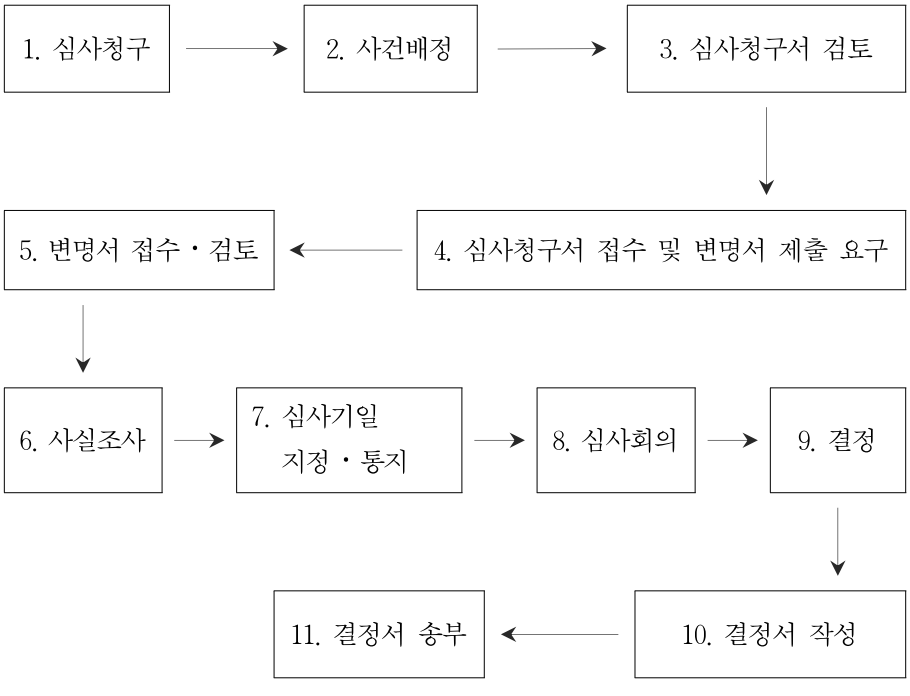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심사결과통지서(고등학교 과정 이하)</td></tr>
<tr><td>① 사건</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② 청구인</td><td>성명</td><td></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소속</td><td colspan="3"></td></tr>
<tr><td>③ 피청구인</td><td colspan="4"></td></tr>
<tr><td>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td><td colspan="4"></td></tr>
<tr><td>⑤ 심사 결과</td><td colspan="4"></td></tr>
<tr><td>⑥ 근거법률</td><td colspan="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td></tr>
</table>

2026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6년 8월

발행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 203-6559

인쇄처: 행복드림플러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공단로 184-20
우편번호 30058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6. 8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